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1755-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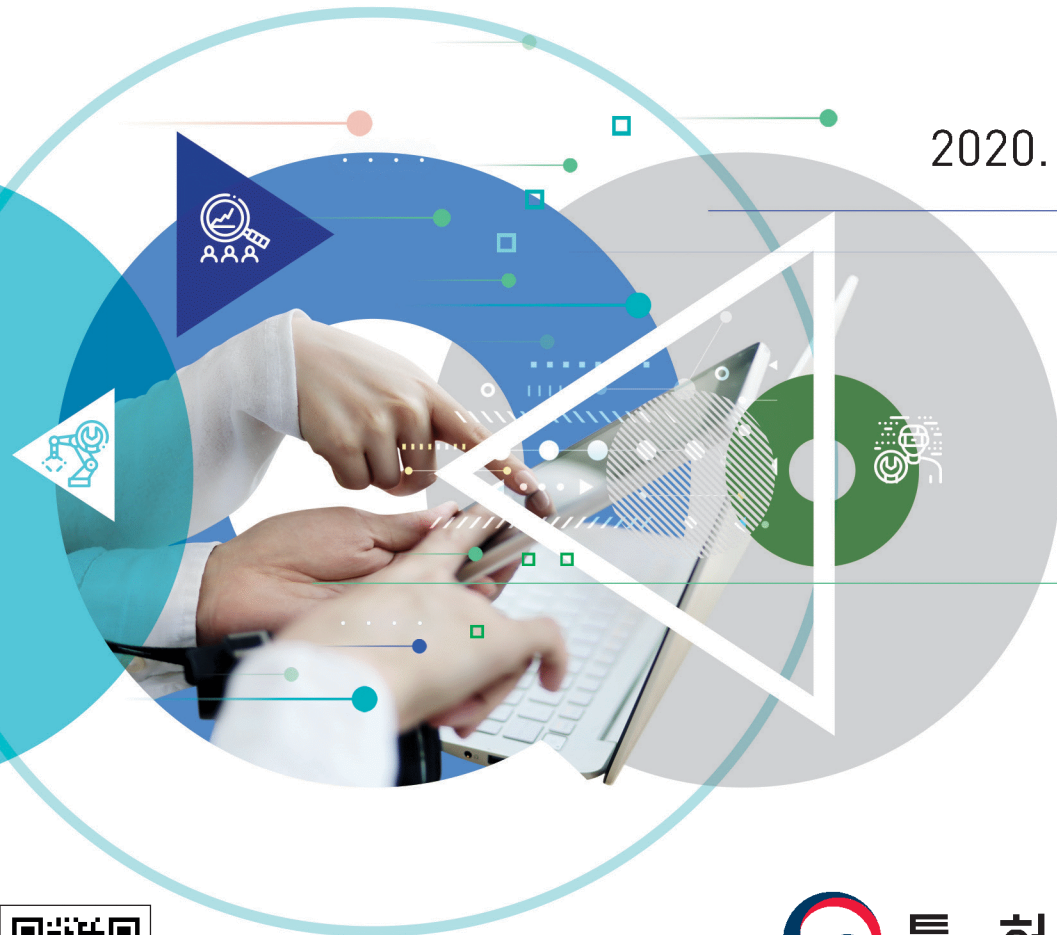


BM 특허 길라잡이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20년 개정판)

2020. 12.



 특허청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1755-14



BM 특허 길라잡이

(2020년 개정판)

2020. 12.



우리는 AI, 빅데이터, IoT와 같은 용어가 낯설지 않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인터넷 및 스마트 기기와 분리될 수 없는 정보화 사회로 진화했을 뿐만 아니라, COVID-19로 대변되는 비대면 소비환경에 따라 소비자는 전통적인 오프라인쇼핑 방식보다 온라인 전자상거래 방식에 더욱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로 대표되는 BM(Business Method, 영업방법) 발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최근에 들어 더욱 증가하였고, 이는 BM 분야의 특허출원으로 반영되어 2018년에 연간 출원건수가 1만 건을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BM 발명을 권리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출원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2010년에 『BM 특허 길라잡이』를 최초로 발간하였고, 그간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2012년, 2014년에 2차례의 개정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6년만에 개정되는 『BM 특허 길라잡이』는 BM 특허 관련 상식, BM 특허의 활용 및 보호사례를 새롭게 추가하였고, 최근 특허업무의 변화된 사항과 최신 통계를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BM 특허 길라잡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들과 이 책을 발간하는데 힘써준 전자상거래심사과 심사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본 『BM 특허 길라잡이』가 BM 발명에 관심이 있고, 특허를 출원하려는 모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년 12월

Contents 목차



제1장	BM 특허란	1
	1. 영업방법도 특허 받을 수 있을까?	3
	2. BM 특허의 대상	6
	3. BM 특허의 분류	10
	4. BM 특허 출원 동향	20
제2장	BM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	21
	1.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	24
	2. 특허출원	28
	3. 심사청구	38
	4. 실체심사	42
	5. 특허여부 결정	48
제3장	BM 특허의 명세서 작성 및 거절이유 대응	51
	1. 특허출원 서류	53
	2. 명세서 양식 및 작성 요령	60
	3. 특허요건 위반 사례 및 대응	67
	가. 발명의 성립성	67
	나. 발명의 설명의 기재요건	80
	다. 청구범위 기재요건	89
	라. 진보성	107
	4. 의견제출통지 및 그 후의 절차	131

Contents 목차



제4장 BM 특허의 활용 및 보호 사례 147

1. BM 특허를 기반으로 성장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149
2. 공유경제의 등장과 BM 특허 152
3. BM 특허의 해외 분쟁 사례 1 161
4. BM 특허의 해외 분쟁 사례 2 165
5. BM 특허의 해외 분쟁 사례 3 169
6. BM 특허의 해외 분쟁 사례 4 173
7. BM 특허의 해외 분쟁 사례 5 181

부 록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185

1. 특허상담 187
2. 참고자료 188
3. 수수료 189
4. 관련 사이트 191
5. 지식재산권 창출, 활용 및 보호를 위한 특허청 지원제도 192

찾아 보기

구 분	내 용	쪽
BM 특허 일반	● BM 특허의 분류 체계(CPC)	10
	● BM 특허 출원 동향	20
출원 전 준비	● 선행기술조사	24
	● 특허출원 절차 (온라인 출원, 서면출원)	28
	● 인증서 등록 및 문서작성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29
	● 특허고객번호 신청	31
출원	● 특허출원서 작성 및 제출	31
	● 수수료 납부	33
	● 방식심사	35
	● 출원공개	36
	● 정보제공	37
심사	●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 (우선심사·초고속심사·심사유예)	38
	● 실체심사 절차	42
	● 특허요건 관련 법규	43
	● 보정의 범위 제한	46
특허여부 결정	● 특허권 설정등록	48
	● 재심사 청구,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	48
명세서 작성 및 거절이유 대응	●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 및 기재사항	53
	● 특허출원서, 명세서, 요약서 및 도면 예시	54
	● 명세서 작성	60
	● 특허요건 위반 사례 및 대응	
	- 발명의 성립요건	67
	- 발명의 설명의 기재요건	80
	- 청구범위 기재요건	89
	- 진보성	107
	● 의견제출통지 및 그 후의 절차	
- 의견제출통지 및 예시	131	
- 의견서 및 보정서 작성 및 예시	136	
- 특허거절결정 및 특허결정 및 예시	142	
활용 및 보호 사례	● BM 특허를 기반으로 성장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149
	● 공유경제의 등장과 BM 특허	152
	● BM 특허의 해외 분쟁 사례	161
부 록	● 특허상담	187
	● 참고자료	188
	● 수수료	189
	● 관련 사이트	191
	● 지식재산권 창출, 활용 및 보호를 위한 특허청 지원제도	192



BM 특허란

1. 영업방법도 특허 받을 수 있을까?	3
2. BM 특허의 대상	6
3. BM 특허의 분류	10
4. BM 특허 출원 동향	20

1 영업방법도 특허 받을 수 있을까?

특허법은 「발명」을 대상으로 「특허 요건」을 심사하여 특허로 등록받은 것에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여 발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영업방법에 관한 것도 발명에 해당하고 특허 요건을 만족하면 특허로 등록받아 독점 배타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영업방법이 발명에 해당할까요? 영업방법 발명은 일반 발명과 특허 요건을 다르게 판단할까요?

■ 「영업방법」은 「발명」에 해당할까

특허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법제2조제1호).

따라서 금융·투자 결제 방법, 분석·평가 방법, 판매 방법 등과 같은 영업방법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면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발명을 BM(Business Method, 영업방법) 발명이라 합니다.

■ 「영업방법」이 「BM 발명」이 되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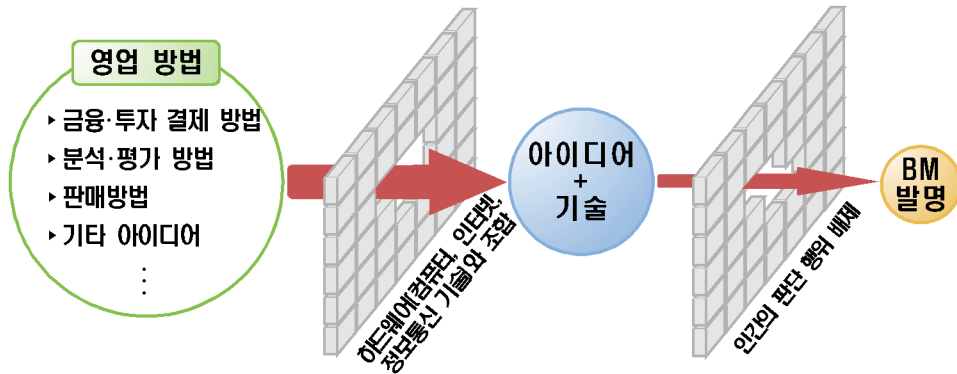
우리나라 특허청은 영업방법이 컴퓨터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되는 경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특허의 대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순수한 영업방법 자체만으로는 BM 발명에 해당하지 않고,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합니다.

■ 「BM 발명」이 「BM 특허」가 되려면

BM 발명이 특허 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BM 특허가 되고, BM 특허가 되기 위한 특허요건은 일반 특허요건과 같습니다.

다만, 특허요건의 구체적인 판단 방법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업방법이 BM 발명이 되려면]

■ 「BM 특허」의 독점배타권

BM 특허는 특허의 한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업방법에 관한 것을 특허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 특허와 차이가 없으므로, 등록이 되면 일반 특허와 동일한 독점배타권이 부여됩니다.

용어 정리

「BM(Business Method, 영업방법) 발명」은 영업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에 관련한 발명을 말합니다.

「BM 특허」는 BM 발명이 특허심사를 거쳐 등록된 것을 말합니다.

※ BM이란 용어는 Business Method 또는 Business Model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나, 우리나라 특허법에서는 발명의 카테고리를 물건과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고, 미국 특허법상 용어로도 Method가 통용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특허제도에서는 BM 용어는 Business Method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BM 특허 이야기

BM 특허의 태동

BM 특허는 1980년 이후 컴퓨터 및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맞물려 1986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발

표한 새로운 통상정책의 일환인 Pro-patent 정책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특허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은 독립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는 특허를 강화하는 Pro-patent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193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는 대공황 이후의 경기 부양을 위해 반독점 정책을 유지하였고,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 Pro-patent 정책으로 선회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1998년 미국 CAFC(연방 순회 항소법원)이 일명 SSB 판결에서 영업방법 특허를 인정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BM 특허출원의 붐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SSB 판결은 State Street Bank & Trust Co.와 Signature Financial Group Inc. 간의 특허무효소송을 말하는 것으로서 SSB 특허는 뮤추얼 펀드들이 자신들의 자산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공동출자하는 구조를 실행하는 것에 관련된 것이었으며,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기계로 일련의 수식계산을 실행함으로써 금액 표시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최종주가로 변환하는 것은 유용하며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특허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미국은 데이터처리(금융, 영업활동, 경영 또는 비용/가격결정 등 관련)에 관련한 USPC 705를 통해 BM 특허를 심사하고 있고, 유럽은 2001년 특허심사 기준 개정을 통해 BM 특허를 심사하고 있으며, 일본은 1997년 이후 컴퓨터 프로그램 기록매체를 발명의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BM 특허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제적 추세에 맞춰 나가기 위해 1998년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및 2000년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BM 특허의 심사 기준을 정립하였습니다.

2 BM 특허의 대상

BM 특허의 대상이 되거나 BM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구체적인 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BM 특허 대상의 구체적인 판단

- 특허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청구항¹⁾에 관련된 발명이며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합니다.
-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구체적인 협동수단에 의해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정보처리를 수행하는 장치, 그 동작 방법 또는 프로그램²⁾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이면 BM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 BM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예

- 순수한 영업방법 자체
- 추상적인 아이디어, 인위적인 결정, 인간의 정신 활동, 오프라인 상의 인간의 행위를 포함하는 경우
-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은 경우
- 온라인 상의 행위와 오프라인 상의 행위가 결합된 경우
- 컴퓨터 프로그램 리스트, 데이터 구조 등 정보의 단순한 제시
-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단,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은 2014. 7. 1. 이후 출원부터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 수학 알고리즘 또는 수학 공식, 경제법칙, 금융법칙, 게임규칙 그 자체
- 발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이 결여된 미완성 발명

1) 청구항은 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
2) 「프로그램」이 그에 준하는 용어(애플리케이션 등)인 경우에도 허용

■ BM 특허의 사례

● 배치 기반 할인을 사용한 광고의 선택 및 가격결정

페이스북의 BM 특허 (KR101785599B) 사용자가 소셜 네트워킹 콘텐츠와 함께 열람하도록 식별된 후보 광고가 사용자의 디스플레이에서 다양한 슬롯에 배치되고 다양한 배치의 예상값이 결정되어 광고가 그 시스템의 수익을 최적화하도록 선택되고 배치되면 각각의 광고는 그 배치를 기초로 광고의 가격을 조정하는 할인 함수를 사용하여 평가되는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에서의 광고 선택 및 배치 시스템

● 홈 네트워크를 이용한 건강관리 시스템 및 동작 방법

삼성전자주식회사의 BM 특허 (KR101934821B) 병원 서버로부터 사용자에게 대한 건강 정보를 수신하여 사용자에게 대한 건강 정보에 대응하는 환경제어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홈 디바이스로 전송함으로써 사용자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도울 수 있는 건강관리시스템

● 자동 응답 서비스에 기초한 결제 방법 및 상기 방법을 수행하는 서버

카카오의 BM 특허 (KR10165737B) 사용자 단말이 자동 응답 서비스를 통해 간편 결제 요청을 판매자 서버에 전달하면, 판매자 서버는 자동 응답 서비스를 통해 식별하여 사용자 단말의 전화 번호를 인증 서버에 전달하고, 인증 서버는 전화 번호를 통해 사용자 단말이 간편 결제 서비스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가입 여부에 따라 결제 링크를 메시지 서버에 전달하거나 또는 간편 결제 서비스의 가입을 사용자 단말에 유도하는 것

알아보기

영업방법도 실용신안의 대상이 될까?

특허는 물건, 방법,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을 출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을 출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BM 발명은 형상이나 구조를 갖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허의 대상은 되나 실용신안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BM 발명을 구현하는 장치와 같이 형상이나 구조를 갖는 경우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이 가능합니다.

BM 특허 이야기

BM 특허의 대상

1998년 미국의 SSB 판결은 청구된 발명이 유용(Useful)하고, 구체적(Concrete)이며, 유형(Tangible)의 결

과를 제공한다면 특허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2008년 Bilski 판결은 프로세스 발명이 특정장치(Machine)에 연동되어 있거나, 대상의 변환(Transformation)을 제공한다면 특허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기존의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의 보호범위에서 순수한 아이디어를 제외하였습니다.

Bilski 특허는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상품거래에 중개인이 개입하여 가격 변동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컴퓨터 등의 구체적인 하드웨어가 명시되지 않은 순수한 BM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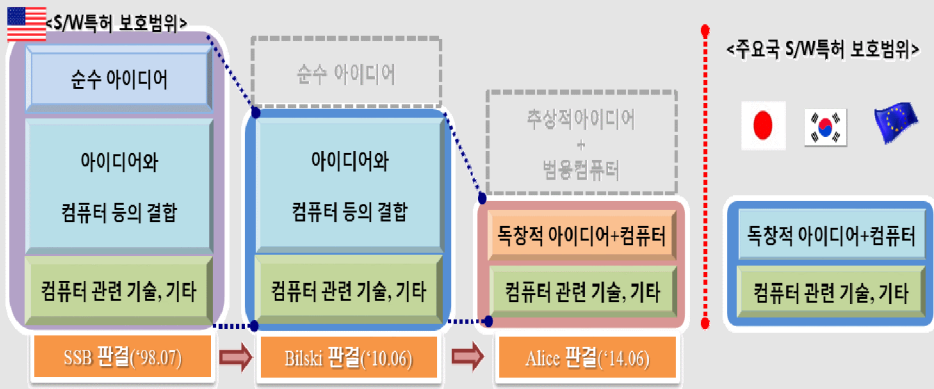
BM 특허의 보호범위가 가장 넓었던 미국이 Bilski 판결 이후 보호범위를 축소함에 따라 주요국의 BM 특허의 보호범위는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게 되었으나, 2014년 Alice 판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Alice 특허는 거래 시 발생하는 결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자가 거래당 사자의 재무상태를 관리하는 영업방법이 컴퓨터로 구현된 시스템 발명이었으나, 추상적 아이디어에 범용 컴퓨터 기술이 결합되는 것을 넘어 독창적인 개념까지 추가되어야만 발명으로서 성립된다는 논지로 무효되었습니다. 즉, 범용 컴퓨터 기술이 단순히 결합된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발명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넓게 소프트웨어 특허를 보호했던 미국에서 엄격한 판결이 나오므로 인해 업계에 많은 혼란을 일으켰으나, 이는 저품질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적격성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에 기반한 특허괴물의 무분별한 남용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정책적 판단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유용하고 구체적이며 유형의 결과를 제공하여야 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특정장치와 결합되어야 발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럽은 통상의 물리적 효과 이상의 추가적인 기술적 효과(further technical effect)를 발생시킨다면 청구대상의 형태(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기록매체 혹

은 신호의 형태)에 관계없이 발명으로서 인정되며, 공지기술에 비해 기술적인 기여(technical contribution)를 한다면, 청구된 발명은 기술적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특허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명의 구성을 해석함에 있어서 구성을 기술적 요소(technical character)와 비기술적 요소(nontechnical character : Business element)로 구별하여 비기술적 요소는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할 때 구성요소에서 배제되므로 주요국 중 BM 특허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는지 여부가 주요한 판단기준으로서 인터넷, 컴퓨터 등 IT 기술을 기초로 영업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시계열적인 데이터 처리과정 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경우 특허의 대상으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BM 특허의 분류

BM 특허는 컴퓨터와 통신수단을 통하여 행하는 상거래행위를 의미하는 전자상거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대상 분야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는 이를 구분하기 위해 선진특허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 CPC 분류)³⁾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BM 특허의 CPC 분류는 크게 경영·관리, 지불체계·방식 또는 프로토콜, 거래·금융·보험·세무 전략, 특정 사업 부문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 BM 특허의 분류 체계(CPC) 2020.08판

● 경영·관리(G06Q 10/00)

서브 그룹	분 야
10/00	경영; 관리
10/02	. 예약, 예. 티켓 또는 서비스, 이벤트를 위한 것
10/025	.. {복수의 예약의 조직, 예. 복수의 여행 구분, 숙박과 결합된 운송}
10/04	. 예측 또는 최적화, 예 선형 프로그래밍, "경로 최적화 문제(travelling salesman problem)" 또는 "커팅 스톡 문제(cutting stock problem)" {(마케팅, 가격추정 또는 수요 예측에 특히 적합한 데이터 집합 G06Q30/02)}
10/043	.. {2차원 배치의 최적화, 예. 의류 또는 목재의 절단}
10/047	.. {경로의 최적화, 예. "순회 세일즈맨 문제"}
10/06	. 자원, 작업 흐름, 인력 또는 프로젝트 관리, 예. 시간, 인력 또는 기구에 대한 조직, 계획, 스케줄링, 할당; 기업 계획, 조직 모델 {(금융 자산 관리 G06Q40/06)}
10/063	.. {조작 조사 또는 분석}
10/0631	... {경영활동을 위한 자원 계획, 할당 또는 스케줄링}
10/06311 {사람 또는 집단을위한 스케줄링, 계획 또는 업무 배정}
10/063112 {업무에 대한 사람 또는 집단을 기술 기반으로 매칭하는 것}
10/063114 {사람 또는 집단을 위한 상태 감시 또는 상태 결정}
10/063116 {사람 또는 집단을 위한 스케줄 조절}
10/063118 {프로젝트 환경에서의 스태프 계획}
10/06312 {설립된 자원 스케줄,예. 자원 또는 업무 수준 측량의 조절 또는 분석 또는 동적 일정변경}

3) 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 미국특허청과 유럽특허청이 선행기술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2010년 10월 양 청간 개발에 합의하여 2012년 말에 개발 완료하고, 2013년 1월부터 사용 중인 미-유럽 특허분류

※ CPC 조회 : 특허로(www.patent.go.kr) > 초기화면 > 분류코드검색

10/06313	... {프로젝트 환경에서의 자원 계획}
10/06314	... {자원의 일정표 기록(calendaring)}
10/06315	... {니즈(needs) 기반 자원 요청 계획 또는 분석}
10/06316	... {업무 또는 작업의 순차}
10/0633	... {작업흐름 분석}
10/0635	... {위험 분석}
10/0637	... {전략적 관리 또는 분석}
10/06375	... {제안된 변화에 기반하는 사업 처리 결과 또는 영향의 예측}
10/0639	... {성과 분석}
10/06393	... {스코어-카드링 (score-carding), 벤치마크 또는 핵심성과 지표 [KPI] 분석}
10/06395	... {품질 분석 또는 관리}
10/06398	... {업무기능에 관련된 직원의 성과}
10/067	.. {사업 모델링}
10/08	. 물류, 예. 보관, 적재, 분배 또는 배송; 물품목록 또는 재고 관리, 예. 주문 이행, 조달 또는 주문에 대한 균형
10/083	.. {배달}
10/0831	... {해외 거래}
10/0832	... {특별한 상품 또는 특별한 처리 절차}
10/0833	... {추적}
10/0834	... {매체의 선택}
10/08345 {가격}
10/0835	... {화주 또는 공급자와 매체 사이의 관계}
10/08355 {경로 방법}
10/0836	... {중심 수령인 픽업}
10/0837	... {반품 거래}
10/0838	... {기왕 자료}
10/087	.. {물품목록 또는 재고 관리, 예. 주문 이행, 조달 또는 주문에 대한 균형}
10/0875	... {부품, 공급 또는 서비스의 항목별 기재, 예. 물건의 계산서}
10/10	. 사무 자동화, 예. 전자메일 또는 그룹웨어에 대한 컴퓨터 보조 관리 (전자메일 프로토콜 H04L29/06; 패킷-스위칭 네트워크에서 유저-to-유저 메시지를 위한 장치, 예. 이메일 또는 인스턴트 메시지, H04L41/00); 시간 관리, 예. 달력, 리마인더, 회의 또는 시간 계정 {(시간의 조직, 계획, 스케줄링 또는 할당 G06Q10/06)}
10/101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동 생성}
10/103	.. {작업흐름 공동작업 또는 프로젝트 관리}
10/105	.. {인적 자원}
10/1053	... {고용 또는 채용}
10/1057	... {복리 후생 제도}
10/107	.. {전자메일의 컴퓨터 보조 관리(전자메일 프로토콜 H04L29/06; 패킷-스위칭 네트워크에서 유저-to-유저 메시지를 위한 장치, 예. 이메일 또는 인스턴트 메시지, H04L41/00)}
10/109	.. {시간 관리 예. 달력, 리마인더, 회의 또는 시간 계정(시간의 조직, 계획, 스케줄링 또는 할당 G06Q10/06)}
10/1091	... {관리 목적을 위한 시간 기록}

10/1093	... {사람 또는 집단을 위한 달력기반 스케줄링}
10/1095 {회의 또는 약속}
10/1097 {과업 부여}
10/20	. {상품 수리 또는 유지 관리}
10/30	. {상품 재활용 또는 폐기 관리}

● **지불 체계·방식 또는 프로토콜(G06Q 20/00)**

서브 그룹	분 야
20/00	지불 체계, 방식 또는 프로토콜 (지불 거래 실행 또는 게시하기 위한 장치 G07F7/08, G07F19/00; 전자 현금 출납기 G07G1/12)
20/02	. 중립적인 관계자를 포함하는 것, 예. 인증 기관, 공증인 또는 신뢰받는 제3자 [TTP]
20/023	.. {중립 관계자가 결제기관(어음교환소)인 것에 특징이 있는 것}
20/027	.. {지불 스위치 또는 입구를 포함하는 것}
20/04	. 지불 회로
20/042	.. {적어도 하나의 수표를 포함하는 지불 프로토콜에 특징이 있는 것}
20/0425	... {수표가 오직 전자적인 것}
20/045	.. {적어도 하나의 티켓을 포함하는 지불 프로토콜에 특징이 있는 것}
20/0453	... {티켓이 전자 영수증인 것}
20/0457	... {전자적으로 보내는 티켓에 특징이 있는 것}
20/06	.. 개인 지불 회로, 예. 공통 지불 방식 참가자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전자 화폐를 포함하는 것
20/065	... {전자화폐를 사용하는 것}
20/0652 {변수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전자화폐, 예. 시간}
20/0655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되는 전자화폐}
20/0658 {지역적으로 관리되는 전자화폐}
20/08	. 지불 체계
20/085	.. {원격 충전 결정 또는 관련된 지불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
20/0855	... {제3자를 포함하는 것}
20/10	.. 전자 자금 이체 [EFT] 시스템에 특히 적합한 것; 홈 बैं킹 시스템에 특히 적합한 것
20/102	... {계산서 분배 또는 지불}
20/105	... {휴대용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래밍을 포함하는 것, 예. IC 카드, "전자 지갑"}
20/108	... {원격 बैं킹, 예. 홈 बैं킹}
20/1085 {현금 자동 지급기 [ATMs]를 포함하는 것}
20/12	.. 전자 쇼핑 시스템에 특히 적합한 것
20/123	... {디지털 콘텐츠를 위한 쇼핑}
20/1235 {디지털 권리 보호 [DRM]의 제어를 가지는 것}
20/127	... {시간제한에 따른 쇼핑 또는 접속 서비스}
20/14	.. 결제 시스템에 특히 적합한 것
20/145	... {검출된 사용 또는 수량에 따른 지불}
20/16	.. 통신 시스템을 통해 결정된 지불
20/18	.. 셀프 서비스 단말기 [SSTs], 자동판매기, 키오스크, 멀티미디어 단말기를 포함하는 것

20/20	.. 판매시점관리 [POS] 네트워크 시스템 {(POS 그자체 G07F 또는 G07G)}
20/201	... {가격 록업(PLU) 처리, 예. 업데이트}
20/202	... {복수의 전자 화폐 레지스터 [ECR]의 또는 호스트 컴퓨터로의 상호연결 또는 상호작용, 예. 네트워크 세부, 호스트에서 ECR로 또는 ECR에서 ECR로의 정보 이동}
20/203	... {물품목록 감시}
20/204	... {전자 자금 이체 또는 지급 신용장을 위한 기록 관련 매체 또는 담체의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것}
20/206	... {보안 또는 사용자 식별 규정을 포함하는 것, 예. 비밀번호 입력}
20/207	... {세금 처리}
20/208	... {상품 또는 기록 감지에 의한 입력, 예. 계량 또는 스캐너 처리}
20/209	... {특정한 거래 저널 출력 특징 예. 인쇄된 영수증 또는 음성 출력}
20/22	. 지불 방식 또는 모델
20/223	.. {피어투피어 네트워크 사용에 기반한 것}
20/227	.. {다중 계좌가 지급인에게 가능한 것에 특징이 있는 것}
20/24	.. 신용 방식, 즉. "후 지불"
20/26	.. 직불 방식, 즉. "즉시 지불"
20/28	.. 선불 방식, 즉. "사전 지불"
20/29	.. {소액결제에 특징이 있는 것}
20/30	. 특정 장치의 사용에 의해 특징이 있는 것
20/305	.. {지불을 하기위하여 유선 전화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
20/32	.. 무선 장치를 사용하는 것
20/322	... {모바일 장치[M-장치]를 사용하는 상업의 측면}
20/3221 {M-장치를 통한 बैं킹 정보에 접근}
20/3223 {M-장치를 통한 बैं킹 거래 실현}
20/3224 {M-장치의 위치에 의존하는 거래}
20/3226 {M-장치에서 분리된 보안 소자의 사용}
20/3227 {M-장치에 내제된 보안의 사용}
20/3229 {보안소자로서 M-장치의 SIM의 사용}
20/325	...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
20/3255 {지불을위해 SMS를 사용하는 것}
20/327	... {M-장치의 수단에 의한 단영역 또는 근접지불}
20/3272 {오디오 코드를 사용하는 것}
20/3274 {M-장치에 표시된 픽처 코드, 예. 바코드 또는 QR 코드,를 사용하는 것}
20/3276 {M-장치로 독취된 픽처 코드, 예. 바코드 또는 QR 코드,를 사용하는 것}
20/3278 {M-장치 수단에 의한 RFID 또는 NFC 지불}
20/34	.. 카드를 사용하는 것, 예. 집적회로(IC) 카드 또는 마그네틱 카드
20/341	... {능동 카드, 즉. 자체 처리 수단을 포함하는 카드, 예. IC 또는 칩을 포함하는 것}
20/3415 {지불 매체로서 자치적으로 작동하는 카드}
20/342	... {카드 정의 지불 또는 계산된 서비스 또는 수량}
20/343	... {카운터를 포함하는 카드}
20/3433 {화폐 유닛을 가지는 카운터}

20/3437 {비화폐 유닛을 가지는 카운터, 예. 여행}
20/346	... {서비스의 정보 매체로서만 제공되는 카드}
20/347	... {수동 카드}
20/348	... {1회용 카드, 즉. 재충전의 가능성이 없는 것}
20/349	... {재충전 가능한 카드}
20/351	... {가상 카드}
20/352	... {카드에의한 비접촉 지불}
20/353	... {M장치에 연결된 추가적 카드에 의한 지불}
20/354	... {카드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20/355	... {사용을 위한 카드의 개인화}
20/3552 {개인화 데이터의 다운로드 또는 로드}
20/3555 {두개이상의 카드의 개인화}
20/3558 {사용자에게 이체를 위한 예비 개인화}
20/356	... {카드 지불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측면}
20/3563 {카드에 있는 소프트웨어}
20/3567 {리더에 있는 소프트웨어}
20/357	... {복수의 특정한 특징을 가지는 카드}
20/3572 {카드상의 다중 계좌}
20/3574 {카드상의 다중 어플리케이션}
20/3576 {카드상의 다중 메모리 구역}
20/35765 {메모리 구역으로의 접근 권한}
20/3578 {카드 사용자의 계층}
20/35785 {부모-자식 형식, 즉. 부모가 자식의 권리에 대한 제어를 가지는 것}
20/36	.. 전자 지갑 또는 전자 화폐 금고를 사용하는 것
20/363	... {사용자를 위한 개인 데이터 파일을 가지는 것}
20/367	... {지능 토큰을 포함하는 것, 예. 전자지갑}
20/3672 {초기화 또는 리로딩 하는 지능 토큰}
20/3674 {인증을 포함하는 것}
20/3676 {장부대조}
20/3678 {전자화폐 세부, 예. 이중 사용의 은닉(blind), 분할가능 또는 검출}
20/38	. 지불 프로토콜; 그 세부
20/381	.. {화폐 전환}
20/382	.. {거래의 더 높은 보안을 보장하는 것}
20/3821	... {전자 증명서}
20/38215 {거래 자격의 인증 또는 암호화된 증명서의 사용}
20/3823	... {거래를 위한 다중 암호화 도구를 결합하는 것}
20/3825	... {전자 서명의 사용}
20/3827	... {메시지 해싱(hashing)의 사용}
20/3829	... {키 관리를 포함하는 것}
20/383	.. {익명 사용자 시스템}
20/385	.. {에일리어스(alias) 또는 단일 사용 코드의 사용}

20/387	.. {할인 또는 쿠폰을 사용하는 지불(마케팅에 관련된 것 G06Q30/02)}
20/388	.. {카드없이 상호 인증}
20/389	.. {거래의 부인방지 보장을 위한 거래의 로그를 유지하는 것}
20/40	.. 승인, 예. 지불인 또는 피지급인의 신원확인, 고객 또는 상점 신용 증명서 검증; 지불인에 대한 검토와 승인, 예. 신용한도 또는 금지 목록 확인
20/401	... {거래 확인}
20/4012 {개인 식별 번호[PIN]를 확인하는 것}
20/4014 {거래를 위한 신분 확인}
20/40145 {생체 측정 신분 확인}
20/4016 {거래 처리에서 부정 또는 위험 레벨 평가를 포함하는 것}
20/4018 {카드와 관련된 카드 검증값 [CVV]을 사용하는 것}
20/403	.. {지불능력확인}
20/4033 {지역 지불능력 확인}
20/4037 {원격 지불능력 확인}
20/405	.. {거래 특정 규칙의 사용 또는 확립}
20/407	.. {거래 취소}
20/409	.. {거래 처리에서의 카드에 특정한 인증}
20/4093 {카드 인증의 감시}
20/4097 {카드와 거래 상대간의 상호 인증}
20/40975 {상호 증명을 위한 암호의 사용}
20/42	.. 확인, 예. 법적 지불 채무자에 의한 확인 또는 허가
20/425	.. {거래를 위한 네트워크 및 보안 확인을 위한 네트워크인 두 개의 상이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

● 거래(G06Q 30/00)

서브 그룹	분 야
30/00	거래, 예. 쇼핑 또는 전자상거래
30/01	. {소비자 관계, 예. 품질보증서}
30/012	.. {상품 또는 서비스 품질보증서}
30/014	.. {리콜 제도}
30/016	.. {소비자 서비스, 즉. 구매후 서비스}
30/018	.. {상품 또는 사업의 증명 또는 확인}
30/0185	... {상품, 서비스 또는 사업 명의 도용}
30/02	. 마케팅, 예. 시장 조사 및 분석, 설문조사, 판촉, 광고, 구매자 자료수집, 고객 관리 또는 보상; 가격 추정 또는 결정
30/0201	.. {시장 데이터 모음, 시장 분석 또는 시장 모델링}
30/0202	.. {시장 예측 또는 수요 예측}
30/0203	... {시장 설문조사 또는 시장 여론조사}
30/0204	... {시장 세분화}
30/0205 {위치 또는 지리학적 고려}
30/0206	... {시장 요인에 기반하는 가격 또는 값 결정}

30/0207	.. {할인 또는 인센티브, 예.쿠폰, 환불, 제공 또는 업세일(upsales)}
30/0208	... {인센티브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 또는 교환}
30/0209	... {인센티브가 비디오게임을 하는 것에 연관되어 수여되거나 회복되는 것}
30/0211	... {할인 또는 인센티브 효과를 결정하는 것}
30/0212	... {기회 할인 또는 인센티브}
30/0213	... {소비자 거래 비용}
30/0214	... {위탁 수여 시스템}
30/0215	... {금융계정을 포함하는 것}
30/0216 {투자 계정}
30/0217	...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생각의 제공 혹은 인센티브 또는 보상 교환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표현하는 것}
30/0218 {점수에 기반하는 것}
30/0219	... {기금 또는 예산에 기반하는 것}
30/0221	... {재사용 가능한 쿠폰}
30/0222	... {전자 상거래동안의 것, 즉. 온라인 거래}
30/0223	... {물품목록에 기반하는 것}
30/0224	... {사용자 히스토리에 기반하는 것}
30/0225	... {사기행위를 피하는 것}
30/0226	... {찾은 사용 보상 시스템, 예. 항공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 시스템}
30/0227 {다양한 시스템간의 찾은 사용 보상 가치 조정}
30/0228 {온라인 결제기관(어음교환소)}
30/0229 {다중 상인 고객 우대 카드 시스템}
30/0231	... {구입한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여행한 거리의 화폐가치와 독립적인 찾은 사용 인센티브의 수여}
30/0232 {상품, 현금 또는 여행을 제외한 찾은 사용 보상}
30/0233 {찾은 사용 보상을 교환하는 방법}
30/0234	... {구입 완료후의 환불, 즉. 거래 수여후의 것}
30/0235	... {타이밍을 포함하는 것, 즉. 제한된 수여 또는 사용 시간 제한}
30/0236	... {사용자로부터의 등록 또는 ID 요구에 의해 받는 인센티브 또는 보상}
30/0237	... {키오스크에서의 것}
30/0238	... {매장에서의 것[POS]}
30/0239	... {온라인 할인 또는 인센티브}
30/0241	.. {광고}
30/0242	... {광고 효과의 결정}
30/0243 {비교 판촉활동}
30/0244 {최적화}
30/0245 {설문조사}
30/0246 {거래}
30/0247	...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수익을 계산하는 것}
30/0248	... {사기 행위를 피하는 것}
30/0249	... {예산 또는 기금에 기반하는 것}

30/0251	... {표적 광고}
30/0252 {행사 또는 환경에 기반하는 것, 예. 날씨 또는 페스티벌}
30/0253 {전자상거래 동안의 것, 즉. 온라인 거래}
30/0254 {통계에 기반하는 것}
30/0255 {사용자 히스토리에 기반하는 것}
30/0256 {사용자 검색}
30/0257 {사용자 요청}
30/0258 {등록}
30/0259 {상점 위치에 기반하는 것}
30/0261 {사용자 위치에 기반하는 것}
30/0262 {컴퓨터 대기 모드동안의 것}
30/0263 {인터넷 또는 웹사이트 순위에 기반하는 것}
30/0264 {스케줄에 기반하는 것}
30/0265 {차량 광고}
30/0266 {차량의 위치에 기반하는 것}
30/0267 {무선 장치}
30/0268 {매장에서의 것 [POS]}
30/0269 {사용자 프로필 또는 특성에 기반하는 것}
30/0271 {개인화 광고}
30/0272	... {광고 노출의 주기}
30/0273	... {광고 비용}
30/0274 {요금의 분할}
30/0275 {경매}
30/0276	... {광고 창작}
30/0277	... {온라인 광고}
30/0278	.. {상품 평가}
30/0279	.. {모금 관리}
30/0281	.. {사업 위치에서의 소비자 의사소통 예.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것, 상담하는 것}
30/0282	.. {사업 설립 또는 상품 순위 또는 추천}
30/0283	.. {가격 평가 또는 결정}
30/0284	... {시간 또는 거리, 예. 주차 미터 또는 택시미터의 사용}
30/04	. 청구또는송장작성 {예. 판매와 연결되는 세금 처리}
30/06	. 구매, 판매 또는 임대 거래
30/0601	.. {전자 쇼핑}
30/0603	... {카탈로그 주문}
30/0605	... {공급 또는 수요 집합}
30/0607	... {규제된 것}
30/0609	... {구매자 또는 판매자 신용 또는 확인}
30/0611	... {제안 또는 인용을 위한 요청}
30/0613	... {제 3자의 보조}

30/0615 {의명}
30/0617 {대표자}
30/0619 {중립적 대리인}
30/0621	... {물품 구성 또는 주문에따라 만드는 것}
30/0623	... {물품 검사}
30/0625 {특정한 의도 또는 전략으로 지시하는 것}
30/0627 {물품 설명서를 사용하는 것}
30/0629 {비교 발생을 위한 것}
30/0631	... {물품 추천}
30/0633	... {목록, 예. 구입 주문, 편성 또는 처리}
30/0635 {필수품 또는 구입 주문의 처리}
30/0637 {승인}
30/0639	... {물품 위치}
30/0641	... {쇼핑 인터페이스}
30/0643 {물품 또는 쇼핑객의 시각적인 표현}
30/0645	.. {렌탈, 즉. 임대}
30/08	.. 경매, {매칭 또는 중개 (증권 거래를 위한 매칭 또는 중개 G06Q40/04)} [2014.02]

● 금융·보험·세무 전략(G06Q 40/00)

서브 그룹	분 야
40/00	금융; 보험; 세무 전략;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처리
40/02	. 은행업무, 예. 이자 계산, 신용 승인, 모기지, 홈 बैं킹 또는 온라인 बैं킹
40/025	.. {신용 처리 또는 대출 처리, 예. 저당의 위험 분석}
40/04	. 교환, 예. 주식, 상품, 파생 상품 또는 환전소
40/06	. 투자, 예. 금융 수단, 포트폴리오 관리 또는 펀드 관리
40/08	. 보험, 예. 위험 분석 또는 연금 {(보험 정책 또는 요구의 처리 G06Q10/10)}
40/10	. {세금 전략}
40/12	. {회계}
40/123	.. {세금 준비 및 납부}
40/125	.. {재정 또는 임금대장}
40/128	.. {수표 결산, 업데이트 또는 인쇄 장치}

● 특정 사업 부문(G06Q 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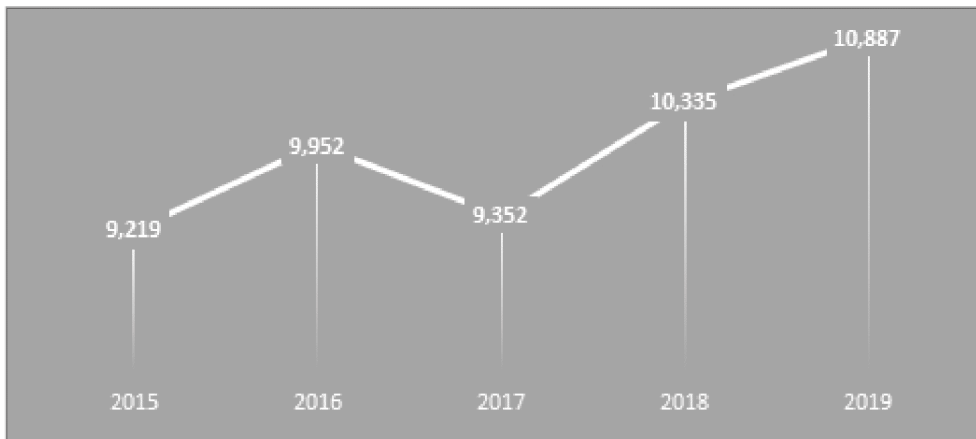
서브 그룹	분 야
50/00	특정 사업 부문에 특히 적합한 시스템 또는 방법, 예.공익 사업 또는 관광(의료 정보학 G16H)
50/01	. {소셜 네트워크}
50/02	. 농업, 어업, 광업
50/04	. 제조

50/06	. 전기, 가스 또는 물의 공급
50/08	. 건설
50/10	. 서비스
50/10A0	.. 통신망을 통한 콘텐츠 제공, 제작, 관리, 편집
50/10B0	.. 인터넷, 웹을 통한 정보 서비스
50/10C0	.. 게임
50/10D0	.. 감시 제어 서비스업
50/12	.. 호텔 또는 레스토랑
50/14	.. 여행사
50/16	.. 부동산
50/163	... {자산 관리}
50/165	... {토지개발}
50/167	... {매매 절차 완료 (Closing)}
50/18	.. 법률 서비스; 법률 문서 처리
50/182	... {소송외 분쟁해결기구}
50/184	... {저작권 관리}
50/186	... {단지 계획}
50/188	... {전자 협상}
50/20	.. 교육
50/205	... {교육 운영 또는 지도}
50/2053 {교육 시설 선택, 입학 또는 재정 도움}
50/2057 {커리어 개선 또는 교육 서비스 지속}
50/22	.. 사회복지 업무
50/24	... 환자 기록 관리
50/26	.. 정부 또는 공공 서비스
50/265	... {개인 보안, 신분확인 또는 안전}
50/28	. 물류, 예. 보관, 적재, 배포 또는 배송
50/30	. 교통; 통신
50/30A0	.. 교통정보(위치 추적, 경로 제공), 대중교통(버스, 택시, 대리운전, 기차, 배, 항공, 지하철), 콜 서비스
50/30B0	.. 차량관리/정비, 자전거 관리/거치대, 주유, 충전
50/30C0	.. 통신서비스업, 메시지, 예. 메신저 (전자우편 G06Q50/32)
50/30D0	.. 통신망을 통한 다자간 정보 교환 서비스, 예. SNS
50/32	.. 우편 및 원격통신 (우편납부필 표시 장치 G07B17/00)
50/34	. 베팅 또는 마권, 예. 인터넷 베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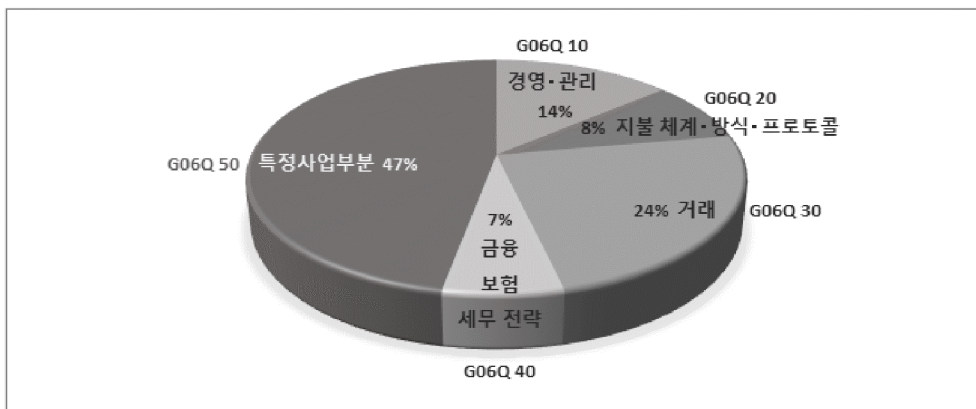
4 BM 특허 출원 동향

연도별 출원 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내국(건)	8,690	9,407	8,891	9,789	10,348
외국(건)	529	545	461	546	539
합계(건)	9,219	9,952	9,352	10,335	10,887



2019년 세부 기술 분야별 출원 분포도





BM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

1.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	24
2. 특허출원	28
3. 심사청구	38
4. 실체심사	42
5. 특허여부 결정	48

출원에서 등록까지, 한 장으로 보기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정보
조사·분석·평가

특허출원 하고자 하는 발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조사합니다.

출원
출원서 작성·제출
수수료납부

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전자출원 또는 우편 및 방문 접수를 통해 출원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방식 심사
제출서류 흠결 및
수수료 확인

특허출원 등 제출서류가 특허법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절차적 방식에 위배되는지 심사합니다.

심사 청구
빠른·일반·늦은
심사청구

특허출원을 심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 후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실체 심사
특허요건
충족여부 심사

특허출원이 특허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허 결정서 또는 의견제출통지서 등을 발송합니다.

**보정서·의견서
거절 이유 극복**

출원인은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하여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등록·거절 결정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 및 의견서를 통해 거절이유 해소 여부를 판단하고 등록 또는 거절 결정합니다.

1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특허 받고자 하는 발명과 동일 또는 유사한 발명이 먼저 출원되었거나 등록되었는지를 검색하여 등록 가능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선행기술조사는 왜 필요할까

-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먼저 출원되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행기술에 의해 신규성 또는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과 동일한 발명에 대해 타인의 특허권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특허발명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것은 특허침해가 되어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팁

특히, **BM 특허**는 중복출원의 빈도가 높은 경향이 있으므로, 선행기술의 조사는 아이디어의 착상단계는 물론 특허 출원을 하는 단계, 권리화 이후의 단계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 선행기술조사는 이곳에서

- 인터넷을 이용한 국내·외 특허·비특허 정보 검색

구분		인터넷 주소	요금
국 내	한국특허정보원 (KIPI)	www.kipris.or.kr	무료
		특허청이 보유한 국내와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및 PCT 등 해외 지식재산권 정보의 인터넷 검색 및 열람 서비스 제공	
	과학기술지식인프라 (ScienceON)	scienceon.kisti.re.kr (구 http://www.ndsl.kr)	무료
		논문, 특허, 보고서 등 검색	

	웍스(WIPS)	http://wipson.com	유료
		특허검색서비스	
	특허정보진흥센터 (PIPC)	http://www.pipc.or.kr	유료
		특허조사, 평가, 분석서비스	
	디비피아(DBpia)	http://www.dbpia.com	유료
		논문, 저널검색	
해 외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https://patentscope.wipo.int/search/en/search.jsf	무료
	미국특허청(USPTO)	http://patft.uspto.gov	무료
	유럽특허청(EPO)	http://worldwide.espacenet.com	무료
	일본특허청(JPO)	https://www.j-platpat.inpit.go.jp	무료
	중국특허청 (CNIPA)	http://pss-system.cnipa.gov.cn/sipopublicsearch/in-portal//i18n.shtml?params=902F004CA61084A284089435EAAEA94F59CC921A916ADCEB	무료
	영국특허청(IPO)	https://www.ipo.gov.uk/p-ipsum.htm	무료
	호주특허청 (IP Australia)	https://www.ipaustralia.gov.au/patents/understanding-patents/searching-patents	무료

● 방문, 전화, 팩스, 우편 등을 통한 특허 검색 서비스

구분		위치 및 연락처	
특허청 특허전자도서관 (library.kipo.go.kr)		주요국가의 특허정보 자료의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을 통한 열람·복사서비스 및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제공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303호 (35208) 문 의 : 042) 481-5130	
지역지식 재산센터 (www.ripc.org)	서 울	서울산업진흥원	02) 2222-3860
	경 기(안산)	경기테크노파크	031) 500-3048
	경 기(수원)	수원상공회의소	031) 853-7431
	인 천	인천상공회의소	032) 810-2882
	강 원(원주)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033) 749-3326
	강 원(춘천)	한국발명진흥회 강원지회	033) 264-6580
	강 원(태백)	태백상공회의소	033) 552-5555
	충 남(천안)	충남북부상공회의소	041) 559-5746
	충 남(서산)	서산상공회의소	041) 663-0041
	대 전	대전테크노파크	042) 251-2890
	충 북(청주)	청주상공회의소	043) 229-2732
	충 북(충주)	충주상공회의소	043) 843-7005
	세 종	한국발명진흥회 세종지부	044) 998-1000

부 산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부	051) 714-6761
울 산	울산상공회의소	052) 228-3087
대 구	대구상공회의소	053) 222-3143
경 북(안동)	안동상공회의소	054) 859-3093
경 북(구미)	구미상공회의소	054) 454-6613
경 북(포항)	포항상공회의소	054) 274-5533
경 남(창원)	창원상공회의소	055) 210-3085
경 남(진주)	진주상공회의소	055) 762-9411
전 남(목포)	목포상공회의소	061) 242-8587
광 주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부	062) 954-3841
전 북(전주)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	063) 252-9301
제 주	제주상공회의소	064) 755-2554

2 특허출원

출원인이 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여 특허출원하면,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출원이 특허법 등이 정한 방식요건에 충족하는지 심사됩니다. 특허출원이 이루어지면 누구든지 특허청에 정보(불특히 취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출원 후 소정 기간이 경과되면 출원에 따른 출원공개가 이루어집니다.

■ 특허 출원은 이렇게

출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명을 한 자 또는 승계인 ※ 2인 이상의 공동 발명인 경우에는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
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원서(요약서, 명세서, 필요한 도면 포함)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감면대상인 경우 해당 증명서류 포함 ※ 출원관련 서식은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특허로 > 초기화면 > 민원서식 다운로드)받거나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 및 서울사무소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으로 제출(특허로, www.patent.go.kr) ○ 서면으로 제출(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팁

BM 특허와 일반 특허는 출원 절차, 서식, 수수료 및 기간 등 특허출원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동일합니다.

■ 특허 출원 따라하기

1	온라인으로 출원하기(특허로, www.patent.go.kr)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된 출원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접수번호 및 출원번호를 부여받습니다.	
1. 특허고객번호 신청하기	
▶ 특허로>신청/제출>국내출원>출원신청사전절차>특허고객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청에 특허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개인 및 법인)는 사전에 자신의 고유번호인 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를 부여 받음 ○ 특허에 관한 절차를 수행할 때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출원인 기재란에 반드시 기재 ○ 특허고객번호 부여 시 등록된 출원인 정보는 출원인 정보변경 신고를 통해 변경 가능 	
2. 공인인증서 등록하기	
▶ 특허로>신청/제출>국내출원>출원신청사전절차>인증서 사용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으로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등록 	
3. 전자출원 SW 다운로드하기	
▶ 특허로>신청/제출>국내출원>전자출원SW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원서 작성 전에 특허문서(명세서, 보정서, 의견서 등)와 첨부문서(위임장, 증명서 등) 작성과 변환을 위하여 필요한 문서작성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 PC에 설치 	
4. 출원서 작성하기	
▶ 특허로>신청/제출>국내출원>명세서/서식 작성	

▶ 명세서 등 특허문서작성

- 특허문서작성기(NK-Editor) 실행하여 명세서, 보정서(도면) 작성
- 첨부서류입력기를 실행하여 출원서 제출시 필요한 위임장, 증명서 등을 스캔 및 변환하여 첨부

▶ 출원서 등 서식작성

- 서식작성기(KEAPS) 또는 통합서식작성기(PKEAPS)를 실행하여 출원서 등에 필요한 서식을 작성
- 웹화면에서 출원서, 중간서류, 등록서류, 심판서류 등의 서식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 가능

- 특허 권리로 보호 받고자 하는 사항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므로 청구범위 작성에 유의

- 청구범위는 출원공개 시까지 제출을 유예 가능

※ 아래의 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 참조

5. 출원서 제출하기

▶ 특허로>신청/제출>국내출원>온라인제출

- 작성된 전자문서를 온라인 제출
- 특허출원서 접수 시 접수증 및 출원번호통지서가 발급됨

※ 온라인 출원 서비스 이용시간

- 월~토요일 00:00 ~ 24:00

- 일·공휴일 09:00 ~ 21:00

※ 온라인 출원의 장점

- 수수료 절감: 서면출원의 전자화 비용 및 송달 비용 절감

- 신속한 처리: 서면출원의 송달기간 및 전자문서 변환기간 없이 실시간 송달

- 제출서류에 대한 사전 자동 점검으로 오류사항 보정 기회 제공

2 서면으로 출원하기(방문, 우편)

소정의 양식에 의해 작성된 출원서류를 특허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고 접수증 및 출원번호통지서를 교부받습니다.

1. 출원서 작성하기

- ▶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대전)나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비치된 서식 이용
- ▶ 또는, 인터넷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특허로 초기화면>민원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 특허 권리로 보호 받고자 하는 사항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므로 청구범위 작성에 유의
 - 청구범위는 출원공개 시까지 제출을 유예 가능
 - ※ 아래의 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 참조

2. 특허고객번호 신청하기

- ▶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특허청에 특허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개인 및 법인)는 사전에 자신의 고유번호인 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음
 - 특허에 관한 절차를 수행할 때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출원인 기재란에 반드시 기재
 - 특허고객번호 부여 시 등록된 출원인 정보는 출원인 정보변경 신고를 통해 변경 가능

2-1. 방문 접수로 출원서 제출하기

- ▶ 작성된 출원서류를 제출
 - 제 출 처 :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대전), 서울사무소(서울)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동절기, 토요일 09:00~ 13:00)
- 특허출원서 접수 시 접수증 및 출원번호통지서가 발급

2-2. 우편 접수로 출원서 제출하기

▶ 작성된 출원서류를 제출

- 수 신 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
우) 35208
- 출 원 일 : 우체국 소인일자를 출원일로 인정
(단, PCT 국제출원은 특허청 도달일을 출원일로 인정)
- 수 수 료 : 통상환으로 교환한 후 출원서류에 첨부
- 특허출원서 접수 시 접수증 및 출원번호통지서가 발급
- ※ 통상환은 우편환의 하나로 우체국에서 송금의뢰서를 작성하여 현금과 함께 제출하면 통상환 증서를 발행하여 줍니다.
- ※ 출원서류 접수 후 10일 이내에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가 출원인의 주소로 우편 발송됩니다.

「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

특허출원 시 첨부되는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고 출원공개 시 까지 제출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

- 청구범위 보정기한
 -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출원일로부터 1년 6월이 되는 날 전에 제3자의 심사청구가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 보정기한 내에 청구범위를 기재한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특허출원은 취하 간주

■ 서류 조회

- 특허출원 후 제출 결과 및 심사처리 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가능
- 온라인 제출결과 조회 : 특허로>My특허로>제출결과 조회
- 심사처리상황 조회 : 특허로>조회/발급>특허보관함

■ 수수료 납부

- 특허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무효로 합니다. 또한, 수수료는 과오납 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납부 방법

구분	납부 방법
온라인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휴대폰/계좌이체 ○ 온라인 납부 : 특허로>수수료관리>수수료 납부
지로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서 납부 (공인인증서 필요)
자동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납부 신청 예금계좌 등록 시 자동납부 ○ 신청 및 취하 : 특허로>수수료 관리>수수료 자동납부
은행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서 양식 다운로드 후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납부서 양식 다운로드 : 특허로>수수료 관리>수수료 납부

● 수수료 면제 및 감면

구분	지원 내용
대상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특허료 및 등록료
전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일 부	(100%)	가족,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 18 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본인에 한함),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학생(초, 중, 고 재학생에 한함), 만 6세 이상~만19세 미만인 자, 군복무중인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환복무수행자 등
	85%	만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 자, 만 65세 이상인 자(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70%	개인(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소기업, 중기업
	50%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06.5.1 이후 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특히, 실용신안의 출원료·심사청구료만 해당)
	30%	중견기업
※ 면제 및 감면대상은 출원인 기준 ※ 4~6년분의 등록료 30% 감면: 중견기업 ※ 4년차부터 존속기간만료까지 등록료 50% 감면: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4~6년분 특허료 및 등록료 20% 추가감면/'22.2.28까지 한시적 적용) ※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개인, 소기업, 중기업, 50% 감면: 전담조직		

● **수수료 마일리지(지식재산포인트 & 키움리워드) 적립**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대한 지식재산포인트를 자동으로 적립하여 드립니다.

※ 지식재산포인트 정보 안내 및 조회 : 특허로 > 수수료 관리 > 지식재산포인트

● **수수료 반환**

구분	내용
반환 대상	○ 과오납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의 반려 시 해당 서류에 대해 납부한 수수료 ○ 특허출원 후 1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한 경우 특허출원료 및 심사청구료 (분할·변경·우선심사 신청 출원 제외) 등
반환 절차	○ 반환사유 발생 사실을 납부자에게 통지하며 납부자의 반환신청에 의해 반환
청구 기간	○ 수수료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반환 신청	○ 특허로 > 수수료 관리 > 수수료 반환 > 반환대상 확인 및 신청
소멸시효	○ 3년

- 수수료 정보 안내 : 특허로 > 수수료관리 > 수수료 정보 안내

■ 출원 방식심사

- 출원인이 특허청에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특허법이 정한 방식요건의 충족 여부를 점검합니다.
- 서류의 기재방식, 출원인·대리인의 절차능력, 수수료 납부사항 및 첨부서류 제출 등의 적합성을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방식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서류는 수리됩니다.
- 방식 요건 흠결에 대한 처리와 출원인의 대응

	보정할 수 있는 흠결	보정할 수 없는 흠결
최초 처리	방식심사 결과 보정이 가능한 서류는 1개월 이내의 기간(제출기일)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보정요구서를 보냄	방식심사 결과 치유할 수 없는 흠결이 존재하는 서류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반려이유통지서를 보냄

출원인 대응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여 흠결을 치유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소명서를 제출
최종 처리	흠결이 치유되는 경우 해당 서류 수리	출원인의 소명을 통해 흠결이 치유되면 해당 서류 직권 수리
	출원인이 제출기일 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정서를 통해서도 흠결이 치유되지 못한 경우 해당 서류를 무효 처리	흠결이 치유되지 않은 경우 반려 처리 ※ 반려이유통지를 받고 소명서 제출기일 이전에 서류를 반려 받으려면 반려요청서 제출

■ 출원공개 제도

- 출원공개 제도는 특허출원 후 1년 6월이 경과하면 그 출원발명의 내용을 일반에 공표하는 제도이며, 특허출원 후 1년 6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조기공개가 가능합니다.

● 출원공개 효과

대상	효과
출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원공개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는 권리 발생 ○ 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는 후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 설정등록 시까지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발생 ○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특허권 설정등록 후에만 행사 가능
제3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중복투자 및 연구·개발 방지 ○ 공개된 기술을 이용하여 개량된 기술 개발

● 조기공개 신청

- 출원공개일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조기에 공개됩니다.
- 출원인은 출원이 공개되기 전에 무단으로 실시하는 제3자가 있을 때 빨리 공개될 수 있도록 조기공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특허출원 후 조기 공개하고 기술을 개량하여 새로운 출원을 할 경우 조기 공개된 출원에 의해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정보제공 제도

- 정보제공 제도는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특허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특허청에 제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다만, 특허요건 중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2호(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의 기재), 제42조 제8항(청구범위의 기재 방법) 및 제45조(1특허출원의 범위)에 의한 거절이유는 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보제공 절차

정보제공 할 수 있는 자	자연인 또는 법인은 누구나 가능
정보제공 시기	특허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능

- 심사관은 정보제공이 있는 출원의 심사를 종결한 경우에는 심사 결과 및 제출된 정보의 활용 여부를 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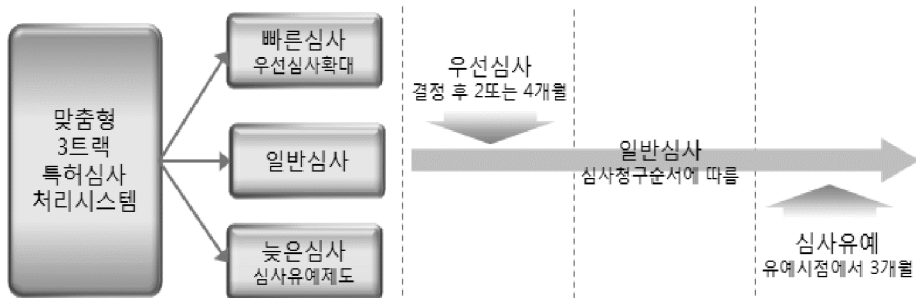
3 심사청구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는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심사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청구가 없는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심사청구는 특허출원 후 3년 이내에 출원인은 물론 제3자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취하할 수 없습니다.

■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

- 특허출원인이 빠른심사·일반심사·늦은심사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특허전략에 따라 원하는 시기에 심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분	심사결과
우선심사	우선심사 신청 후 약 2~4개월 이내 ※ 초고속 심사는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
일반심사	심사청구 순서에 따름
심사유예제도	유예 희망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팁

BM 특허가 주로 출원되는 분야는 기술 주기가 짧은 특성이 있으므로, 초기에 권리화하기 위해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빠른, 우선심사

- 특허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업 정책적 차원에서 조기에 권리를 부여함이 필요한 출원에 대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 **우선심사 주요 대상**

제3자 실시 출원
방위산업분야 출원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벤처기업 관련 출원†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를 부여한 특허출원†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 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출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8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한 특허출원

† BM 특허 분야에서 주로 우선심사 신청되는 사유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를 부여한 특허출원

- 4차 산업혁명 관련 新특허분류는 '4차 산업혁명 ICT 기반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차세대통신, IoT 등)의 핵심 기술요소에 대하여 부여하고, ICT 기반기술의 단순한 서비스 및 응용에 대하여는 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시에는 별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 신청인은 단지 그 출원이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호나목의 기술분야(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삼차원프린팅, 자율주행,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지능형 로봇,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헬스케어, 드론, 차세대 통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중 하나 이상의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임을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의 제7부 제4장 우선심사」에서 우선심사 신청 관련 지침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 특허청 홈페이지>책자/통계>간행물>지식재산 심사 기준/매뉴얼>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 초고속 심사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 기술에 대해 조기에 특허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해 초고속 심사 대상 요건을 만족한 경우 다른 우선심사 출원보다 더 빨리 심사에 착수하는 제도입니다.

[초고속 심사 대상 요건]

- ① 녹색기술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일 것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호나목)
- ②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 의뢰된 출원일 것
- ③ 우선심사신청서에 취지를 표시하여 전자출원으로 제출할 것

※ 서면제출 또는 초고속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 통상의 우선심사 신청과 같이 취급합니다.

■ 일반 심사

- 일반심사는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합니다.

■ 늦은, 심사 유예 제도

- 심사청구 시에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심사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 후 18개월에서 특허출원 후 5년까지의 기간 중 유예 희망시점을 기재하여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심사 유예 제도의 활용

심사유예제도는 1) 사업화 시기나 시장 상황에 맞추어 특허획득시기를 조절할 수 있고 2) 특허등록시점을 늦춰서 특허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3) 심사청구료를 납부유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팁

특히, 심사청구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16.2.29. 공포 특허법제59 조제2항, '17.3.1. 이후 특허출원부터 적용)된 반면, 심사유예시점은 '여전히 특허출원 후 5년까지 가능'하고,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허획득시기를 조절하고자 하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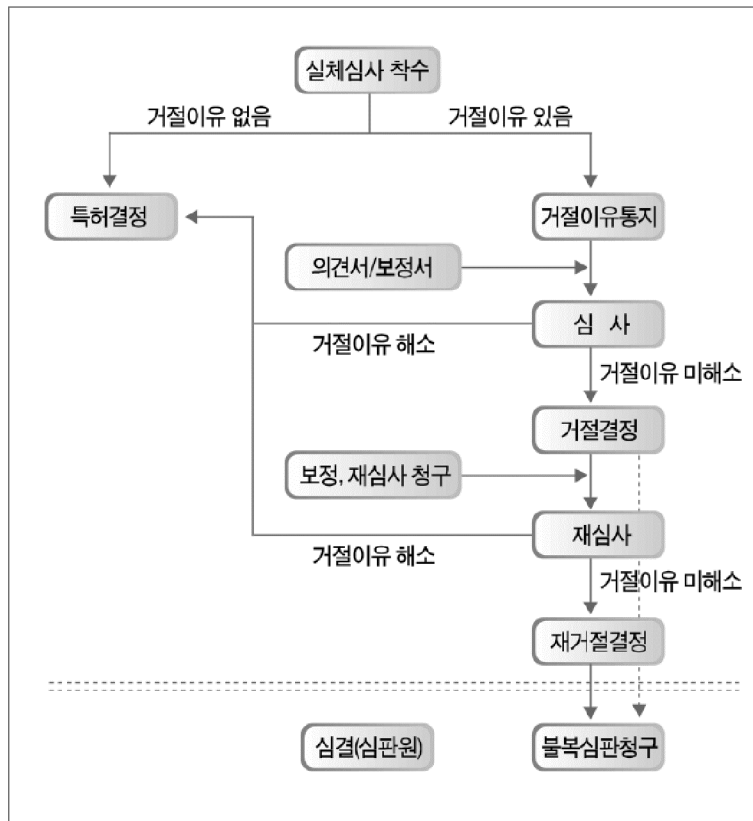
4 실체심사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법이 정한 특허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실체심사는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며, 특허요건에 관한 심사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입니다.

심사관은 특허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거절이유를 기재한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고, 이에 대응하여 출원인은 제출 기일 내에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실체심사 절차



■ 특허요건 관련 법규

-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법이 정한 특허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심사관은 아래의 특허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허법		불특허 요건
제25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 중 외국인으로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는 자
제29조	제1항 본문	산업상 이용 가능하지 않은 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에 해당하지 않은 것
	제1항 제1호	특허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제1항 제2호	신규성 특허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제2항	진보성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
	제3항 ~ 제7항	확대된 선출원 특허출원을 한 날 전에 출원하여 특허출원을 한 후에 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타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제32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공서양속)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제33조제1항 본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닌 무 권리자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자에 의한 출원
제36조	제1항 제3항 ~ 제5항 선출원	동일한 발명에 대해 다른 날 2 이상의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나중에 출원된 발명

	제2항 ~ 제6항		동일한 발명에 대해 같은 날 2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정해진 하나의 특허출원인만 특허 가능, 협의 불성립의 경우 모두 특허 불가능
제42조	제3항 제1호	발명의 설명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지 않은 경우
	제3항 제2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지 않은 경우
제42조	제4항	청구범위 기재요건·방법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은 경우
	제8항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있지 않은 경우 특허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청구범위 기재방법에 위배되는 경우
제44조		공동출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하지 않은 경우
제45조		1특허출원의 범위	1발명 1특허출원에 위배되는 경우
제47조 제2항		신규사항 추가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이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제52조 제1항		분할출원	원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분할출원한 경우
제53조 제1항		변경출원	원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변경출원한 경우
		조약	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서 발송

- 심사관은 심사 결과, 특허출원이 특허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일정한 기간(제출기일)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기재한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합니다.

Tip

BM 특허 출원의 거절이유로 자주 인용되는 특허요건은 성립성(법제29조제1항본문), 발명의 설명의 기재요건(법제42조제3항), 청구범위의 기재요건(법제42조제4항), 진보성(법제29조제2항) 등이 있습니다.

■ 의견제출통지서 수신에 따른 출원인의 대응

- 출원인은 의견제출통지서를 수신하면 심사관이 지적한 거절이유, 법 적용 및 증거자료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출원인은 심사관이 지적한 거절이유에 대응하여 제출 기일 내에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거절이유가 타당한 경우	거절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대 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원인은 심사관이 지적한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해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 ○ 명세서 등 보정서의 제출과 동시에 보정에 의해 거절이유를 해소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원인은 심사관이 지적한 거절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 ○ 심사관이 지적하지 않은 거절이유라도 자진해서 보정하거나 특허출원서의 기재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절차의 신속성을 위해 보정서를 제출

※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출원인은 특허출원 후 명세서 및 도면의 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기 전까지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여 특허출원서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에는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 보정할 수 있으며,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 청구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보정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심사관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수신한 경우 심사관이 지정한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여 특허출원서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 보정의 범위 제한

- 특허법은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먼저 출원하기 위해 완전하지 못한 발명을 우선 출원한 후 새로운 발명을 추가하여 뒤에 출원한 자나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출원 후 보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규사항 추가 금지	청구범위 감축 및 정정
보 정 범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판단한 결과 자명한 사항은 신규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 또는 재심사 청구 시에 하는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추가로 만족하여야 합니다. •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 신규사항이 추가된 부적법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청

		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면서 위 세가지 요건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
<p>※ 최후거절이유통지는 심사관의 거절이유 통지에 대응하여 제출한 보정서에 의해 신규사항이 추가되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p> <p>※ 보정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 특허청 홈페이지>책자/통계>간행물>지식재산 심사기준/매뉴얼 > 특실심사기준의 제4부 제2장 출원의 보정 참조</p>		

■ 지정기간 연장 및 단축

- 청구에 따라 지정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지정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관이 지정한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일은 1월 단위로 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4개월을 초과하여 지정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지정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정기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서 제출기일이 경과하기 전에 절차를 빨리 진행하고자 할 때는 명세서 등 보정서에 기간 단축의 취지를 기재하거나 지정기간단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지정기간단축 신청의 취소는 불가능하며 기간단축이 수리된 경우에는 추후 명세서 등 보정서는 제출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5 특허여부 결정

심사관은 출원에 관한 심사를 완료한 후 특허여부(특허결정 또는 거절결정)를 결정합니다.

■ 특허 결정

- 특허출원이 특허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심사관은 특허 결정하고 출원인에게 특허결정서를 송부합니다.
- 출원인은 특허결정서와 함께 송부된 납입고지서로 등록료와 등록세를 납부함으로써 특허권이 설정등록되고 특허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상 납부	특허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추가 납부	정상 납부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

■ 거절 결정

- 특허출원이 의견서 및 보정서를 통해서도 특허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하고 거절결정서를 송부합니다.
- 거절결정서를 송부 받은 출원인은 재심사 청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 청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가 없으면 거절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재심사 청구 (2009. 7. 1. 이후 출원)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
출원인	○ 출원인은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재심사를 청구	○ 출원인은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

대 응	<p>할 수 있으며, 재심사 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특허 거절결정된 출원일 것 ② 특허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의 청구가 없을 것 ③ 재심사 청구와 동시에 보정할 것 ○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의해서만 다룰 수 있습니다. 	<p>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기간은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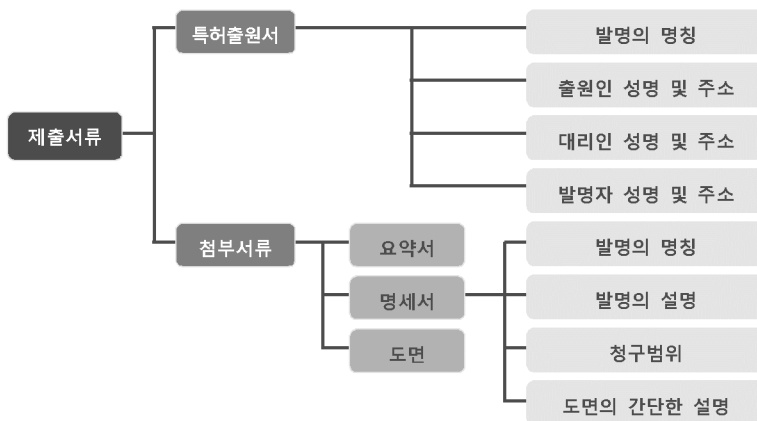
BM 특허의 명세서 작성 및 거절이유 대응

1. 특허출원 서류	53
2. 명세서 양식 및 작성 요령	60
3. 특허요건 위반 사례 및 대응	67
4. 의견제출통지 및 그 후의 절차	131

1 특허출원 서류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허출원에 필요한 필수 서류는 특허출원서, 요약서, 명세서 및 도면 등입니다.

■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 및 기재사항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

* 도면은 선택사항임

- **특허출원서**는 특허출원의 본체로서 특허를 받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나타낸 서면을 말하며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 **요약서**는 기술 정보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제출을 의무화한 것으로서 출원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명세서**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한 서면으로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로 구성됩니다.
- **도면**은 발명의 실시예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명세서의 보조수단으로 이용되며, 발명의 요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 특허출원서 예시

【서지사항】	
【서류명】	특허출원서
【참조번호】	****
【출원구분】	특허출원
【출원인】	
【성명】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4-2010-*****~*
【대리인】	
【성명】	김대리
【대리인코드】	9-2010-*****~*
【포괄위임등록번호】	2010-*****~*
【발명의 국문명칭】	모바일 금융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발명의 영문명칭】	MOBILE FINANCE SYSTEM AND METHOD
【발명자】	
【성명】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Dong
【주민등록번호】	*****~*****
【우편번호】	302-***
【주소】	대전시 서구 둔산동 ***
【국적】	KR
【심사청구】	청구
【취지】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대리인 김대리 (인)
【수수료】	
【출원료】	0 면 XX,000원
【가산출원료】	21 면 0원
【우선권주장료】	0 건
【심사청구료】	2 항 XX0,000원
【합계】	XX8,000원
【감면사유】	개인(70% 감면)
【감면후 수수료】	74,400원
【첨부서류】	1.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기타첨부서류 1통

■ 명세서, 요약서, 도면 예시**【명세서】****【발명의 명칭】**

모바일 금융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MOBILE FINANCE SYSTEM AND METHOD}

【기술분야】

본 발명은 모바일 금융 거래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전송 데이터를 최소화하고, 금융 어플리케이션의 생성, 유지보수 및 업데이트를 매우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모바일 금융 거래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휴대폰 등의 무선 단말기의 사용은 이미 보편화되었고, 기본 기능 이외에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부가서비스 중에서 광범위한 이용이 가능한 분야가 금융 분야이며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결제 등의 모바일 금융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 중 략 -

따라서, 모바일 금융을 위한 솔루션 제작 및 유지보수시의 재사용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현재로는 실제 솔루션의 제작 및 유지보수에 있어서 코드나 모듈의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실정으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개별 은행별로 모바일 금융 솔루션을 구축 실시하고 있어 불필요한 중복투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선행기술문헌】**【특허문헌】**

[문헌1] US 57XXXX3 A

[문헌2] JP 1X-XXXXXX A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금융 모바일 솔루션의 제작시 구성 모듈 또는 컴포넌트의 재사용성을 높이고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과제의 해결수단】

전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은 모바일 금융 거래를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금융 기관의 금융 서버와, 상기 금융 서버로부터 금융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금융 데이터 및 금융 어플리케이션 구동 스크립트를 병합하여 전송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바일 금융 서버와, 상기 금융 어플리케이션의 변경 사항을 업데이트하는 업데이트 서버와, 상기 전송 데이터를 무선 단말기로 전송하는 무선망과, 상기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UI를 구성하고 금융 거래를 처리할 스크립트 엔진을 탑재하며, 상기 전송 데이터를 수신하여 사용자에게 모바일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무선 단말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금융 거래 시스템을 제공한다.

- 중 략 -

본 발명의 또 다른 면에 따라, 상기 처리용 데이터 및 UI 구성용 스크립트를 병합하여 전송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바일 서비스 서버와, 상기 데이터 형식 및 상기 스크립트의 변경 사항을 업데이트하는 업데이트 서버와, 상기 전송 데이터를 무선 단말기로 전송하는 무선망과, 상기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UI를 구성하고 데이터를 처리할 스크립트 엔진을 탑재하며, 상기 전송 데이터를 수신하여 사용자에게 모바일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무선 단말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이 제공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S/W 모듈의 재사용성을 높여 모바일 솔루션 개발시의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고, 솔루션이나 데이터 형식의 변경사항을 용이하고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으며, 무선으로 송수신되는 데이터의 양을 감소시킴으로써 모바일 솔루션 제작자,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 모두에게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모바일 금융 시스템의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무선 단말기에서 수행되는 처리 흐름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와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구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 중 략 -

이상,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이는 예시에 불과한 것이며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범주내에서 다양한 변형과 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이하의 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할 것이다.

【청구범위】**【청구항 1】**

모바일 금융 거래를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금융 기관의 금융 서버와, 상기 금융 서버로부터 금융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금융 데이터 및 금융 어플리케이션 구동 스크립트를 병합하여 전송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바일 금융 서버와, 상기 금융 어플리케이션의 변경 사항을 업데이트하는 업데이트 서버와, 상기 전송 데이터를 무선 단말기로 전송하는 무선망과, 상기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UI를 구성하고 금융 거래를 처리할 스크립트 엔진을 탑재하며, 상기 전송 데이터를 수신하여 사용자에게 모바일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무선 단말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금융 거래 시스템.

【청구항 2】

무선 단말기에 미리 다운로드된 스크립트 엔진을 이용한 모바일 금융 거래 방법에 있어서, 모바일 금융 서버가, 금융 서버로부터 금융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금융 데이터 및 금융 거래 스크립트를 병합하여 전송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병합된 전송 데이터를 무선망을 통해 전송하는 단계와, 무선 단말기가, 상기 병합

된 전송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병합된 전송 데이터를 금융 데이터와 구동 스크립트로 분리하는 단계와, 상기 구동 스크립트를 파싱하여 UI를 구성하는 단계와, 상기 금융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계와, 상기 구성된 UI에 상기 처리된 금융 데이터를 표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금융 거래 방법.

【요약서】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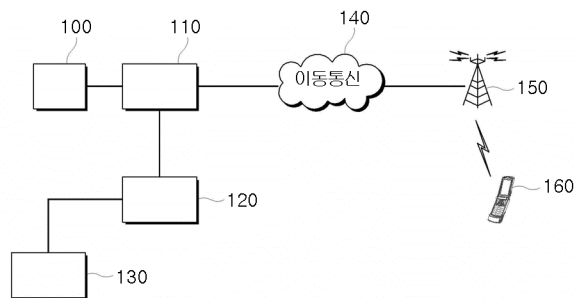
본 발명은 모바일 금융 거래를 위하여, 금융 기관의 금융 서버와, 상기 금융 서버로부터 금융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금융 데이터 및 금융 어플리케이션 구동 스크립트를 병합하여 전송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바일 금융 서버와, 상기 금융 어플리케이션의 변경 사항을 업데이트하는 업데이트 서버와, 상기 전송 데이터를 무선 단말기로 전송하는 무선 망과, 상기 금융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며, 상기 전송 데이터를 수신하여 사용자에게 모바일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무선 단말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금융 거래 시스템 및 금융 거래 방법을 제공한다.

【대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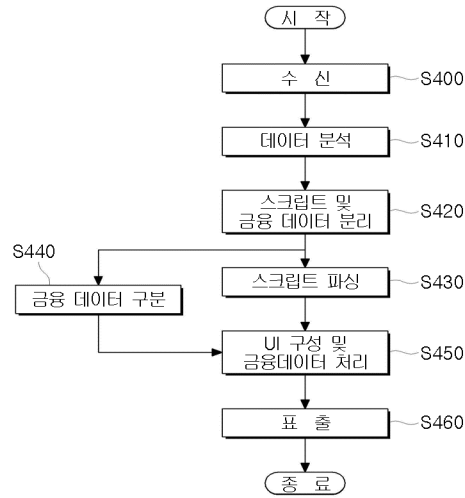
도 1

【도 면】

【도 1】



【도 2】



2 명세서 양식 및 작성 요령

명세서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한 서면으로서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로 구성됩니다.

특히 발명의 설명은 원칙적으로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 내용】,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란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명세서 작성 요령

【명세서】

【발명의 명칭】

작성요령

- 【발명의 명칭】은 막연하거나 장황한 기재를 피하고 발명의 내용에 따라 간명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산업재 유통을 위한 전자상거래 시스템」이라고 하여야 할 것을 「전자상거래 시스템」 또는 「시간 및 경비를 줄이고 구매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산업재 유통을 위한 전자상거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등은 부적당합니다.
- 개인명, 상표명, 상품의 애칭, 극히 추상적인 성능만을 나타내는 표현 또는 「특허」라는 용어를 발명의 명칭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예) XX (주), 개량된, 개선된, 최신식, 문명식 등
- 청구범위에 2 이상의 카테고리의 청구항(물건, 방법, 기록매체 등)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이들 복수의 카테고리를 포함하는 간단 명료한 명칭으로 기재하여 합니다.

예) 「공동구매 결제 시스템, 결제 방법 및 결제 방법을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매체」

- **【발명의 명칭】**은 그 발명이 무엇을 청구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발명의 내용이 예약시스템으로서 다방면의 서비스 분야에 응용되는 경우에는 **【발명의 명칭】**을 「예약시스템」이라고 기재하여도 무방하지만 호텔의 예약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호텔 예약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보정에 의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대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발명의 명칭】**도 이에 부합하도록 보정해야 합니다.

【기술분야】

작성요령

- **【기술분야】**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분야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배경기술】

작성요령

- **【배경기술】**은 발명의 이해, 선행기술 조사 및 심사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종래의 기술을 기재하고, 종래기술의 문헌정보를 함께 기재합니다.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작성요령

- **【선행기술문헌】**은 선택 기재 사항이며, 다음과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 [문헌1] US 57XXXX3 A

[문헌2] JP 1X-XXXXXX A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작성요령

-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에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과제로 하고 있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 등을 기재합니다.

【과제의 해결 수단】

작성요령

- 【과제의 해결 수단】에는 어떤 해결수단에 의해서 해당 과제가 해결되었는지를 기재합니다.
- 일반적으로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해결수단 그 자체가 됩니다.

【효과】

작성요령

- 【효과】에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종래의 기술과 대비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작성요령

- 첨부한 도면이 있는 경우 도면의 간단한 설명란에 도면의 각각에 대하여 각 도면이 무엇을 표시하는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작성요령

-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이 어떻게 실시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도 하나 이상, 가급적 여러 형태로 기재합니다.

-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예】란을 만들어 기재하고, 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면에 대해 설명을 기재합니다.

【청구범위】

작성요령

- 【청구범위】에는 【발명의 설명】에 개시한 발명 중 출원인이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 특허요건에 관한 심사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이므로 주의를 기울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은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 고도한 것일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BM 특허는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소프트웨어와 협동해 동작하는 정보처리 장치, 그 동작 방법 및 해당 소프트웨어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봅니다.

[BM 특허에 해당하지 않는 예]

- 청구항에 인간의 행위 또는 정신활동에 근거한 처리를 기재
- 청구항에 인위적인 결정 자체를 기재
- 순수한 영업방법 자체를 기재
- 청구항에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 없음
- 청구항에 추상적 아이디어 자체만을 기재
- 【청구범위】에 기재할 수 있는 발명의 범주에는 방법의 발명과 물건의 발명이 있는데, 발명을 시계열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 또는 조작, 즉 단계로서 표현할 수 있을 때 방법 발명으로

기재할 수 있고, 발명을 이루는 기능들을 수행하는 하드웨어 결합체는 물건 발명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청구범위】의 청구항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이는 【발명의 설명】에 공개하지 않은 사항을 【청구범위】에 청구항으로 기재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면 공개하지 않은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예]

- 【발명의 설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 상호 간에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양자의 대응관계가 불명료한 경우
-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이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means) 또는 공정(step)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들 수단 또는 공정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청구범위】의 청구항은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하는데, 이는 청구항의 기재가 불명확하거나 그 기재 내용이 간결하지 않은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면 발명의 보호범위가 불명확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결정하는 권리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으며 특허요건의 판단 등도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청구항의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않는 예]

- 청구항에 기재된 각 단계에서의 동작 주체가 불명확
- 청구항의 말미가 매체에 저장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기재되어 있어 발명이 속한 범주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단,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은 2014. 7. 1. 이후 출원부터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 청구항에 각 구성요소가 단순히 나열되어 있을 뿐 그 결합 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청구항의 기재가 너무 장황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이 불명확한 경우
- 청구항에 발명의 구성을 불명확하게 하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지시의 대상이 불명확하여 발명의 구성이 불명확한 경우
- 청구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구항이 적절한 수로 기재되지 않은 예]
 - 하나의 청구항에 발명의 범주가 다른 2 이상의 발명이 기재
 - 동일한 청구항을 중복하여 기재
 - 청구항 내 다수의 청구항을 중복하여 인용
-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인용하는 청구항을 택일적으로 기재한 예]
 - 청구항1 또는 청구항2에 있어서, ~장치
 - 청구항1 내지 청구항3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장치
 - 청구항1, 청구항2 또는 청구항3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장치
-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다른 청구항을 인용할 수 없습니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인 청구항4가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3을 인용한 예]
 - 【청구항 1】 ... 장치
 -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장치

【청구항 3】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장치

【청구항 4】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3에 있어서, ~장치

3 특허요건 위반 사례 및 대응

BM 발명의 심사에서 거절이유로 자주 인용되는 특허요건(성립성, 발명의 설명의 기재요건, 청구범위의 기재요건, 진보성)을 위주로 관련 조문, 판단기준, 위반사례 및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살펴봅니다.

가. 발명의 성립요건

특허법 제2조

- ①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특허법 제29조

-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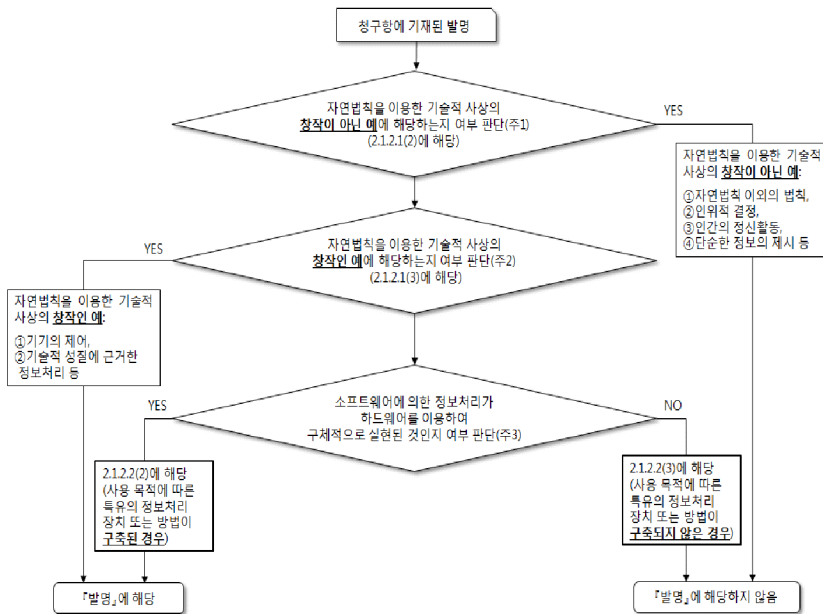
■ 판단기준

-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특허 출원된 발명이 특허법상의 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이 규정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도한 것」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실용신안법상의 「고안」과 특허법상의 「발명」을 구분하기 위한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실무상 「발명」의 성립요건에 대한 판단 시에는 「고도한 것」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으로는 자연법칙 자체, 단순한 발견이어서 창작이 아닌 것, 자연법칙에 위배하는 것,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아니한 것, 단순한 기능, 단순한 정보의 제시, 미적 창조물, 반복하여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것, 미완성 발명 등이 있습니다.

BM 발명에서의 기본적인 판단기준은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와 협동해 동작하는 정보처리 장치(기계), 그 동작 방법, 해당 소프트웨어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입니다.

■ BM 발명에서의 구체적인 판단방법

-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에 근거해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을 파악합니다.**
-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경우 해당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입니다.**
-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BM 발명(S/W 포함)의 성립요건 판단 절차]

「참조 판례」

-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영업방법을 구현하는 이른바 영업방법(business method)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하고, 한편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후3149).
-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경제법칙, 수학공식, 논리학적 법칙, 작도법 등), 인위적인 약속(게임의 규칙 그 자체 등), 또는 인간의 정신활동(영업계획 그 자체, 교수방법 그 자체, 금융보험제도 그 자체, 과세제도 그 자체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후265, 2007후494).

■ BM 발명에서의 성립성 위반 사례 및 대응

1 순수한 영업방법 자체를 청구한 경우

작성 사례 1

【청구항 1】

미리 제휴된 업체에서 자사의 제품에 동일한 단가와 같은 규격의 보너스 포인트 쿠폰을 삽입, 게재 또는 부착하는 보너스 포인트 쿠폰 발매단계, 보너스 포인트 쿠폰 모음판을 제공하고, 상기 보너스 포인트 쿠폰이 부착된 상품을 구입한 고객이 보너스 포인트 쿠폰을 일정개수 확보하여 보너스 포인트 쿠폰 모음판에 부착하면 현금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너스 포인트 상품권을 유통시키는 보너스 포인트 상품권 유통단계, 상기 보너스 포인트 상품권을 수집하여 보너스 포인트 쿠폰을 부착 또는 삽입하여 판매한 제조업체로부터 현금으로 교환받아 유통업체에 되돌려주는 보너스 상품권 결제단계 및 포인트 마케팅에 참가할 업체를 선정하

고, 보너스 포인트 상품권 유통단계와 보너스 포인트 상품권 결제단계를 총괄 제어하는 상품권 중개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프라인상에서 통합 포인트 마케팅을 통한 전략적 제휴방법.

해설 및 대응방법 1

- 청구항 제1항의 각 단계를 살펴보면 모두 종래의 오프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경제활동 행위로 이루어져 있고 컴퓨터상에서의 소프트웨어에 의한 처리과정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는 오프라인상에서의 순수한 영업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청구항 제1항의 각 단계가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명세서를 보정하여 거절이유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세서를 보정하는 경우 출원 시 명세서에 없었던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작성 사례 2

【청구항 1】

본 '여성 전용택시 운영방법'은 이 방법으로 운영할 택시회사가 설립되고 승용구인 여성 전용 택시와 택시를 운전할 여성 운전자와 이를 이용할 여성 승객을 필수 구성원으로 하며, 운행 시간은 야간 오후 8시로 하고 부르는 택시운영과 5% 내지 10% 할증 요금을 부가하며, '여성 전용 택시'라는 표지판을 달고 운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여성 전용택시 운영방법.

해설 및 대응방법 2

- 청구항 제1항의 요금 체계를 포함한 택시 운영 방법은 순수한 영업방법 중의 하나로서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청구항 제1항은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청구범위를 보정함으로써 특허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출원 시 발명의 설명 부문에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

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기재한 실시예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초 출원 시 발명의 설명을 최대한 풍부하고 세부적으로 기재함이 바람직합니다.

2 오프라인상의 인간의 행위를 청구한 경우

작성 사례

【청구항 1】

민원인이 필증 등을 교부하는 시·군·구청, 공단 및 공사 등의 기관을 방문한 후 각종 민원서류를 민원실에 접수하는 단계, 민원실이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된 서류를 검토팀으로 이양하는 단계, 민원실에서 이양된 서류를 받은 검토팀은 서류를 검토한 후 실사팀으로 서류를 이양하는 단계, 서류를 이양받은 실사팀이 서류를 검토한 후 현장으로 출동하여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합격으로 판단되면 검사일과 신청인 정보, 시공사 정보, 검사지 정보와 실사팀 담당의 정보 및 검사결과를 PDA 등의 모바일을 통하여 구청의 DB에 입력하는 단계; 입력이 끝나면 입력된 검사 결과에 따라 승인 및 부적의 결과가 나타나며, 승인된 경우 검사필증을 현장에서 프린터를 통하여 교부하고 현장에 프린터가 없을 경우 승인번호를 교부하고, 이후 민원인이 별도로 구청의 DB에 접속한 후 검사필증 재발급 화면에서 입력하여 검사필증을 추후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을 통한 현장 민원업무 처리방법.

해설 및 대응방법

- 청구항 제1항의 민원서류를 민원실에 접수하고 접수된 서류를 검토팀 및 실사팀으로 이양하여 실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실사 결과를 DB에 입력하는 일련의 단계는 인간의 행위 또는 정신활동이 개입되어 처리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발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각 단계의 행위 주체를 민원인의 단말, 민원실 담당자의 단말, 실사팀

담당자의 단말이 되도록 청구범위를 정정하거나 인간의 행위 또는 정신활동이 개입되어 있는 발명의 구성요소를 삭제하여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3 기술적 수단 및 구성 관계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작성 사례

【청구항 1】

플래시 프로그램을 이용한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의 자동 기술 방법.

해설 및 대응방법

- 청구항 제1항에는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를 자동 기술하기 위한 구체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수단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발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를 자동 기술하기 위한 구체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수단을 기재함으로써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으나, 보정시 새로운 사항이 추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인간의 정신적 판단 또는 인위적 결정이 포함된 경우

작성 사례 1

【청구항 1】

배출자 신상 정보가 입력된 바코드 스티커와 배출 쓰레기가 표시된 달력지를 관할 관청에서 각 배출자에게 배포하고, 각 배출자들은 정해진 규정에 의해 정확하게 분리된 쓰레기를 규정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되 반드시 배출자 신상정보가 입력된 바코드 스티커를 쓰레기 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하고, 수거자는 배출된 쓰레기를 요일별로 정확하게 분리수거하고 집하장으로 이송하여 재활용 쓰레기와 매립·소각할 쓰레기를 선별·처리하고, 잘못 분류된 쓰레기 봉투는 전면에 부착된 바코드

를 판독하여 해당 배출자에게 시정명령을 하며 각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축적하고 이를 통계로 종합 관리하도록 하는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 방법.

해설 및 대응방법 1

- 청구항 제1항은 관련 법령 등에 의한 규칙, 관할 관청, 배출자 및 수거자 간의 약속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인위적인 인간의 결정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처리에 불과하므로 발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할 관청 등의 정신적 판단 또는 인위적 결정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처리를 청구범위의 구성요소에서 삭제하여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작성 사례 24)

【청구항 1】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부재들의 원재로 선정된 원목들에 원산지, 모듈 번호를 포함하는 코드가 부여된 이력관리부재인 태그를 장착하는 이력관리부재 장착단계와, 상기 태그에 부여된 코드에 해당하며 한옥을 구성하는 건축부재의 치수와 조립을 위한 정보들을 상기 태그를 판독하는 리더기를 갖는 서버에 기록하는 서버 구축단계와, 상기 리더기를 이용하여 상기 원목에 설치된 태그로부터 한옥을 구성하는 건축부재의 코드를 인식한 후 상기 서버에 기록된 건축부재의 치수에 근거하여 태그가 장착된 원목을 NC가공장치에 의해 건축부재로 가공하는 건축부재 가공단계와, 가공된 건축부재들에 설치된 태그로부터 상기 리더기에 의해 상기 코드에 포함된 모듈번호를 확인하고, 이 모듈번호를 이용하여 한옥을 건축하는 한옥 건축단계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옥 건축 방법.

해설 및 대응방법 2

- 제1항 발명에서 원목에 장착된 태그에 수용되는 정보를 리더기로 판

4) 2012허2258, 2012후3114

독하여 서버에 기록하고, 태그와 서버에 기록된 정보에 근거하여 NC 가공장치에 의해 건축부재를 가공하는 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작업들인 원목을 그 상태 등에 따라 쓰임새를 판단하여 적합한 건축부재로 선별하는 작업, 한옥을 설계하는 작업, 이력관리부재인 태그의 손상을 피하면서 원목을 건축부재로 가공하는 작업, 한옥을 건축하는 작업은 모두 인간의 순수한 정신활동에 근거하는 인위적 결정 내지 사실행위이고,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이력관리부재인 태그에 수용되는 정보가 무엇인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한정이 없어 인간의 정신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제1항 발명은 '건축부재들에 설치된 태그로부터 확인된 모듈번호를 이용하여 한옥을 건축하는 한옥 건축단계'를 그 핵심적 구성 중 하나로 포함하고 있는데, 모듈번호를 이용하여 한옥을 건축하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술구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그 실현을 위해서는 인간이 건축자재의 모듈번호와 서버에 저장된 조립정보 등을 확인하여 건축자재를 적절한 곳에 배치하고 조립하는 것 등과 같은 정신적 판단 또는 인위적 결정이 주된 부분으로 요구되므로, 그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보기에 부족합니다.
-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각 단계들의 동작을 수행하는 주체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협동에 의한 구체적인 처리과정이 기재되어야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5 비기술적인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작성 사례

【청구항 1】

주문하고자 하는 인쇄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상으로 명함 제작을 주문 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으로 송금하는 소비자, 인터넷상으로 소비자로부터 명함제작 주문을 받아 이를 제작 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의 일정액을 후원기금으로 조성하는 인쇄업체, 인쇄업체로부터 인쇄 완료된 명함을 받아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발송업체, 소비자가 주문한 명함제작을 통해 발생하는 금액을 이체 받아 이를 인쇄업체의 결정하에 후술하는 후원기관으로 후원금을 이체하는 은행 및 은행으로 소비자로부터 입금된 금액 중 일정액의 후원금을 인쇄업체로부터 전달받는 후원기관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후원기금 마련 시스템.

해설 및 대응방법

- 청구항 제1항은 기술적 구성요소라고 할 수 없는 소비자, 인쇄업체, 발송업체, 은행 및 후원기관 자체를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함 제작, 주문, 송금, 후원금 이체와 같은 오프라인상의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 구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기재된 소비자, 인쇄업체, 발송업체, 은행, 후원기관을 소비자 단말, 인쇄업체 단말, 발송업체 단말, 은행 단말, 후원기관 단말로 기재하여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6 추상적인 아이디어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작성 사례

【청구항 1】

시청각 학습과정의 영상강의는 과목별로 가장 잘 가르치는 강사가 전담하며, 복습과정, 스터디그룹 학습과정, 연습과정은 강의를 하지 않는 학습자의 담임교사가 지휘 감독하며, 학습자의 학습내용점검 및 생활지도를 하게 하여 효율적인 학습자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법.

해설 및 대응방법

- 청구항 제1항은 발명의 과정이 일반적인 학습방법을 추상적인 아이디어로만 청구하고 있을 뿐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이 없으므로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법이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명세서를 보정하여 거절이유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원 시 명세서에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보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출원발명이 공개 전이라면 출원을 취하한 후 재출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7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은 경우

작성 사례 1⁵⁾

【청구항 1】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에서 회원 자신을 개인방 형태로 표현하는 미니룸을 미니룸 저장공간에 자동 생성하는 미니룸 자동 생성단계와; 상기 미니룸을 회원의 특성에 맞게 꾸미도록 가구 저장공간에 전시된 가구가

5) 2005허11094, 2007후494

회원들에 의해 선택되어지면, 구매선택된 상기 가구를 미니룸 가구 저장공간에 저장하는 미니룸 가구 저장단계와; 상기 미니룸 가구 저장공간에 등록된 상기 가구를 해당 회원의 미니룸의 원하는 위치에 지정되면 회원의 미니룸 저장공간에 배치하는 가구 배치단계를 갖는 인터넷 커뮤니티상의 개인방 형태의 미니룸 생성 및 관리방법.

해설 및 대응방법 1

- 서비스제공자 서버의 미니룸 저장공간에 미니룸이 자동 생성만 될 뿐, 회원이 컴퓨터를 통해서 미니룸의 생성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미니룸 가구 저장단계에서 “전시”된 가구라는 표현은 회원이 볼 수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기억수단인 데이터베이스에 가구가 어떻게 전시되고, 회원이 구매가구 선택을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가구목록에 어떻게 접근하여 선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회원이 데이터베이스[미니룸 가구저장 공간]에 어떻게 접근하여 어떤 방식으로 가구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1 발명은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청구항 제1항은 각 단계들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목적에 따른 각 단계별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도 않아,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각 단계들의 동작을 수행하는 주체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협동에 의한 구체적인 처리과정이 기재되어야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작성 사례 2⁶⁾

【청구항 1】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품 구매 정보 및 가상 아이템 정보를 이용하여 아이템 서버에서 컨설팅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생활 설계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미리 저장된 상기 사용자의 상품 구매 정보, 획득 아이템을 추출하는 단계-여기서, 상기 획득 아이템은 사용자의 상품 구매에 상응하여 보유된 사용자의 가상 아이템임-; 상기 상품 구매 정보 및 상기 획득 아이템을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의 생활 설계 기초 정보를 도출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의 생활 설계 기초 정보를 분야별, 영역별로 분석하거나 미리 저장된 생활 설계 기준 정보와 비교하는 단계; 상기 분석 또는 비교 결과를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의 생활 설계 결과를 산출하는 단계; 및 상기 생활 설계 결과를 상기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상품 구매 정보 및 가상 아이템 정보를 이용한 컨설팅 제공 방법.

해설 및 대응방법 2

- 청구항 제1항은 생활설계 기초정보를 분석, 비교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산출하는 구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발명의 설명에도 생활설계 기초 정보를 “미리 정해진 컨설팅 정보 산출 방법”에 따라 분석하거나, 한국인의 평균치 또는 회원 전체의 평균치와 비교, 분석하여 생활설계 결과를 산출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미리 정해진 컨설팅 정보 산출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방법인지, 생활설계 기초 정보를 한국인의 평균치 또는 회원 전체의 평균치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비교, 분석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산출해 내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생활설계 기초 정보에 대한 비교, 분석 및 생활설계 결과의 산출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어떻게 협동함으로써 실현되는지에 대하여도

6) 2006허1742, 2007후265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1항 중 사용자의 생활설계 기초 정보에 대한 분석, 비교 및 생활설계 결과를 산출하는 구성은 사람이 생활설계 기초 정보를 분석, 비교하여 결과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 청구항 제1항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부분에 사람의 정신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와 발명의 설명에 생활설계 기초 정보를 분석, 비교하여 결과를 산출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청구항 제1항은 이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여한 미완성 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 알 수 없고, 이는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제1항 발명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를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이 실시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실시예가 기재되어야 하고,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각 단계들의 동작을 수행하는 주체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협동에 의한 구체적인 처리과정이 기재되어야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 발명의 설명의 기재요건

특허법 제42조

- ③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
 2.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

■ 판단기준

-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란 그 출원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평균적 기술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 「실시할 수 있을 정도」는 물건의 발명에서는 그 물건을 제조할 수 있고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방법의 발명에 있어서는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있어서는 그 방법에 의하여 그 물건을 제조할 수 있을 정도를 말합니다.

발명의 설명에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항과는 관련 없는 발명의 경우에는 발명의 설명에만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 실시 가능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명의 설명의 기재요건(특허법 제42조제3항제1호)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과도한 시행착오나 반복 실험 등을 거치지 않고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를 말합니다.
-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특허법 제42조제3항제2호)은 발명의 기술상의 의의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선행기술 조사 및 심사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종래의 기술을 의미합니다.

배경기술의 구체적 설명을 기재해야 하고, 배경기술이 개시된 선행기술문헌 정보도 기재해야 합니다.

■ BM 발명에서의 구체적인 판단방법

-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술 용어, 약호, 기호 등을 정의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어서, 이들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결과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는 실시 가능 요건 위반이 됩니다.
- 발명의 설명에서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에 대응하는 기술적 단계 또는 기능을 추상적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 그 단계 또는 기능을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로 어떻게 실행하거나 실현하는지 기재하지 않은 결과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시 가능 요건 위반이 됩니다.
- 발명의 설명에서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의 기능을 실현하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단순히 기능 블록도 또는 개략 플로차트로 설명하고 있고, 그 기능 블록도 또는 개략 플로차트에 의한 설명으로는 어떻게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결과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시 가능 요건 위반이 됩니다.
- 청구항은 기능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특정하고 있는데 발명의 설명은 플로차트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청구항의 기능과 발명의 설명의 플로차트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결과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실시 가능 요건 위반이 됩니다.

「참조 판례」

-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을 실질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며,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되는 용어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의미로 사용하고 동시에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하지만 어떠한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용어의 의미가 명세서에 정의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해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후2260).

■ BM 발명에서의 발명의 설명 기재 요건 위반 사례 및 대응

1 구체적인 기술 구성 및 실시예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작성 사례

【청구항 1】

구매자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구매 도우미와 접촉하는 제1단계, 구매 도우미가 컴퓨터 대화 지원 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매자에게 상품에 관련된 개인 맞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구매자의 답변을 가공하는 제2단계, 구매자의 답변에 의거하여 컴퓨터 대화 지원 시스템이 구매자의 성향과 속성에 맞는 구매 희망 품목에 대한 사진 정보, 제원, 상세 상품 정보, 제조사 정보, 가격 정보 및 부가 정보 등을 구매 정보 서버 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져오는 제3단계, 구매자의 답변에 의거하여 컴퓨터 대화 지원 시스템이 구매자의 성향과 속성에 맞는 서식들을 열거하고 구매 도우미가 해당 서식을 선택하는 제4단계, 선택한 해당 서식과 구매 정보 서버 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져온 구매 희망 품목에 대한 정보를 맵핑함으로써 웹페이지를 만드는 제5단계 및 상기 과정을 따라 만들어진 웹페이지의 주소(URL)를 구매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는 제6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 정보 제공 방법.

【발명의 설명】

일련의 질문은 구매자의 답변을 거쳐 컴퓨터 대화 지원 시스템이 답변을 분석하여 가장 근접한 라이프 스타일을 도출해 낸다. 최종적으로 컴퓨터 대화 지원 시스템은 구매자의 구매 패턴 분석 결과와 입력한 구매자의 구매 품목 정보에 의거하여 구매 정보 서버 내 데이터베이스에서 구매 가능 품목들에 대한 정보들을 가져와 구매 도우미에게 보여지게 된다.

해설 및 대응방법

- 이 출원발명의 설명에서는 구매자로부터 전달받은 상품의 기초 정보에 의거하여 가장 근접한 상품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컴퓨터 대화 지

원 시스템이 구매자의 답변을 분석하여 구매 정보 서버 내 데이터베이스에서 구매 가능 품목들에 대한 정보들에 대해 패턴 분석을 수행한다고만 기재하고 있을 뿐, 컴퓨터 대화 지원 시스템의 분석이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떻게 수행되어 구매자가 원하는 상품과 가장 근접한 상품을 검색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재한 바가 없어 이 정도만으로는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반복 재현할 수 있는 등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습니다.

- 컴퓨터 대화 지원 시스템의 분석이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떻게 수행되어 구매자가 원하는 상품과 가장 근접한 상품을 검색하는지에 대하여 발명의 설명에 구체적으로 기재되도록 명세서를 보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위하여 도면을 보정 또는 추가하거나 실시예 등을 추가하는 보정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기술수단 및 기능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작성 사례

【청구항 1】

사용자의 기본 정보, 생활 패턴 등의 정보를 입력받고 회원 아이디(ID) 및 패스워드를 발급하는 제1단계, 제1단계에 따라 가입한 다수의 회원이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홈페이지 접속 시 특정의 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정보 이용료를 지급하는 제2단계, 제2단계 수행 후 회원들이 교양·정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음과 함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한 친구들의 이름과 생일을 입력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제3단계, 회원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해당 친구의 생일이 되면 웹서버의 제어에 의해 인터넷과 상품 공급자를 통하여 생일 맞은 친구에게 생일 축하 선물을 배달해 주는 제4단계 및 제3단계에서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하여 클릭한 회원들 중에서 소정 비율의 회원들에게 추천에 따라 기념품을 역으로 제공하는 제5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회원의 경조사 참여 방법.

【발명의 설명】

웹서버에서는 친구의 생일이 입력된 회원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가져와 생일 여부를 판단하다가 친구의 생일이 되면, 선물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선물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게 되며, 이에 따라 웹서버의 제어 하에 인터넷과 상품 공급자를 통하여 생일을 맞이한 친구에게 축하 선물을 배달하게 된다.

~(중략)~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은 친구에게 보낼 선물이 지정되는데, 이때 소정의 지정 선물비를 승인 시스템을 통하여 웹서버에 지불하게 된다.

해설 및 대응방법

- 발명의 설명에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웹서버의 제어를 웹서버 내부의 어떤 구성요소가 어떻게 동작하여 생일을 맞이한 친구와 상품 공급자가 연결되고, 상품 공급자로부터 친구에게 어떤 과정을 통하여 선물배달이 이루어지는지 기술수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있지 않아 당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었다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승인 시스템의 어떤 구성요소가 어떤 데이터를 송수신하여 지정 선물비를 어떻게 웹서버에 지불하는지, 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반복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본 사례는 선물배달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술수단과 선물비를 어떻게 웹서버에 지불하는지를 발명의 설명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3 기술적 구성 간의 상호 결합관계가 불명료한 경우

작성 사례

【청구항 1】

사용자들에게 웹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 사용자들에게 이미 제공한 이메일 주소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 제1데이터베이스와 웹서버를 구비한 웹사이트가 일반 사용자들에게 웹메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웹사이트를 모집하며 웹메일 서비스를 하지 않는 웹사이트들이 이미 부여한 이메일 주소를 제2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 웹메일 서비스를 원하는 사용자가 웹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이메일 주소를 부여받기 위하여 접속하면 상기 웹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웹서버가 사용자가 원하는 아이디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창을 전송하는 단계,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를 전송받은 웹서버는 제1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일치하는 아이디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에 웹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주소를 결합시켜 사용자에게 이메일 주소를 부여하고 제1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 및 제1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일치하는 아이디가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웹서버는 제2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가 이메일 주소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웹사이트를 찾아서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와 찾아낸 웹사이트 주소를 결합시켜 사용자에게 이메일 주소를 부여하고 제2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이메일 주소 부여방법.

【발명의 설명】

[0031] 이 출원발명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웹사이트(10)는 상기 모집된 웹메일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는 웹사이트(20, 30, 40)의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웹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 등의 방법을 통하여 허락을 얻어야 한다. 웹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10)의 웹서버(11)는 웹메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웹사이트(20, 30, 40)의 목록인 주소들을 (URL, uniform resource locator)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들 웹메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웹사이트가 정상적

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검색한다. 이와 같이 웹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10)의 웹서버(11)가 웹메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웹사이트의 주소(URL)를 기억하고 있다가, 필요시에 이들 URL 주소를 인터넷 상에서 추적해 들어감으로써 목적하는 웹메일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웹사이트(20, 30, 40)와 추적한 서버(11)의 주체인 웹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10)가 연결된다.

웹서버(11)는 이메일 주소를 사용자에게 부여하기 전에, 부여할 이메일 주소를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이 이메일 주소에 동의할 것인가를 묻는다. 다음에 사용자가 동의하면 웹서버(11)는 사용자에게 해당 이메일 주소를 부여하고,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과정을 요청하거나 다른 이메일 주소를 보여준다. 사용자가 동의하면 상기 웹서버(11)는 사용자에게 해당 이메일 주소를 부여한다. 이 이메일 주소는 상술한 바와 같이 jjoo@givemail.net 혹은 jjoo@inch21.net 이다. 다음에, 웹서버(11)는 사용자에게 인증 과정을 실행할 것을 요청한다.

<40> 이 인증과정은 먼저 사용자가 해당 웹사이트(10)에서 회원가입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아이디를 입력하는 순서가 먼저 나온다. 이 아이디를 입력하는 순서에서 사용자는 아이디란에 예를 들면 jjoo 혹은 jjoo@inch21.net을 입력한다. 다음에 사용자가 원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그 다음 인증 마침 과정을 실행하면 인증이 된다. 다음에는 이메일에 대해 사용자가 송수신을 확인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사용자가 웹메일을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메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의 아이디가 jjoo이면 아이디란에 jjoo를 타이핑하고 패스워드란에 비밀번호를 타이핑하면 로그인 이 되고 해당 사용자에게 몇 통의 이메일이 수신되어 있는가가 표시된다. 이메일을 보내는 기능의 버튼도 화면에 표시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용자는 이메일을 수신할 수 있고, 수신된 메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송신할 수도 있다.

한편, 사용자의 아이디가 웹메일을 서비스하지 않는 웹사이트의 도메인 네임과 결합된 아이디일 경우에는 사용자가 웹메일을 서비스하는 웹사

이트에 접속한다. 다음에 아이디란에 예를 들면, jjoo@inch21.net을 타이핑한다. 즉, 이메일 주소가 곧 아이디이다. 다음에 패스워드란에 비밀번호를 타이핑한다. 그러면 상기 아이디가 jjoo인 경우와 동일한 과정으로 사용자는 이메일을 수신할 수도 있고, 수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송신할 수도 있다.

해설 및 대응방법

- 발명의 설명의 [0031]에서 “웹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웹서버가 웹메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웹사이트의 주소(URL)를 기억하고 있다가, 필요시에 이들 URL 주소를 인터넷상에서 추적해 들어감으로써 목적하는 웹메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웹사이트와 추적한 서버의 주체인 웹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연결된다”고 기재하고 있지만, 이는 웹서버와 웹메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웹사이트 간의 접속 방법만 기재하고 있을 뿐, 웹서버가 웹메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웹사이트와 접속한 후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자 아이디를 이용한 메일서비스가 가능한지에 대한 기재가 불명료합니다.
- 또한, 메일 송수신 확인을 하기 위해 그 전제가 되는 아이디와 웹사이트 연결 간의 상호관계가 불명료하며, 이에 따라 메일의 송수신 확인을 위한 과정도 불명료합니다.
- 웹서버가 웹메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웹사이트와 접속한 후 사용자 아이디를 이용한 메일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는 방법 및 아이디와 웹사이트 연결 간의 상호관계를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4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이 불명료한 경우

작성 사례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0003】 새롭게 만들어진 신조어 중 ‘지옥철’, ‘지옥 버스’라는 말은 출·퇴근길, 등·하곳길을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단어이다. 이는 출·퇴근 시간이나 등·하교 시간이면 어김없이 혼잡도가 증가하여 여름이면 특히나 더 현대인들의 불쾌지수를 높이는 데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해설 및 대응방법

-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에는 발명의 기술상의 의의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선행기술 조사 및 심사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종래의 기술이 기재되어야 하나, 이 출원의 명세서의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에는 단지 현재의 대중교통의 문제점 또는 불편한 점만이 기술되어 있고 배경기술의 구체적 설명이나 배경기술이 개시된 선행기술문헌 정보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출원인은 명세서의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항목에 발명의 성립 배경과 의미를 이해하고 심사 및 선행기술조사에 도움이 되도록 출원발명의 배경기술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선행기술문헌】항목에 적절한 배경기술이 개시된 선행기술문헌의 정보를 추가하는 보정을 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기술과 전혀 다른 신규한 발상에 의해 개발된 발명이어서 적절한 배경기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에 그러한 취지를 설명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출원인이 배경기술의 설명을 추가한 경우에는, 그것이 최초 명세서 및 도면으로부터 자명하게 도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면 신규사항 추가가 될 수 있음으로 유의해야 한다. 다만, 선행기술문헌 정보만 추가하는 것은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청구범위 기재요건

특허법 제42조

- ④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적은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 ⑧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허법 시행령 제5조

- ① 법 제42조 제8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 ② 청구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삭제
- ④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적어야 한다.
- ⑤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⑥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⑦ 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
- ⑧ 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 판단기준

(1)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 발명의 설명은 기술 공개서로서의 역할을 하는바, 발명의 설명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청구범위에 기재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면 공개하지 않은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될 것」(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허를 받고자 하여 청구항에 기재한 발명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한 것인가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간결하지 않은 청구항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면 발명의 보호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고 특허요건의 판단 등도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는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청구항의 기재 기준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의 기재, 출원시의 기술상식 등을 고려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발명이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함은 청구항의 기재 그 자체가 간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발명 자체의 개념이 간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 BM 발명에서의 구체적인 판단방법

-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직접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암시도 되어 있지 않으면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명의 설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 상호 간에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양자의 대응 관계가 불명료한 경우

-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이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means) 또는 공정(step)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들 수단 또는 공정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않은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항에 각 구성요소가 단순히 나열되어 있을 뿐 그 결합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청구항의 기재가 너무 장황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이 불명확한 경우
- 청구항에 발명의 구성을 불명확하게 하는 표현이 있는 경우
- 발명 구성요소의 지시 대상이 불명확한 경우

「참조 판례」

-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청구항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청구범위와 발명의 설명의 각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청구범위에 속한 기술 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02후2051).
-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4후1120).
-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고,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있는지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따라 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4후1563).

■ BM 발명에서의 청구범위 기재 요건 위반 사례 및 대응

1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작성 사례 1

【청구항 1】

본사에서는 웹서버와 물품 데이터베이스 서버, 회원관리서버, 지역별 프리랜서 서버, 지역별 웹사이트 서버로 구성되어 물품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의하여 제공되는 제품 안내와 관련된 카탈로그 파일을 제공하고, 주문의 발생 시 이를 접수하여 미리 계약된 상품 제조, 판매사에 공급의뢰를 하고 구매 후 재고관리과정을 거쳐 출고시킨 다음 소비자로부터 온라인 현금결제나 신용카드, 지로 등의 지불 수단으로 금액의 지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된 메인시스템 및 실수요자를 상대하며 수주 시 그 내용을 본사의 메인시스템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지역별 관리자의 단말기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상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네트워크 시스템.

【발명의 설명】

지역별 프리랜서는 지역별 관리자 PC를 통하여 물품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물품 관련 정보와 코드를 숙지하고 아울러 각자가 할당받은 지역에서 대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을 전개하여 주문을 발생시킨 다음 지역별 관리자 PC를 이용하여 지역별 웹사이트로 상품코드와 수량 그리고 주문자 관련 카드번호, 주소, 배송처, 연락처, 성명 등의 필요한 인적사항을 입력시키게 된다. 이에 따라 본사에서는 주기적으로 새로 입력된 물품데이터베이스 서버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카드번호, 성명, 주소 등으로 신용불량자 여부를 판단한 후 상품코드와 수량의 확보가 가능한지 제조·판매사에 조회하고, 출고 일자, 시간 데이터를 확보한 후 자체 또는 배송 회사에 출고업무를 지시한다. 이와 같이 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배송하게 되는 것이며, 소비자가 대금을 지불하는 수단이 현금인 경우에는 지역별 프리랜서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본사로 온라인 현금 송금 또는 지로 용지를 사용하여 입금 가능한 것이다.

해설 및 대응방법 1

- 청구항 제1항을 보면, 메인시스템이 웹서버, 물품 데이터베이스 서버, 회원관리서버, 지역별 프리랜서 서버, 지역별 웹사이트 서버로 구성되어 있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지역별 프리랜서 서버'는 청구항에만 기재되어 있을 뿐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1항의 구성이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청구항 제1항은 "주문의 발생시 이를 접수하여 미리 계약된 상품 제조, 판매사에 공급 의뢰를 하고 구매 후 재고관리 과정을 거쳐 출고시킨 다음 소비자로부터 온라인 현금결제나 신용카드, 지로 등의 지불 수단으로 금액의 지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된 메인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으나, 발명의 설명에서는 극히 일반적인 영업 활동 내용만 기술하고 있을 뿐, 상기 기능을 갖는 메인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어떤 구성으로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가 없으므로, 청구항 제1항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 '지역별 프리랜서 서버'를 발명의 설명에 기재하고 온라인 현금결제나 신용카드, 지로 등의 지불 수단으로 결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메인시스템이 구체적으로 구현되도록 기재함으로써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단 '지역별 프리랜서 서버'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성 사례 2

【청구항 1】

통합 대상 시스템을 분석하여 기술 속성(technology attribute)을 추출하고 통합 대상 시스템을 시스템 개체 구조(SES)로 표현하는 단계(a) 및 상기 단계에서 추출된 기술 속성(technology attribute), 구성 기술의 선택 기준이 되는 환경 요소(environmental fact) 및 전정 규칙(pruning rule)을 고려하여, 상기 단계(a)에서 시스템 개체 구조(SES)로 표현된 통합 대상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에 대하여 전정(pruning) 작업(operation) 단계(b)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개체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 통합 방법.

【발명의 설명】

통합 대상인 정보 보호 시스템이 시스템 개체 구조(SES)로 표현되는 경우, '기술 속성(technology attribute)'이란 시스템 개체 구조(SES)의 각 노드가 되는 정보 보호 기술의 속성을 의미한다. 기술 속성을 도출하기 위하여는 먼저 통합 대상 시스템의 각 요소 기술들에 대한 분류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기술 분류(technology taxonomy)라고 한다. 기술 분류에서 먼저 대분류로 기술의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각 구성 기술을, 공격에 대한 예방(Prevention), 탐지(Detection) 및 대응(Response)의 3가지로 분류한다. 통합 대상인 정보 보호 시스템이 시스템 개체 구조(SES)로 표현되는 경우, '기술 속성(technology attribute)'이란 시스템 개체 구조(SES)의 각 노드가 되는 정보 보호 기술의 속성을 의미한다. 기술 속성을 도출하기 위하여는 먼저 통합 대상 시스템의 각 요소 기술들에 대한 분류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기술 분류(technology taxonomy)라고 한다. 기술 분류에서 먼저 대분류로 기술의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각 구성 기술을, 공격에 대한 예방(Prevention), 탐지(Detection) 및 대응(Response)의 3가지로 분류한다.

해설 및 대응방법 2

- 발명의 설명을 살펴보면, 정보보호시스템에서의 기술 속성이 정보보호 기술 속성이라고만 언급되어 있을 뿐, 정보보호 기술 속성이 무엇인지, 통상적인 시스템에서의 기술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명의 설명에 상기 기술 속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함으로써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2 | 청구항의 기재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작성 사례****【청구항 1】**

컴퓨터를 이용해 고객으로부터 상품의 주문을 받아들이는 단계, 주문된 상품의 재고를 조사하는 단계, 해당 상품의 재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발송할 수 있음을 위 고객에게 대답하고 해당 상품의 재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발송할 수 없음을 위 고객에게 대답하는 단계를 실행하는 수주 방법.

해설 및 대응방법

- 먼저 “컴퓨터를 (계산 도구로서) 이용해, (사람이 컴퓨터를 조작해) 고객으로부터 상품의 주문을 받아들이는 단계, (사람이 컴퓨터를 조작해) 주문된 상품의 재고를 조사하는 단계, 해당 상품의 재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발송할 수 있음을 (사람이 컴퓨터를 조작해) 위 고객에게 대답하고 해당 상품의 재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발송할 수 없음을 (사람이 컴퓨터를 조작해) 위 고객에게 대답하는 단계를 실행하는 수주 방법”이라는 ‘컴퓨터라는 계산 도구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컴퓨터를 이용해 (구축된 수주 시스템에서), (컴퓨터가 갖춘 수단 A가) 고객으로부터 상품의 주문을 받아들이는 단계, (컴퓨터가 갖춘 수단 B가) 주문된 상품의 재고를 조사하는 단계, 해당 상품의 재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발송할 수 있음을 (컴퓨터가 갖춘 수단 C가) 위 고객에게 대답하고 해당 상품의 재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발송할 수 없음을 (컴퓨터가 갖춘 수단 C가) 위 고객에게 대답하는 단계를 실행하는 수주 방법”이라는 ‘컴퓨터·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 방법’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 본래 별개의 청구항에 기재해야 할 ‘컴퓨터라는 계산 도구를 조작하는 방법’ 및 ‘컴퓨터·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 방법’이라는 다른

개념을 하나의 청구항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 ‘컴퓨터라는 계산 도구를 조작하는 방법’과 ‘컴퓨터·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 방법’을 각각 별도의 청구항으로 함으로써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3 발명의 카테고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작성 사례 1

【청구항 1】

3D모델에 대한 속성정보를 입력하는 코드, 속성정보가 관련된 가상 평면인 속성 배열평면을 설정하는 코드, 상기 속성 배열평면에 관련하여 속성정보를 저장하는 코드, 상기 속성 배열평면의 존재를 표시하는 프레임 설정하는 코드, 상기 속성 배열평면의 명칭을 상기 프레임에 배치하는 코드, 상기 속성정보를 표시수단에 표시하는 경우에 복수의 상기 속성 배열평면이 존재하는 때에 표시수단에 명칭이 중첩되는 것을 회피하도록 상기 속성 배열평면의 명칭을 배열하는 코드를 포함하는 컴퓨터실행 프로그램 제품으로서, 3차원 공간 위에 3D 모델과 함께 서로 평행인 복수의 속성 배열평면이 복수 존재하면서 시선 방향의 이동에 따라서 상기 속성 배열평면의 법선방향과 상기 시선 방향이 일치할 경우에는 속성 배열평면의 프레임을 비키어 놓고 명칭을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실행 프로그램 제품.

해설 및 대응방법 1

- 청구항 제1항에는 ‘컴퓨터실행 프로그램 제품’을 발명으로서 청구하고 있으나, ‘컴퓨터실행 프로그램 제품’은 물건에 관한 발명인지 방법에 관한 발명인지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는 컴퓨터를 실행시키기 위한 명령어의 집합으로서 그 자체는 단순한 정보에 불과합니다.

-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신호, 프로그램 신호열, 프로그램 산출물 등도 발명이 속한 범주가 명확하지 않은 것에 해당합니다.
-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과 연동해 동작하는 정보처리장치(기계), 그 동작 방법, 해당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및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14.7.1. 출원부터 적용)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발명은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또는 '매체에 저장된 프로그램'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성 사례 2

【청구항 1】

선별된 각국의 만화를 자국어로 번역하는 단계, 상기 번역된 만화의 내용을 원주민의 음성으로 더빙하는 단계, 상기와 같이 더빙이 완료된 만화를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외 사용자에게 설정된 사이트를 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 사용자가 번역된 만화들 중 하나와 언어를 선택하도록 선택 단계, 선택된 만화를 화면과 언어의 선택을 변화시키면서 반복하여 학습할 수 있는 단계를 포함하여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외국어 학습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해설 및 대응방법 2

- 청구범위는 청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물건에 관한 발명인지 방법에 관한 발명인지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는 것으로 청구항 제1항은 주요 구성단계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청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사이트'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물건에 관한 발명인지 방법에 관한 발명인지 알 수 없으므로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 사례에서 청구항의 말미를 '사용자에게 외국어 학습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제공방법'으로 기재함으로써 발명의 카테고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작성 사례 3

【청구항 15】

결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명령어들이 저장된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 매체로서, 상기 명령어들은 터치 스크린을 구비한 휴대용 전자장치에서 실행될 때, 상기 장치로 하여금 제1항 내지 제13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따른 방법을 수행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 매체

해설 및 대응방법 3

- 청구항 15는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 매체”를 청구하고 있으나, 발명의 설명에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의 예에는 하드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및 자기 테이프와 같은 자기 매체, CD-ROM, DVD와 같은 광기록 매체, 플롭티컬 디스크와 같은 자기-광 매체 및 롬(ROM), 램(RAM), 플래시 메모리 등과 같은 프로그램 명령을 저장하고 수행하도록 특별히 구성된 하드웨어 장치가 포함된다. 또한 상술한 매체는 프로그램 명령, 데이터 구조 등을 지정하는 신호를 전송하는 반송파를 포함하는 광 또는 금속선, 도파관 등의 전송 매체일 수도 있다”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반송파를 포함하는 광 또는 금속선, 도파관 등의 전송 매체”는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 매체(또는 기록 매체)’가 아니므로, 청구항15는 그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또한 상술한 매체는 프로그램 명령, 데이터 구조 등을 지정하는 신호를 전송하는 반송파를 포함하는 광 또는 금속선, 도파관 등의 전송 매체일 수도 있다.”를 삭제하여 기재불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4 각 단계의 행위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작성 사례 1****【청구항 1】**

선택적인 교제 맺기를 목적으로 통신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은 교제를 맺게 되기를 원하는 개인에 의해 수행되고, 표시 수단을 포함하는 휴대형 송수신기로부터 무선 신호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것을 포함하고, 상기 송수신기를 소유하는 사람의 개인별 특성에 대한 정보는 각 송수신기의 메모리에 사전 입력되며, 송수신기를 휴대하는 상기 개인들에게는 시각적으로 구별되는 마커(marker)가 제공되고, 교제 맺기를 신청하는 개인은 교제 맺기의 대상을 시각적으로 검출하고 상대방에게서 마커의 존재 유무를 판정하며, 상기 교제 맺기의 대상이 마커를 갖고 있는 경우, 상기 교제 맺기 신청자는 자신의 개인별 특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무선 신호를 송신하고, 그 다음에 상기 교제 맺기의 대상이 상기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교제 맺기 신청자의 개인별 특성에 대한 정보를 검토하며, 이 정보가 상기 교제 맺기의 대상의 요건과 매칭되는 경우, 상기 교제 맺기의 대상은 통신에 대한 동의를 표현하는 응답 신호를 송신하고, 상기 교제 맺기 신청자는 교제 맺기를 목적으로 통신하기 위해 교제 맺기의 대상에게 접근하는 선택적인 교제 맺기를 위한 통신 방법.

해설 및 대응방법 1

- 제1항 발명에서 행위의 주체는 ‘개인’, ‘교제 맺기의 대상’, ‘교제 맺기의 신청자’이고, 행위주체인 ‘개인이 교제 맺기의 대상을 시각적으로 검출하고, 상대방에게서 마커의 존재 유무를 판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제1항 발명에서 ‘개인이 교제 맺기의 대상을 시각적으로 검출하고 상대방에게서 마커의 존재 유무를 판정하는’ 구성은 인간의 행위(시각적 검출, 존재유무 판단)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제1항 발명에서 기재하고 있는 ‘교제 맺기의 신청자가 교제 맺기 신청자의 개인별 특

성에 대한 정보를 검토하며, 교제 맺기를 목적으로 통신하기 위해 교제 맺기의 대상에게 접근하는' 구성 또한, 인간의 행위(정보를 검토, 교제 맺기의 대상에게 접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제1항 발명은 '개인이 교제 맺기의 대상을 시각적으로 검출하고 상대방에게서 마커의 존재 유무를 판정' 및 '교제 맺기의 신청자가 교제 맺기 신청자의 개인별 특성에 대한 정보를 검토하고, 교제 맺기를 목적으로 통신하기 위해 교제 맺기의 대상에게 접근'하는 명시적인 기재가 인간의 행위를 이용하는 것이 명백하고, 발명의 행위 주체가 인간이 아닌 어떠한 구성(하드웨어 장치)에 의하여 구현되는 것인지 그 내용이 불명확하므로,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결론적으로, 제1항 발명은 발명의 행위 주체가 인간이 아닌 어떠한 구성(하드웨어 장치)에 의하여 구현되는 것인지 그 내용이 불명확하므로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컴퓨터·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청구항 전체를 고려하면 해당 발명이「사용 목적에 따른 특유의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을 실현한 것」이지만,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발명의 주체(하드웨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항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성 사례 2

【청구항 1】

인터넷 사용자가 통합마일리지 추천서버에 접속하여 신상정보를 입력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후, 상기 회원의 해당 마일리지 제공요청이 있으면 다수의 회원사의 마일리지 서버에서 통합 마일리지 추천서버로 마일리지를 전송받는 마일리지 제공단계, 통합 마일리지 추천서버에 적립된 마일리지를 추첨을 하는 추첨단계 및 통합 마일리지 추천서버에서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회원에게 적립하여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일리지 통합 및 그 추첨 방법.

해설 및 대응방법 2

- 청구항 제1항에는 마일리지 제공을 통한 마일리지 통합 및 추첨 방법을 청구하고 있으나, 그에 열거된 수순을 처리하기 위한 하드웨어 자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수순이 사람에 의한 처리인지, 장치적 처리인지 불명료할 뿐만 아니라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회원에게 무엇을 얼마만큼 적립하여 주는 것인지 등이 불명료하므로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마일리지 제공을 통한 마일리지 통합 및 추첨 방법의 각 단계의 행위 주체가 하드웨어 수단이 되도록 정정함으로써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5 지시의 대상이 불명확한 경우

작성 사례

【청구항 1】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선물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서비스 시스템에 있어서, 범용 ID 등록 요청에 대하여, 고객별로 범용 ID, 개인 정보 및 정보공개설정정보를 저장하는 통합 ID 서버, 통합 ID 서버와 연동하여 범용 ID별로 구매이력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선물추천 요청 메시지를 단말기로부터 수신하면, 통합 ID 서버와 연동하여 상기 선물대상자 정보에 대한 해당 구매이력 정보를 추출하고, 추출된 구매이력 정보를 이용하여, 선물대상자 정보에 대한 상기 구매패턴 정보 및 선물추천 정보를 생성하여 단말기로 제공하는 통계분석 서버 및 단말기, 통합 ID 서버 및 통계분석 서버 간의 통신을 위한 유무선 통신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물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서비스 시스템.

해설 및 대응방법

- 청구항 제1항은 그 기재에 있어서, '~통합 ID 서버와 연동하여 범용 ID별로 구매이력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선물추천 요청 메시지를

단말기로부터 수신하면, 통합 ID 서버와 연동하여 선물대상자 정보에 대한 해당 구매이력 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구매이력 정보를 이용하여, 선물대상자 정보에 대한 구매패턴 정보 및 선물추천 정보를 생성하여 단말기로 제공하는 통계분석 서버~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상기 선물대상자 정보', '상기 구매패턴 정보'의 지시하는 대상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발명의 구성이 불명확합니다.

- 삭제하더라도 발명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상기'라는 기재를 삭제함으로써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 청구항에 "상기 000"라고 기재되어 있고 해당 청구항의 선행부분이나 인용되는 청구항에 '000'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을 참작하여 "상기"를 제외하고 해석하면 발명이 명확하게 파악되는 경우는 불명확한 기재로 보지 않습니다.
- 지시하는 문언과 그 지시대상의 문언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도 그 의미상 서로 대응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어서 지시대상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는 불명확한 기재로 보지 않습니다.

6 구성요소 간의 시계열적인 처리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작성 사례

【청구항 1】

자동화된 처리 기술과 관련된 실험을 관리하기 위한 컴퓨터 구현 (computer-implemented) 방법에 있어서, 공정 제어 컴퓨터가, 자동화된 생산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는 기본 공정으로부터의 적어도 일부 편차 (deviation)를 포함하는 실험 명령(order)을 유저(user)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상기 공정 제어 컴퓨터가, 상기 실험 명령을 검사한 적어도 한 명의 유저로부터 실험 명령의 허락(approval)을 획득하는 단계, 상기 공정 제어 컴퓨터가, 상기 실험 명령의 적어도 일부분을 상기 자동화된 생산 환경의 구성요소에 의해 실행가능한 포맷의 처리 데이터로 변환하는 단계, 상기 공정 제어 컴퓨터가, 상기 처리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하는 단계 및 상기 자동화된 생산 환경의 구성요소가, 상기 처리 데이터에 따라서, 상기 자동화된 생산 환경의 구성요소에 의해 실행되는 상기 기본 공정의 적어도 일부와 연계하여 상기 실험 명령을 실행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공정 제어 컴퓨터가 상기 실험 명령에 문서들을 첨부하는 단계 및 상기 공정 제어 컴퓨터가 상기 실험 명령에 첨부된 문서나 또는 상기 실험 명령의 상태 변화에 응답하여 상기 실험 명령의 상태 변화를 표시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

해설 및 대응방법

- 청구항 제2항에는 '제1항에 있어서, ~ 공정 제어 컴퓨터가 상기 실험 명령에 문서들을 첨부하는 단계, 및 상기 공정 제어 컴퓨터가 상기 실험 명령에 첨부된 문서나 또는 상기 실험 명령의 상태 변화에 응답하여 상기 실험 명령의 상태 변화를 표시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나, 각 단계가 청구항 제1항의 어느 단계 이전 또는 이후에 처리되는 것인지 시계열적인 연결 관계가 불명확하므로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청구항 제2항의 단계가 청구항 제1항의 어느 단계 이전 또는 이후에 처리되는 것인지 명확히 기재하여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7 발명이 적절한 수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작성 사례

【청구항 1】

기업 회계 분석 평가 방법에 있어서, 해당 기업의 회계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 확보 단계, 데이터 확보 단계에서 수집된 회계 데이터를 참조

하여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회계 투명성 항목에 의거하여 각 회계 투명성 항목별로 점수를 산출하는 회계 투명성 항목 평가 단계 및 회계 투명성 항목 평가 수단에 의하여 산출된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 평가 점수를 산출하고 산출된 종합 평가 점수에 의하여 해당 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부실 징후에 대한 평가 등급을 도출하는 종합 평가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업 회계 분석 평가 방법.

【청구항 2】

기업 회계 분석 평가를 수행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해당 기업의 회계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 확보 수단, 데이터 확보 수단이 수집한 회계 데이터를 참조하여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회계 투명성 항목에 의거하여 각 회계 투명성 항목별로 점수를 산출하는 회계 투명성 항목 평가 수단 및 회계 투명성 항목 평가 수단에 의하여 산출된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 평가 점수를 산출하고 산출된 종합 평가 점수에 의하여 해당 기업의 평가 등급을 도출하는 종합 평가 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업 회계 분석 평가 시스템.

【청구항 3】

청구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종합 평가 점수는 해당 기업의 2개 사업 연도의 재무제표를 기본 데이터로 확보하여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업 회계 분석 평가 방법 및 시스템.

해설 및 대응방법

- 청구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청구항에 카테고리가 다른 2 이상의 발명이 기재된 경우, 청구하는 물건이 2 이상인 경우, 동일한 청구항을 중복하여 기재하는 경우, 청구항 내 다수의 청구항을 중복하여 인용하는 경우 등은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청구항 제3항은 기업회계 분석·평가 방법 및 그 시스템을 청구하고 있으나, 하나의 청구항에 시스템과 방법을 함께 기재하고 있어 청구

범위 기재방법에 위배 됩니다.

-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청구항 제1항을 인용하는 방법을 청구항 제3항에 기재하고 청구항 제2항을 인용하는 시스템 청구항을 청구항 제4항에 별개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작성 사례

【청구항 9】

제7항 및 제8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는 상기 해당 쇼핑물의 이전등록 상품정보를 자동으로 수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관리 방법.

해설 및 대응방법

- 청구항 제9항은 '제7항 및 제8항에 있어서, ~ 상품관리 방법'을 청구하고 있으나,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범위 기재방법에 위배됩니다.
- 청구항 제9항을 '제7항 또는 제8항에 있어서'로 기재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특허결정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명백히 잘못된 경우」란 통상의 기술자가 그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고, 명세서 등의 기재, 의견서 및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출원인의 당초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어서 해당 보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지 않다는 거절이유에 대해 출원인이 보정하지 않을 경우 심사관은 직권보정에 의해 택일적 기재로 직권보정이 가능합니다.

9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경우

작성 사례

【청구항 9】

제7항 또는 제8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는 ~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관리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c)단계는 ~ 단계, ~ 단계, ~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관리 방법.

【청구항 11】

‘제9항 또는 제10항에 있어서, 각 단계의 해당 쇼핑물에 로그인하는 방법은 ~ 자동입력하여 로그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관리 방법.

해설 및 대응방법

-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다른 청구항을 인용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하나의 청구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다수의 다른 청구항을 참조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청구항 제11항은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위배됩니다.
- 청구항 제11항이 청구항 제9항만을 인용하도록 하거나 청구항 제10항만을 인용하도록 기재하여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 진보성

특허법 제29조

-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 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판단기준

- 진보성은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출원 시 기술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른바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을 인용발명에 근거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라는 논리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①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 및 인용발명(하나 또는 복수)을 인정한 후, ②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과 「논리 부여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인용발명」을 대비해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과 인용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의 일치점 및 차이점을 명확히 한 다음, ③ 이 인용발명과 다른 인용발명의 내용 및 기술 상식으로부터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에 대해 진보성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 논리의 구축을 시도하여 판단합니다.
- 논리는 여러 가지의 관점에서 부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이 인용발명으로부터 최적의 구성의 선택, 설계 변경, 단순히 모아 놓은 것 등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용발명의 내용에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 그 결과 논리를 부여할 수 있는 경우는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고, 논리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는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팁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분야에 이용되고 있는 방법, 수단 등을 조합하거나 특정 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것이므로, 조합과 적용에 기술적인 곤란성이 없고 이로부터의 효과도 현저하지 않는 한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팁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의미

BM 특허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그 특정 분야에 관한 기술 상식과 일반 상식(현저한 사실을 포함)’ 및 ‘BM 관련 기술 분야의 기술 상식(예를 들면 시스템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연구 및 개발을 위한 통상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설계 변경을 포함한 통상의 창작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그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특정 분야와 BM 관련 기술 분야)의 출원 시 기술수준에 있는 것 모두를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BM 발명에서의 구체적인 판단방법

- 어느 특정 분야의 BM 관련 발명의 단계 또는 수단을 다른 특정 분야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합니다. 이는 특정 분야에 관한 BM 관련 발명에 사용되고 있는 단계 또는 수단은 적용 분야에 관계없이 기능 또는 작용이 공통인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 ‘의료 정보 검색 시스템’의 인용발명이 존재하는 경우 그것과 기능 또는 작용이 공통인 수단을 ‘상품 정보 검색 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

-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서 널리 알려지고 사용되는 것을 부가하거나 시스템의 구성 요소의 일부를 균등 수단으로 치환하고자 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합니다.

예) 시스템의 입력 수단으로서 키보드 외에 숫자 코드의 입력을 위해 화면상의 항목 표시를 마우스로 선택해 입력하는 수단과 바코드로 입력하는 수단을 부가하는 경우

- **하드웨어인 회로로 실행하고 있는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실현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합니다.

예) 하드웨어인 코드 비교 회로로 실행하고 있는 코드 비교를 소프트웨어로 실행하는 경우

- **인간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시스템화하여 컴퓨터에 의해 실현하는 것은** 통상의 시스템 분석 수법 및 시스템 설계 수법을 이용한 일상적 작업으로 가능한 정도의 것이면 해당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합니다.

예) 전화나 FAX로 주문받던 것을 단순히 인터넷 홈페이지로 주문받도록 시스템화하거나 잡지에 독자의 매매 신청 정보를 게재하던 것(이른바 ‘팝니다-삽니다’ 코너를 게재한 것)을 단순히 인터넷 홈페이지에 독자의 매매 신청 정보를 게재하도록 시스템화하는 경우

- **널리 알려진 기술을 컴퓨터 가상공간에서 재현하는 것은** 통상의 시스템 분석 수법 및 시스템 설계수법을 이용한 일상적 작업으로 가능한 정도의 것이라면 해당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합니다.

예) 테니스 게임 장치에서, 단순히 하드 코트에서 바운드된 테니스 볼의 속도를 점토 코트에서 바운드된 테니스 볼의 속도보다 빠르게 설정하거나 레이싱 게임 장치에서 단순히 노면의 상태에 따라 스핀이 일어나는 확률을 변화시키는 경우

-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과 인용발명의 차이점이 일반인에게 이미 알려진 사실 또는 관습에 근거할 경우, 그 차이점이 인용발명, 기술 상식, 일반 상식 등을 고려해 본래 해당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절히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고 조합에 기술적 저해 요인이 없을 때는, 그 차이점은 해당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필요에 따라 정하는 설계상의 변경에 지나지 않아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합니다.**

예) 표시 수단을 보유한 전자상거래 장치에서 상품을 구입한 후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수단을 부가하거나 매매 계약이 성립했을 때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명하는 것은 일반 상식이면서 전자상거래 장치에서 메시지를 출력하는 기능을 부가하는 것은 주지·관용 기술 수단의 부가에 해당

「참조 판례」

- 진보성 판단을 위한 발명의 기술 내용을 확정함에 있어서도 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야 할 뿐,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보완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03후496).
-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 비교대상발명과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청구범위이며, 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그 기재가 오기임이 발명의 설명의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확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등록의 유·무효 판단을 위한 특허발명의 요지를 인정함에 있어서 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야 할 뿐, 발명의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보완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후2515).
- 어떤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기술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의 출원 당시의 선행공지발명으로부터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고,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후138).

■ BM 발명에서의 진보성 위반 사례 및 대응

1 인간이 수행하는 일반적인 업무의 시스템화

작성 사례

【발명의 명칭】

전표 승인 시스템

【청구항 1】

전표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제1입력부, 위 제1입력부에 입력된 데이터에 근거해 해당 입력된 전표를 표시 및 출력하는 제1출력부, 제1통신 제어부 및 전체를 제어하는 제1제어부를 가지는 전표 입력 작성 장치,

전표를 표시하는 제2출력부, 승인 데이터의 제2입력부, 제2통신 제어부 및 전체를 제어하는 제2제어부를 가지는 전표 승인 장치로 이루어진 전표 승인 시스템에서, 위 제1제어부는 위 제1입력부로부터 전표 각 항목의 데이터를 입수하고 입수된 전표의 각 항목을 체크해 승인이 필요한 전표 데이터를 위 제1통신 제어부로부터 위 전표 승인 장치에 전송하고, 위 전표 승인 장치로부터 전송되어 온 승인된 전표 데이터를 위 제1통신 제어부를 통해 수신해 위 제1출력부로 출력하고, 위 제2제어부는 위 전표 입력 작성 장치로부터 전송되어 온 승인이 필요한 전표 데이터를 위 제2통신 제어부로부터 수신하고 그 수신한 전표 데이터에 근거해 해당 전표를 표시 출력하고 승인할지 여부에 대한 승인 데이터를 위 제2입력부에 입력하고 그 승인 데이터를 포함하는 전표 데이터를 위 제2통신 제어부로부터 위 전표 입력 작성 장치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전표 승인 시스템.

【발명의 설명】

이 발명은 은행 등의 창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표 작성 업무에 관한 것이다.

은행의 창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표 작성에서 종래는 상사의 승인이 필요한 고액의 거래는 상사의 승인을 받아 전표를 작성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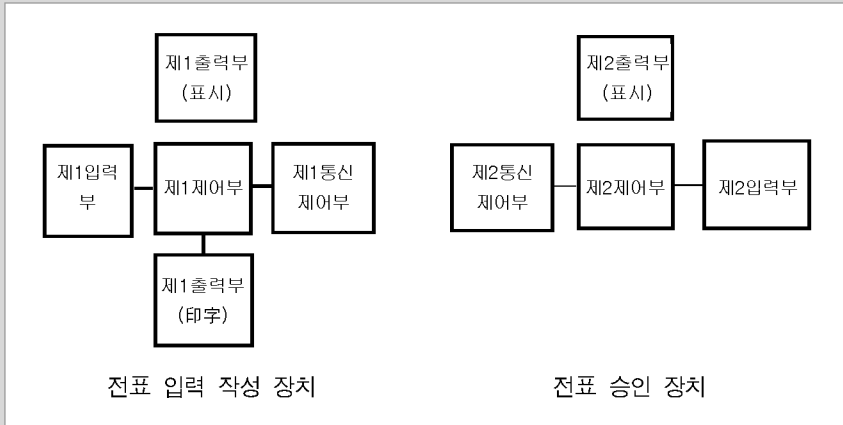
상사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우고 상사가 있는 곳에 전표를 배달하는 작업이 필요해서 그 사이에 일을 할 수 없었다. 특히 상사가 멀리 있는 경우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 많았다.

본 발명은 일부러 상사가 있는 곳에 가지 않아도 승인받을 수 있는 컴퓨터를 이용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표시 화면에 결재해야 할 전표가 수신된 것을 표시하기 때문에 일일이 조작하지 않고도 수신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ID(개인 식별) 카드를 이용해 승인 데이터를 입력하기 때문에 승인 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승인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전표 승인을 얻기 위해 일을 중단하지 않고 능률적인 전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종래의 기술에 비해 현저

한 효과를 발휘한다.

【그림 1】 전표 승인 시스템의 구성도



【인용발명 및 주지기술 등】

전표 작성 데이터를 전표에 기입하고 전표를 작성하는 것, 승인이 필요한 것을 승인받기 위해 승인자에게 건네주는 것, 전표를 승인자로부터 수취, 전표 작성을 종료하는 것은 전표 작성자가 통상의 사무 처리로서 수행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전표 작성자로부터 전표를 수취하는 것, 전표 작성자로부터 수취한 전표를 조사해 승인을 부여하는 것, 승인한 전표를 작성자에게 건네주는 것은 승인자가 통상의 사무 처리로서 수행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i) 각 개인마다 입력부, 출력부를 가지는 컴퓨터를 배치하고 그 컴퓨터에 통신 제어부를 매개로 통신 회선으로 접속해 필요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것, ii) 컴퓨터로 데이터를 편집하고 필요한 서류의 포맷 형식에 표시 또는 인쇄하는 것, iii) 수신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 내용을 화면에 표시하는 것, iv) ID(개인 식별) 카드로 자신의 ID 코드를 입력하고 처리하는 것은 관련 기술 분야의 상식으로 볼 수 있다.

한편, v) 입력된 데이터를 체크하여 송신이 필요한 것만을 송신하는 것은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기술로 가정한다.

해설 및 대응방법

- 각 개인마다 입력부, 출력부를 가지는 컴퓨터를 배치하고 그 컴퓨터에 통신 제어부를 매개로 통신 회선으로 접속해 필요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관련 분야의 기술상식으로부터 '전표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제1입력부, 위 제1입력부에 입력된 데이터에 근거해 해당 입력된 전표를 표시 및 출력하는 제1출력부, 제1통신 제어부 및 전체를 제어하는 제1제어부를 가지는 전표 입력 작성 장치, 전표를 표시하는 제2출력부, 승인 데이터의 제2입력부, 제2통신 제어부 및 전체를 제어하는 제2제어부를 가지는 전표 승인 장치로 이루어진 전표 승인 시스템'으로서 하드웨어를 선택해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은 해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일상적인 시스템 설계 수법을 이용해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불과합니다.
- 각 제어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위 제1입력부로부터 전표 각 항목의 데이터를 입수하고 입수된 전표의 각 항목을 체크해 승인이 필요한 전표 데이터를 제1통신 제어부로부터 전표 승인 장치에 전송하고, 위 전표 승인 장치로부터 전송되어 온 승인된 전표 데이터를 위 제1통신 제어부를 통해 수신하고 제1출력부로 출력하는 것' 및 '위 전표 입력 작성 장치로부터 전송되어 온 승인이 필요한 전표 데이터를 제2통신 제어부로부터 수신하고, 그 수신한 전표 데이터에 근거해 해당 전표를 표시 출력하고, 승인할지 여부에 대한 승인 데이터를 위 제2입력부에 입력하고, 그 승인 데이터를 포함하는 전표 데이터를 위 제2통신 제어부로부터 위 전표 입력 작성 장치에 전송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에 의해 실현되는 내용이지만 이들은 전표의 사무 처리 단계에 위 관련 분야의 기술상식 및 출원 전 간행물에 기재된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의해 해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곧바로 도출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청구항 제1항과 같은 전표 승인 시스템이라는 것은 시스템 분석의 결과에 관련 분야의 기술상식 및 출원 전 간행물에 기재된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의해 해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2 | 공지의 사실 또는 관습에 의한 설계상의 변경

작성 사례

【발명의 명칭】

포인트 서비스 방법

【청구항 1】

인터넷상의 상점에서 상품을 구입한 금액에 따라 서비스 포인트를 주는 서비스 방법에서, 증여하는 서비스 포인트의 양과 증여처의 이름이 인터넷을 통해 서버에 입력되는 단계, 서버가 증여처의 이름에 근거해 고객 리스트 기억수단에 기억된 증여처의 전자메일 주소를 취득하는 단계, 서버가 위 증여한 서비스 포인트의 양을 고객 리스트 기억 수단에 기억된 증여처의 서비스 포인트에 가산하는 단계 및 서버가 서비스 포인트가 증여된 것을 증여처의 전자메일 주소를 이용해 전자메일로 증여처에 통지하는 단계로 구성된 포인트 서비스 방법.

【발명의 설명】

이 발명은 인터넷상의 상점에서 이용되는 포인트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부터 고객의 구입 금액에 따라 (예를 들면 일정 비율의) 서비스 포인트를 주고 누적된 서비스 포인트의 양에 따라 상품, 상품권, 금전 등으로 보상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

종래의 포인트 서비스 방법은 고객 관리의 문제 때문에 인터넷상의 거래에서는 실현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동일한 문제 때문에 서비스 포인트는 고객 본인밖에 사용할 수 없고 예를 들어 가족이라도 서비스 포인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었다.

이 발명은 인터넷상의 거래에서 포인트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인터넷상의 상점이 보유한 서버에 고객 리스트(적어도 고객 이름, 누적 서비스 포인트, 고객의 전자메일 주소로 이루어짐)를 기억한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는 것에 의해 각 고객의 서비스 포인트를 관리하고 고객이 인터넷상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것에 응해 서비스 포인트를 가산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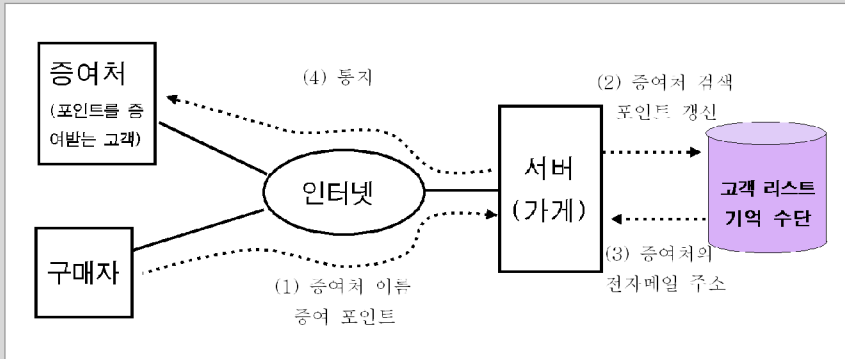
또한, 고객이 다른 고객에게 서비스 포인트를 증여하고 싶은 경우는 전자메일에 증여처의 이름과 증여 포인트를 위 서버에 통지하는 것에 의해 서버가 증여처의 이름으로부터 고객 리스트 데이터 베이스를 검색해 증여된 서비스 포인트를 가산함과 동시에 전자메일 주소를 찾아서 자동적으로 증여처에 서비스 포인트가 증여된 것을 통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발명은 아래와 같이 변형할 수 있다.

첫째, 청구항 제2항에 관련된 발명과 같이 서비스 포인트가 상품의 대가 뿐만 아니라 취급 수수료, 소비세 등도 포함하는 금액으로부터 산출되도록 해도 좋다. 둘째, 청구항 제3항에 관련된 발명과 같이 고객의 구입 횟수를 늘리기 위해 일정 비율로(예를 들면 20회에 1회) 부여되는 서비스 포인트를 10배로 하도록 해도 좋다. 그 때문에 예를 들면 고객 리스트 기억 수단에서 지금까지 몇 회 구입했는지 기억하는 필드를 둔다. 셋째, 청구항 제4항에 관련된 발명과 같이 서버에 누적 서비스 포인트와 해당 누적 서비스 포인트와 교환 가능한 상품을 대응시킨 상품 리스트 기억 수단을 마련하고 상품의 구입에 의해 누적 서비스 포인트가 증가한 때 서버가 누적 서비스 포인트에 따라 교환 가능한 상품을 위 상품 리스트 기억 수단으로부터 검색해 자동적으로 상품 리스트를 작성해 고객에게 전자메일로 송부하는 것에 의해 서비스를 더욱 충실하게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위 상품 리스트 기억 수단은 그림 4와 같이 상품명과 교환 포인트가 대응되어 기억되도록 구성된다. 서버는 어떤 고객의 누계 서비스 포인트가 증가하면 해당 누계 서비스 포인트 이하의 교환 포인트를 갖는 상품명을 자동적으로 상품 리스트 기억 수단으로부터 검색하고 적당한 포맷으로 변환해 상품 리스트 파일을 작성한다. 해당 상품 리스트 파일은 해당 고객에 대해 전자메일의 첨부 파일로서 송부된다. 이와 같은 기능을 서버에 부가하는 것에 의해 다른 고객에게 서비스 포인트를 증여한 경우도 다른 고객의 누적 서비스 포인트가 증가하기 때문에 다른 고객에게도 상품 리스트 파일이 송부된다.

이 포인트 서비스 방법에 의해 인터넷상의 거래에서 고객에 대한 포인트 서비스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서비스 포인트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 포인트의 사용 가치가

커졌다. 더구나 20회에 1회의 비율로 서비스를 10배로 부여하는 것에 의해 고객의 구매 의욕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고객의 입장에서 인터넷 상에서의 상품구입의 즐거움이 커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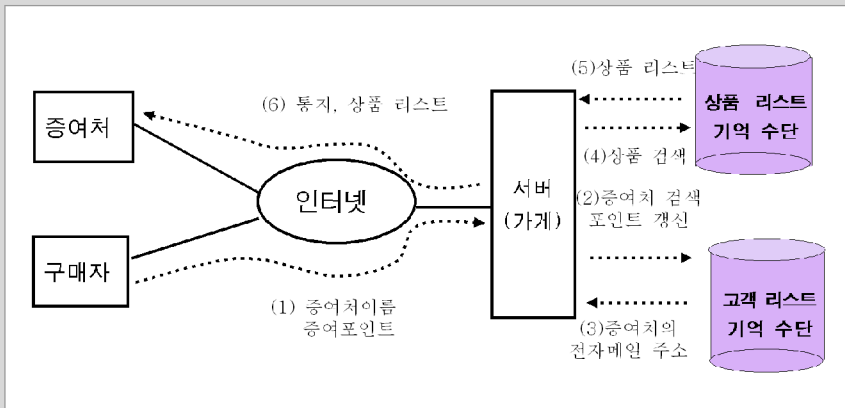
【그림 1】



【그림 2】

고객명	승인정보	전자메일 주소	포인트	구입 횟수
A	××△	A@efg.com	100	5
B	××□	B@hij.com	200	10
C	××○	C@klm.com	500	15

【그림 3】



【그림 4】

상품명	교환 포인트
상품 1	30
상품 2	120
상품 3	210
상품 4	300

【인용발명 및 주지기술 등】

인용발명 1은 증여하는 포인트의 양과 증여처의 이름이 지정된 것에 따라, 증여처의 이름에 근거해 고객 리스트에 기재된 증여처의 주소를 취득하는 단계, 위 포인트의 양을 고객 리스트에 기재된 증여처의 포인트에 가산하는 단계 및 서비스 포인트가 증여된 것을 통지하는 통지서를 증여처의 주소로 우송하는 단계로 구성된 상점에서 상품을 구입한 금액에 따라 포인트를 주는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인용발명 2는 서비스 포인트가 세금, 수수료 등을 포함한 구입 금액에 의해 산출되는 포인트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이다. 다만, 20회의 구입에 대해 1회의 비율로 포인트가 10배로 되는 것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단골 고객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하는 것, 예를 들면 덤을 주거나 할인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로서 통상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데이터베이스로 정보를 일괄 관리하고 필요한 정보를 검색, 추출하는 것, 네트워크를 매개로 단말기(서버를 포함) 사이에서 통신하는 것, 전자 메일을 이용해 의사 소통을 도모하는 것, 필요한 정보를 전자메일의 첨부 파일로서 송부하는 것 등은 컴퓨터, 인터넷에 관한 일반적인 기술지식에 불과하다.

해설 및 대응방법

- 청구항 제1항과 인용발명 1은 증여하는 포인트의 양과 증여처의 이름을 지정함에 따라 증여처의 이름에 근거해 고객 리스트로부터 증여처에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는 단계, 위 포인트의 양을 고객 리스트에 기재된 증여처의 포인트에 가산하는 단계, 서비스 포인트가 증여된 것을 증여처에 통지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서비스 방법이라는 점

에서 일치합니다.

- 다만, 청구항 제1항에서는 상점이 인터넷상에 있고 서버, 전자메일, 고객 리스트 기억 수단 등을 이용해 위 일치점에 관련된 포인트 서비스 방법을 시스템화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차이점에 대해 검토해 보면, 인용발명 1의 포인트 서비스 방법을 인터넷상에서 시스템화할 때 컴퓨터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상식을 적용해 고객 리스트를 기억·관리하는 수단으로서 고객 리스트 기억 수단으로 하는 것, 인터넷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상식을 적용해 고객과 상점이 인터넷을 매개로 통신을 하고 점원이 하는 처리를 상점이 보유한 단말기(즉 서버)에 의해 자동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 및 서비스 포인트 증여의 통지를 통지서에 의한 우송을 대신해 전자메일에 의한 통지로 하는 것은 해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일상적인 시스템 설계 수법을 이용해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청구항 제1항은 인용발명 1에 관련된 사람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컴퓨터 기술의 기술수준을 이용해 통상의 시스템 개발 수법에 의해 시스템화 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3 인용발명들과 주지관용의 결합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

작성 사례⁷⁾

【발명의 명칭】

네트워크를 통한 부동산 권리매매의 매물정보 등록 및 인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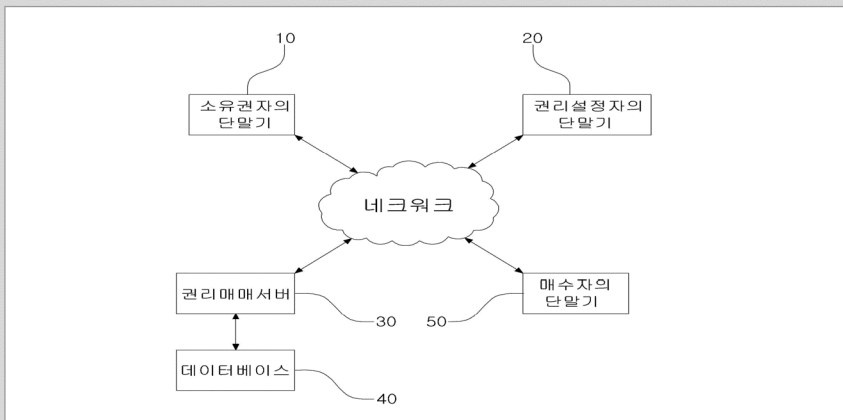
【청구항 1】

부동산의 소유권에 설정된 저당권, 담보가등기, 소유권이전가등기, 전세권 중 선택된 어느 하나로 이루어진 매매 가능 권리를 매매하기 위해 본인 인증 후 매물정보를 권리매매서버에 등록하고 권리매매서버에서 매물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부동산 권리

7) 2016허6302, 2017후974

매매의 매물정보 등록 및 인증방법에 있어서(이하 '전제부'), 부동산 소유권자의 단말기가 네트워크를 통해 권리매매서버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절차에 따라 본인 인증 후 매매 가능 권리의 매물정보를 등록하되 매매 가능 권리 중 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를 매물로 등록하는 경우 권리매매서버에서 기존에 설정된 약정이율과 매도 시 희망하는 매도이율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여 이율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매물등록단계(이하 '구성 1')와, 상기 매물등록단계를 통해 매물정보가 등록되면 권리매매서버는 소유권자의 단말기로부터 등록되는 매물정보를 매매 가능 권리의 상대방인 권리설정자의 단말기에 SMS문자나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매물등록번호를 함께 전송하여 매물정보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인증을 요청하는 상대방 확인 인증 요청단계(이하 '구성 2')와, 상기 상대방 확인 인증 요청단계를 통해 권리설정자의 단말기가 네트워크를 통해 권리매매서버에 접속 시 권리매매서버로부터 전송받은 매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회원 가입 및 로그인 없이 해당 매물정보가 검색되고 매물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 요청받게 되며 해당 매물정보가 맞으면 본인 인증절차를 통해 상대방 본인 인증하여 확인 인증하는 단계(이하 '구성 3')와, 상기 확인 인증하는 단계를 통해 등록된 매물정보의 진위 여부가 확인 인증되면 권리매매서버는 해당 매물정보를 확인 인증 매물로 분류하고 진위 여부가 확인 인증되지 않은 미확인 매물과 구분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매물정보를 등록하는 단계를 포함(이하 '구성 4')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통한 부동산 권리매매의 매물정보 등록 및 인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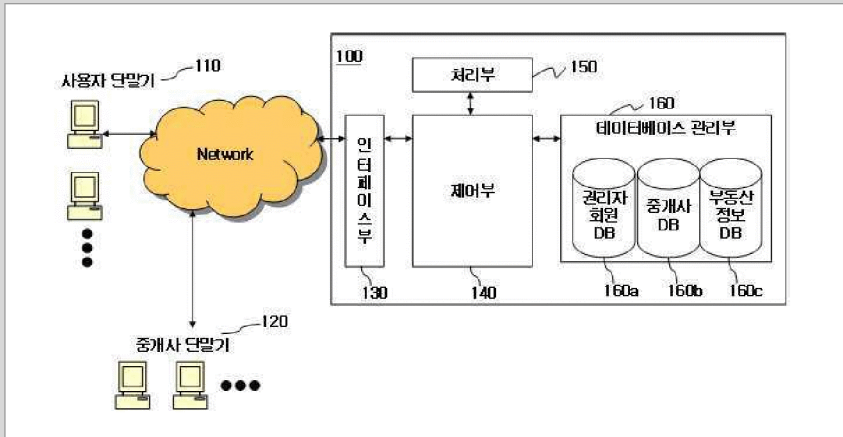
【도면 1】



【인용발명 및 주지기술 등】

인용발명 1은 부동산 권리자로부터 거래를 의뢰 받은 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정보 제공시스템(100)에 온라인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S210, 210a), 로그인하며(S220), 거래 대상 부동산의 권리자와 상담하고(S230), 부동산의 구체적인 정보를 입력하며(S240), 중개사는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고(S250), 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정보 제공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 대상 부동산 정보의 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권리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고, 권리자에게 SMS 메시지 또는 우편 연락을 함으로써, 권리자의 허락 없이 부동산 정보가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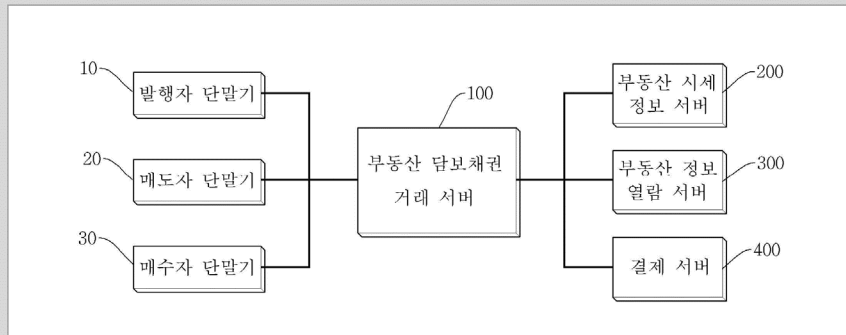
【도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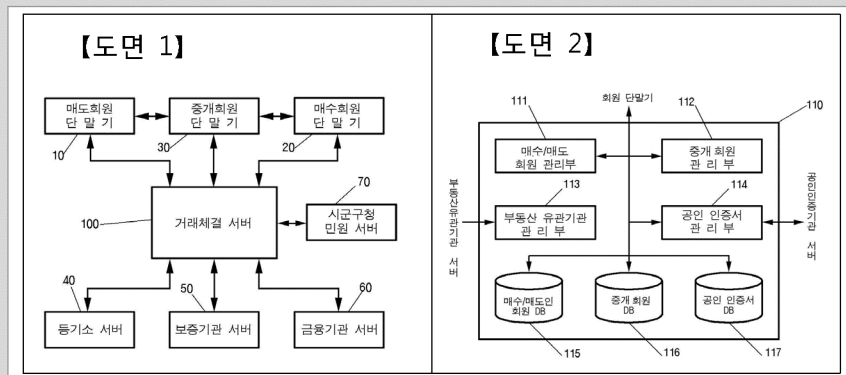
인용발명 2는 시세 가격으로 책정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인터넷 상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담보채권 거래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부동산 담보채권 거래 서버(100)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채권 상품화하고 인터넷을 통해 이들 채권을 거래하도록 한다. 부동산 담보채권은 거래 가능한 차입증서이고, 채권 상품의 조건정보는 채권의 금액, 이율, 만기에 대한 데이터이며, 부동산 담보채권 거래 서버(100)는 담보채권 정보를 입력 받아 DB(121, 131)에 저장 및 발행·관리·처리하며, 담보채권 거래에서는 담보채권

조건(금액, 이율, 기간)에 대해 거래 이전에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식별 번호 [0040]~[0051])

【도면 1】



인용발명 3은 온라인으로 부동산의 매매계약부터 등기 이전까지 모든 거래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동산 전자거래 시스템 및 부동산 전자거래 방법에 관한 것이다. 매물정보의 취득, 계약, 등기 대출 등의 다원화된 부동산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 전자거래 시스템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자거래 시스템의 거래체결 서버(100)는 회원관리모듈(110), 매물정보 검색모듈(120)을 포함한다. 회원관리모듈(110)은 매수인·매도인·중개인들이 서버에 접속하거나 계약 체결 시에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를 관리한다. 매물정보 검색모듈(120)은 매물정보를 등록하고, 등기부등본 등과 같은 매물 권리정보도 저장하여 매물의 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해설 및 대응방법

- 청구항 제1항의 전제부와 인용발명 1의 대응 구성은 모두 매매 가능 권리(거래 대상 부동산)를 매매(거래)하기 위해 본인 인증(회원 가입 및 로그인) 후 매물정보(거래 대상 부동산 정보)를 권리매매서버(부동산 거래정보 제공시스템)에 등록(입력)하고, 매물정보(거래 대상 부동산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진성 검증)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 청구항 제1항의 구성 1과 인용발명 1의 대응 구성은 모두 부동산 소유권자 단말기(중개사 단말기)가 네트워크(온라인)를 통해 권리매매서버(부동산 거래정보 제공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회원 가입 및 로그인) 후 매매 가능 권리(전세 포함 거래 대상 부동산)의 매물정보(전세 포함 거래 대상 부동산 정보)를 등록한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 청구항 제1항의 구성 2, 3과 인용발명 1의 각 대응 구성은 모두 매물정보(거래 대상 부동산 정보)를 매매 가능 권리(거래 대상 부동산)의 상대방인 권리설정자(권리자)의 단말기(사용자 단말기)에 SMS 문자나 이메일로 전송(전화를 걸거나 SMS 메시지 또는 우편 연락)하여 매물정보(거래 대상 부동산 정보)의 진위 여부를 요청하여 인증(진성 검증)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 청구항 제1항의 구성 4와 인용발명 1의 대응 구성은 모두 매물정보(거래 대상 부동산 정보)의 진위 여부(진성 검증)에 따라 확인 인증 매물과 미확인 매물(진성 검증하는 과정에 발생한 데이터와 등기부등본의 기재 사항을 포함하는 데이터)로 구분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저장)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 다만 청구항 제1항의 전제부 및 구성 3과 관련하여, 인용발명 1에는 매매 대상이 전세 등을 포함한 부동산 권리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저당권, 담보가등기, 소유권이전가등기, 전세권 중 하나인 매매 가능 권리'라는 구체적인 한정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소유권이전가등기, 전세권 등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매매 가능한 권리임은 자명한 사항이고, 청구항 청구항 제1항의 매매 대상은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매매 가능한 권리를 저당권, 담보가등기, 소유권이전가등기, 전세권 중 하나의 구체적인 권리로 한정하는 것에 불과한데다가, 특히 그 중 전세권이 인용발명 1의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전세와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항 제1항의 위와 같은 매매 대상 권리의 한정에 어떠한 기술적 의의가 있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은 종래 오프라인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담보가등기, 소유권이전가등기, 전세권에 대한 매매를 단지 온라인에서 가능하도록 전용한 것뿐인데, 이처럼 오프라인에서의 매매를 온라인으로 전용할 때 그 매매 대상으로 인용발명 1의 부동산과 관련된 전세를 매매 가능한 전세권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는 단순 설계변경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 또한 청구항 제1항의 구성 2, 3과 관련하여, 인용발명 1에는 중개사, 콜센터, ARS 센터를 통해 권리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거래 대상 부동산에 대한 진성을 검증하는 것만 기재되어 있을 뿐, '확인 및 인증단계에서 서버를 이용하여 매물등록번호를 전송하여 입력받고, 회원 가입 및 로그인 없이 매물정보가 검색될 수 있으며, 상대방 본인 인증으로 인증될 수 있는 것'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인용발명 3은 매도자가 거래체결서버를 통하여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정보를 수신하고, 서버에 접속하여 매물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인증하는 절차에 관한 것이고, 여기서 매도자는 청구항 1의 권리설정자와 마찬가지로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자이므로, 인용발명 3의 매도자를 구성 2, 3의 권리설정자로 변경하는 데에 어떠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종래 전자상거래에서 서버가 구매자에게 예약번호 혹은 인증번호를 SMS 또는 이메일로 보내고, 이를 통해 구매자가 예약번호 혹은 인증번호를 서버에 입력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정보 등을 검색하고,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쳐 그 물건 또는 정보 등을 구매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널리 사용되었던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청구항 제1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 1에 인용발명 3 또는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구성의 곤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인용발명 1, 3과 사이에 목적의 특이성이나 효과의 현저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인용발명 1, 3과 주지관용기술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 주지관용기술을 다른 선행기술 문헌과 결합하는 것은 통상 용이하다고 본다. 다만, 결합되는 기술적 특징이 당해 기술분야에서 주지관용기술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기술적 특징과의 유기적인 결합에 의해 더 나은 효과를 주는 경우에는 그 결합은 자명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2005 후1530).

4 원결정의 이유와 의견제출통지의 거절이유가 주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작성 사례⁸⁾

【발명의 명칭】

온라인 경매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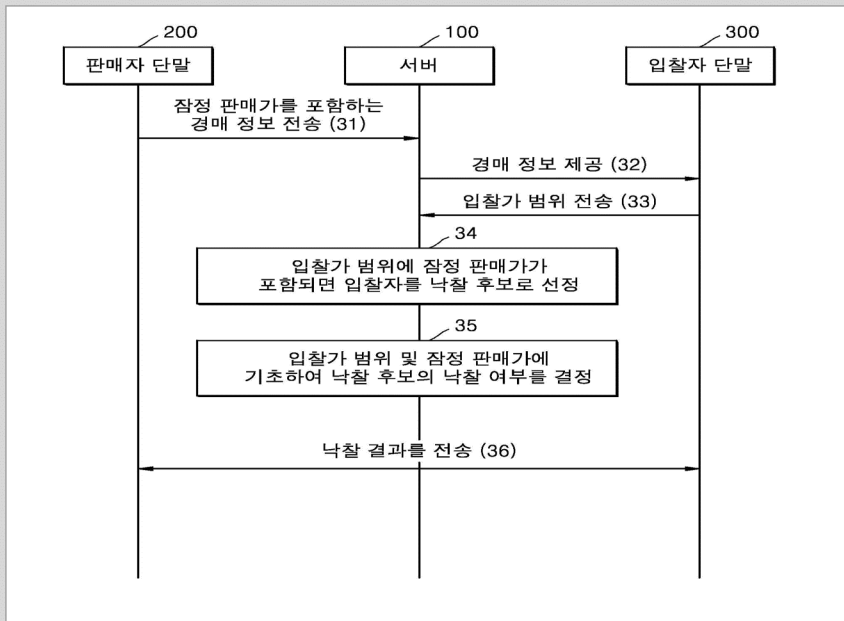
【청구항 1】

경매 생성부에 의해, 판매자의 단말로부터 잠정 판매가를 수신하고 경매를 생성하는 단계, 입찰 처리부에 의해, 입찰자의 단말로부터 상기 경매에 대한 입찰가 범위를 수신하는 단계, 낙찰 처리부에 의해, 상기 입찰가 범위에 상기 잠정 판매가가 포함되면, 상기 입찰자를 낙찰 후보로 선정하는 단계 및 낙찰 처리부에 의해, 상기 입찰가 범위 및 상기 잠정 판매가에 기초하여, 상기 낙찰 후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잠정 판매가를 수신하는 단계는, 상기 판매자로부터 상기 입찰가 범위의 최대 길이를 더 수신하고, 상기 입찰가 범위를 수신하는 단계는, 상기 최대 길이를 복수의 입찰자에게 제공하고, 상기 복수의 입찰자

8) 2016원4606

로부터 입찰가 범위의 최고가와 입찰가 범위의 최저가의 차이가 상기 최대 길이를 초과하지 않는 입찰가 범위를 수신하는 온라인 경매 서비스 제공 방법.

【그림 1】 온라인 경매 서비스 제공 장치의 구성도



【인용발명 및 주지기술 등】

인용발명 1은 가격의 범위에 의거한 쌍방향 경매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상품 내지 용역의 경매에 있어서 다수의 경매 참가자들에게 특정의 가격이 아닌 가격의 범위, 즉 상/하한가를 제시하도록 하여 그 범위 내의 가격에 해당되는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간에 경매를 성사시켜 주는 것이다.

인용발명 2는 경매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한 회의 경매를 통해 각각의 입찰자가 복수의 입찰가를 제시하도록 하고, 이 중에서 복수의 낙찰 조건 각각에 대하여 적어도 한 명의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인용발명 3은 '경매 방법 및 경매 서버'에 관한 것으로, 판매자가 제시한 하한가격과 상품에 대한 상한가격 사이에서 입찰자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매자 및 입찰자들이 상품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 낙찰자의 낙찰금액을 모든 낙찰자들에게 판매가로 적용해 주는 것이다.

해설 및 대응방법

- 원결정의 주요한 취지는 청구항 1, 11이 인용발명 1 내지 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것이고, 의견제출통지의 거절이유는 청구항 1, 7, 11이 인용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것이 주요한 취지로 보이므로, 원결정과 의견제출통지에서 청구항 1, 11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인용발명들의 조합 개수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쟁점이 되는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5, 6'이 의견제출통지에서는 비교대상발명 2로부터 쉽게 도출된다고 하였으나, 원결정에서는 인용발명 2가 아니라 인용발명 3으로부터 쉽게 도출된다고 하여, 원결정과 의견제출통지의 핵심 거절이유가 다릅니다.
- '구성요소 5, 6'이 인용발명 3으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다는 거절이유를 원결정 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처음 받은 것이어서, 그 거절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 「그 거절이유가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인 경우」란 해당 거절이유가 앞서 통지된 거절이유통지에서 지적한 거절이유와 주지(主旨)에 있어서 부합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주지가 부합되는지 여부는 일부의 문구나 표현에 구애되어서는 아니 되고 출원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2006후1766, 2001후2702).
- 심사관이 청구범위를 잘못 해석하거나 인용발명을 잘못 파악하는 등의 이유로 부적절한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출원인이 제대로 대응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절이유를 다시 통지하여야 합니다(2013허9881).

5 기술 분야가 상이한 경우 인용발명들 간의 진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작성 사례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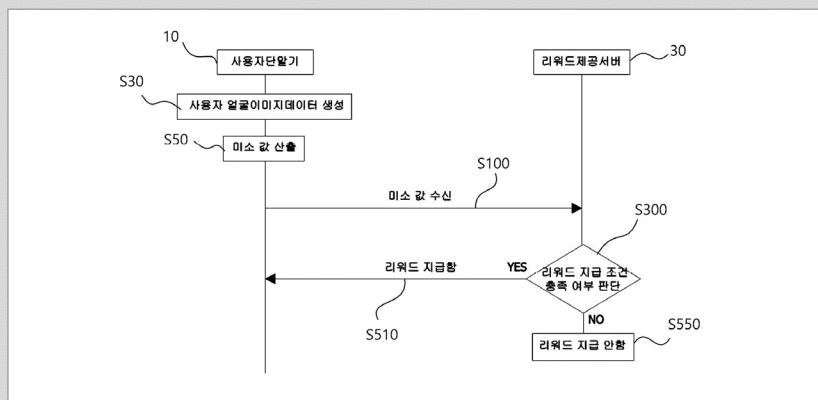
【발명의 명칭】

사용자의 미소에 대해 리워드를 제공하는 방법 및 그 서버

【청구항 1】

카메라와 위치측정부 및 얼굴이미지데이터로부터 미소값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저장된 단말기메모리를 갖는 사용자단말기로부터 사용자의 얼굴이 촬영된 시점에서의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얼굴이미지데이터를 소정의 알고리즘에 따라 분석하여 산출된 미소 값과 상기 위치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미소 값에 기초하여 상기 사용자에게 리워드를 지급하는 단계와; 상기 위치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수신된 미소 값들의 평균값이 표시되는 소정의 지도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리워드를 지급하는 단계는, 상기 위치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위치정보에 해당하는 고유의 위치기반 리워드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결정된 위치기반 리워드를 상기 미소 값에 비례하게 상기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의 미소에 대해 리워드를 제공하는 방법.

【그림 1】 사용자의 미소에 대해 리워드를 제공하는 방법의 순서도



9) 2019원4161

【인용발명 및 주지기술 등】

인용발명 1은 ‘스마일 뱅킹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고객 단말에서 고객의 얼굴 화상을 촬상하고, 서버에서 상기 촬상된 고객의 얼굴 화상을 수신하여 검출하고, 상기 검출된 얼굴 화상에서 웃는 얼굴 정도를 수치화해 판정하는 구성, 판정된 웃는 얼굴 정도에 따라 미리 정해진 특전 서비스를 제공하되, 웃는 얼굴 정도가 높을수록 가치가 높은 특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성 등이 개시되어 있다.

인용발명 2는 ‘혜택 기반 목적지 경로 안내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위치 정보를 측정하는 GPS 모듈 및 목적지 경로 안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비게이션 모듈이 설치된 사용자 단말; 상기 사용자 단말로부터 출발지 및 목적지의 위치 정보를 수신하며, 수신된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사용자 단말의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 가능 경로를 생성하는 지리 정보 제공 서버; 지리적 위치에 기반한 위치 기반 혜택 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혜택 관리 서버; 상기 지리 정보 제공 서버 및 상기 혜택 관리 서버를 참조하여 혜택 기반 경로 정보를 생성하고, 생성된 혜택 기반 경로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로 제공하는 혜택 기반 경로 안내 서버; 및 상기 사용자 단말이 상기 혜택 기반 경로를 통해 이동할 때 상기 사용자 단말로부터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측위 서버를 포함하며, 상기 혜택 기반 경로 안내 서버는, 상기 지리 정보 제공 서버에서 생성된 이동 가능 경로로부터 복수의 후보 경로를 추출하는 후보 경로 추출 모듈; 상기 후보 경로 추출 모듈에서 추출된 후보 경로를 상기 혜택 관리 서버에 저장된 위치 기반 혜택 정보와 매칭하여 복수의 혜택 기반 경로 정보를 생성하는 혜택 기반 경로 생성 모듈; 상기 사용자 단말로 상기 혜택 기반 경로 정보를 제공하는 혜택 기반 경로 안내 모듈; 및 상기 측위 서버에서 수집된 상기 사용자 단말의 위치가 상기 혜택 관리 서버에 저장된 위치 기반 혜택 정보의 지리적 위치에 소정 반경 내로 근접할 때 상기 사용자 단말로 미리 정해진 혜택을 제공하는 혜택 제공 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인용발명 3은 ‘다수의 이용자들이 게시하는 감정 상태를 지도상에서 각

자 소재 위치에 맞추어 표시하고 열람으로 제공하는 소셜미디어'에 관한 것으로, 이용자의 휴대 단말의 위치 데이터에 기초하여 이용자의 감정 상태 벡터 데이터에 따라 감정 표상을 지도상에 표시하는 구성 등이 개시되어 있다.

해설 및 대응방법

- 제1항 발명과 인용발명 1은 모두 사용자의 미소에 대해 리워드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또한 인용발명 2는 사용자 단말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미리 정해진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인용발명 3은 이용자의 휴대 단말의 위치 데이터에 기초하여 이용자의 감정 표상을 지도상에 표시한다는 점에서, 제1항 발명과 기술분야가 공통됩니다.
- 제1항 발명은 사용자 단말기에 의해 사용자의 얼굴을 촬영하여 사용자의 미소에 대해 리워드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자주 웃도록 유인하여 웃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는데, 인용발명 1 또한 이와 동일한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제1항 발명은 위 기술적 특징에 더하여 사용자 단말기의 위치 측정 기능을 이용하여, ①사용자 단말기의 위치정보에 기초하여 위치기반 리워드를 제공하고, ②사용자 단말기의 위치정보에 기초하여 미소 값들이 표시되는 지도이미지를 생성하는 구성을 더 부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용발명 1과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 그러나 인용발명 1도 사용자 단말기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얼굴을 촬영하여 리워드를 제공하는 것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용자 단말기의 위치정보에 기초하여 위치기반 리워드를 제공하는 구성은 인용발명 2에, 사용자 단말기의 위치정보에 기초하여 미소 값들이 표시되는 지도이미지를 생성하는 구성은 인용발명 3에 각각 개시되어 있는 바, 결국 통상의 기술자라면 인용발명 1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 기술분야가 공통되는 인용발명 2, 3의 각 대응구성들을 채택하여 결합함으로써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제1항 발명의 전체 구성을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 두 개 이상의 다른 선행기술을 결합하는 것이 용이한지를 결정하는 경우 심사관은 ①통상의 기술자가 결합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② 선행기술의 출처가 동일하거나 인접 기술분야인지 여부, ③결합을 위해 서로 관련지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 결합에 대한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는 선행기술에 그대로 교시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의 성질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지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가지는 기술상식이나 경험칙 내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한다(2007후1633).

4 의견제출통지 및 그 후의 절차

심사관이 특허요건을 심사하여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면, 출원인은 이에 대응하여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제출된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참고하여 다시 심사하며, 이 결과 특허 결정서 또는 특허거절결정서를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 의견제출통지

- 심사관은 특허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기재한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 의견제출통지서의 [구체적인 거절이유] 항목에서 심사관은 청구항별로 거절이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출원인이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직접적인 거절이유는 아니나, 출원인의 대응에 도움이 되는 사항은 「참고사항」으로 기재하기도 합니다.

● 의견제출통지서 예시

10-2020-*****

발송번호 **--2021-*****
 발송일자 2021.**.**
 제출기일 2021.**.**

YOUR INVENTION PARTNER

특 허 청
 의견제출통지서

출 원 인 성 명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
 주 소 대전시 서구 둔산동 ***
 대 리 인 성 명 김대리
 주 소 대전시 서구 둔산동 ***
 발 명 자 성 명 홍길동
 주 소 대전시 서구 둔산동 ***
 출 원 번 호 10-2020-*****
 출 원 일 자 2020.**.**.
 발 명 의 명 칭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영업방법

1. 이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다음과 같은 거절이유가 있어 특허법 제63조에 따라 이를 통지 하오니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기 제출기일까지 의견(답변, 소명)서[특허 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또는/및 보정서[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기 제출기일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연장신청을 통해 그 제출기일을 4개월까 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신청은 1개월 단위로 해야 하며, 필요 시 4개월을 초 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개월 이상을 일괄하여 연장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의 발 생(하단의 안내참조)으로 4개월을 초과하여 지정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소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서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심사결과]

- 심사 대상 청구항 : 제1-3항
- 이 출원의 거절이유가 있는 부분과 관련 법조항

순번	거절이유가 있는 부분	관련 법조항
1	청구항 제1항 내지 제3항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
2	청구항 제1항 내지 제3항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
3	청구항 제1항 내지 제3항	특허법 제29조제2항

[구체적인 거절이유]

1. 이 출원의 청구범위의 청구항 제1항 내지 제5항에 기재된 발명은 아래와 같이 특허법 제 29조제1항의 본문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10-2020-*****

- 아 래 -

‘회원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주문하는 주문 단계’ 및 ‘주문한 상품 내지 서비스를 ~ 배송하는 배송 단계’ 등으로 구성된 청구항 제1항은 - 종략 - 와 같이 인간의 인위적인 행위 또는 인간의 정신활동이 개입될 수 밖에 없으며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즉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으로 볼 수 없습니다.

‘회원이 ~ 자유로이 검색하거나 소핑 도우미와의 상담을 통해 ~ 습득하는 상품정보 습득 단계’ 등으로 구성된 청구항 제2항은 - 종략 - 와 같이 청구항 제1항에서와 동일한 이유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청구항 제3항은 청구항 제1항 또는 제2항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본 청구항 역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이 출원은 청구범위의 청구항 전항의 기재가 아래에 지정한 바와 같이 불비하여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아 래 -

청구항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에 있어서, 상기 거절이유 1에 해당하는 구성요소를 제외한 ‘상품 등록 단계’ 및 ‘연결번호 중개 단계’는 상품을 등록하고 연결번호를 중개하는 기술적 수단 즉, 행위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발명의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청구항 제3항은 청구항 제1항 또는 제2항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본 청구항 역시 발명의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3. 이 출원의 청구범위의 청구항 전항에 기재된 발명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아 래 -

가. 출원발명 및 인용발명

출원발명은 인터넷의 번호를 이용하여 - 종략 -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인용발명(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2-*****호, 2002.**.*)에는 집합주택용 인터넷 장치를 이용하여 - 종략 - 택배 우편을 통해 배송해주는 택배시스템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나. 목적 및 효과 대비

- 2 -

출원발명은 인터폰을 이용하여 쇼핑물과 직접 연결되도록 하여 상품검색과 상담 및 상거래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어, 인용발명의 - 종략 - 한다는 점에서 목적 및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다. 구성 대비

청구항 제1항의 기재에 있어서, '상품등록 단계'와 인용발명의 '~ 구성' (오약 참조), '주문 단계'와 인용발명의 '~ 구성' (단락 [0006] 참조) 및 '배송 단계'와 인용발명의 '~ 구성' (단락 [0008] 참조)은 상호 유사합니다. 또한, 각 구성요소를 결합함에도 각별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청구항 제1항이 인터폰으로부터 보내지는 신호를 쇼핑물로 연결하는 연결신호 중개단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용발명과 차이가 있으나, 이는 - 종략 - 와 같이 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라면 인용발명의 인터폰을 이용한 주문 수단으로부터 당연히 유추할 수 있는 단순한 기술입니다.

청구항 제2항은 청구항 제1항에 있어서, 상품 및 서비스의 검색과 상담 수단을 부가하고 있어, 이는 인용발명의 상품 검색 및 문의와 관련한 구성(단락 [0012] 참조)으로부터 쉽게 채용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제3항은 청구항 제1항과 발명의 범주만 다른 기록매체로서, 청구항 제1항과 동일한 취지의 거절이유가 적용됩니다.

라. 결론

따라서 이 출원의 청구항 제1항 내지 제3항은 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부]

첨부1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2-*****호(2002.**,**) 1부, 끝.

10-2020-*****

2021.***.**.
특허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전자상거래심사과 심사관 *** _____

<< 안내 >>

1. 특허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출원일이 2013년 7월 1일 이후인 출원에 대해서는, 하나의 의견제출통지에 따른 지정기간 내에 보정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 보정 이외의 모든 보정은 취하관두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보정료 납부안내
 - o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기 위하여 명세서등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경우 매건 4,000원,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매건 14,000원의 보정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o 보정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납부자번호로 "특허료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 이후의 첫 번째 근무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o 보정료는 국고수납은행(대부분의 시중은행)에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정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정료에 상당하는 통상환을 등봉하여 제출하시던 특허청에서 납부해드립니다.
 4. 지정기간연장 안내 : 연장가능기간(4개월)을 초과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소명서를 첨부하여 지정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관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지정기간연장의 승인 여부 및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통지합니다.

【4개월을 초과하여 지정기간연장을 할 수 있는 사유】

 - ① 기간만료 전 1개월 이내에 최초로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선임된 대리인 모두를 해임·변경한 경우
 - ② 기간만료 전 1개월 이내에 출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③ 기간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외국특허청의 심사결과를 받은 경우로서 등 심사결과를 보정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이 경우 신청서 제출 시 해당 심사결과 사본 및 그 기초가 된 청구범위 사본도 같이 제출해야 함)
 - ④ 의견제출통지서의 송달이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1개월 추가 연장 가능)
 - ⑤ 원출원 또는 분할출원이 심판이나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 ⑥ 거절이유와 관련된 시험 및 결과측정에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 ⑦ 기타 불가피하게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제3자가 심사청구한 때에는 ①~⑥의 경우라도 불응인
 5. 온라인 영상면담 및 보정안 리뷰(심층면담) 서비스 안내
 - o 심사관에게 방문면담을 신청할 경우 특허청(대전)에서 출원발명에 관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영상면담을 신청할 경우에는 특허청(대전) 방문 없이도 상담이 가능합니다.(영상면담 장소: 특허청 서술사무소와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부산, 울산, 인천, 전남지역지식재산센터).
 - o 보정안 리뷰를 신청할 경우 심층면담을 통해 거절이유 해소 여부 등 보정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사전검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특허로(www.patent.go.kr) - 출원신청 메뉴).
 6. 출원인의 명세서 작성 및 보정에 이해를 돕고자 아래 사이트에서 명세서작성사례 및 기술분야별 보정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 담당 심사관에게 연락주시던 명세서작성사례 등을 우편으로 송부해드리겠습니다.
 - o 특허로(www.patent.go.kr)-명세서작성관련 유용한 Tip
- ※ 「특허로」 고객센터에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담당 심사관 지정 알림, 마감기한 알림 등 각종 민원처리 사항을 이메일과 휴대폰(SMS)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 위에서 안내한 후속 절차 또는 신청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로, 이 통지서 결정 내용에 대한 사항은 특허청 ☎***-****(담당심사관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특허청 및 특허청 직원은 법령에서 정한 업무수수권 외에 출원인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임의의 금품·향응 및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나 사례를 인지 또는 묵과하였을 경우, 특허청 홈페이지(https://www.kipo.go.kr) 공직비리신고센터(특허청-민원/참여-국민신고-공직비리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허청)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 의견서 및 보정서 작성

-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출원인은 거절이유의 세부내용을 먼저 파악합니다. 심사관의 거절이유가 타당한지, 출원발명과 인용발명의 대비가 적절한지 등을 검토합니다.
- 검토한 결과,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또한, 보정 및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특허문서작성기로 보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좌측에는 보정 전의 내용, 우측에는 보정 후의 내용이 기재됩니다.

● 의견서 예시

【서지사항】	
【서류명】	의견서
【서류구분】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수신처】	특허청장
【제출인】	
【명칭】	(주)특허나라
【특허고객번호】	1-2010-*****-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성명】	김대리
【대리인코드】	9-2010-*****-
【포괄위임등록번호】	2010-*****-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10-2019-*****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9-5-2010-*****-
【의견내용】	별지와 같음
【취지】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대리인 김대리 (서명 또는 인)

【의견내용】

출원발명에 대하여 심사관계서는 의견제출통지서에서, - 중략 -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원발명과 인용발명은 - 중략 - 구성과 효과 면에서 서로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하니 출원발명을 재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원발명의 보정

청구항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고 청구항 제1항에 삭제된 내용을 병합함으로써 그 권리 내용을 감축하도록 하는 보정을 하였습니다.

2. 목적 및 효과 대비

출원발명과 인용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대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중 략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원발명과 인용발명의 목적 및 효과는 전혀 다릅니다.

3. 구성 대비

출원발명과 인용발명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 략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원발명과 인용발명의 구성이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도 현저합니다.

4. 결 어

이상에서 비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출원발명과 각 인용발명은 그 발명을 구성하는 전체의 유기적인 결합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은 물론 이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역시 서로 상이합니다. 특히,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서 단위 구성요소의 단계에 상기한 인용발명으로부터 일부만 공지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복수 개의 여러 구성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함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더욱 진보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동일자로 함께 제출하는 보정서에 의하여 출원발명을 재심사하여 특허를 허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보정서 예시

【명세서】

【발명의 명칭】

온라인 맞춤형 채용정보 제공방법(Method for provide on-line employment announcemet of custom-made)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온라인 맞춤형 채용정보 제공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의 블록 구성도.

【발명의 설명】

【기술분야】

본 발명은 온라인 채용정보 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웹페이지에 게시되는 기업채용공고에 구직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수집 제공하여 기업 홈페이지형과 같은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맞춤형 채용정보 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발명의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웹페이지에 게시되는 기업채용공고에 구직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회사소개, 인사제도, 복리후생, 인재상 등)를 맞춤형으로 구비하여 기업 홈페이지형의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과제 해결 수단】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온라인 맞춤형 채용정보 제공방법은, 회사서버를 통하여 중앙서버에 채용광고 등록을 요청하는 단계; 상기 중앙서버에서 상기 회사서버로 채용정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단계; 상기 회사서버에서 제공되는 상기 채용정보 및 관련정보를 접수하는 단계; 상기 중앙서버에서 상기 채용광고 등록을 요청한 회사의 상세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구직자 단말기를 통하여 중앙서버에 채용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단계; 상기 중앙서버에서 상기 접수 및 수집된 정보들을 조합하여 채용광고 화면을 구성하는 단계; 및 구성된 화면의 채용 정보를 웹페이지에 제공하여 상기 구직자 단말기에서 검색 및 다운로드 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효과】

본 발명에 따른 기업 홈페이지와 같은 형식의 온라인 맞춤형 채용정보 제공방법에 의하면, 웹페이지에 게시되는 기업채용공고에 구직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맞춤형으로 수집 제공함으로써, 개인 및 기업 고객 등에게 웹페이지 내 채용공고를 필요한 정보만을 일목요연하게 제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노출할 수 있고, 가독성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 종 략 -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비록 한정된 실시예와 도면에 의해 설명되었으나, 본 발명은 상기의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러한 기재로부터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발명 사상은 아래에 기재된 청구범위에 의해서만 파악되어야 하고, 이의 균등 또는 등가적 변형 모두는 본 발명 사상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범위】**【청구항 1】**

온라인 채용정보 제공방법에 있어서, 회사서버를 통하여 중앙서버에 채용광고 등록을 요청하는 단계; 상기 중앙서버에서 상기 회사서버로 채용정보 및 회사를 소개하는 관련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단계; 상기 회사서버에서 제공되는 상기 채용정보 및 회사소개의 관련정보를 접수하는 단계; 상기 중앙서버에서 상기 채용광고 등록을 요청한 회사의 상세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구직자 단말기를 통하여 중앙서버에 채용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단계; 상기 중앙서버에서 상기 접수 및 수집된 정보들을 조합하여 채용광고 화면을 구성하는 단계; 및 구성된 화면의 채용 정보를 웹페이지에 제공하여 상기 구직자 단말기에서 검색 및 다운로드 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기업 홈페이지와 같은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맞춤형 채용정보 제공방법.

【청구항 1】

온라인 채용정보 제공방법에 있어서, 회사서버를 통하여 중앙서버에 채용광고 등록을 요청하는 단계; 상기 중앙서버에서 상기 회사서버로 채용정보 및 회사를 소개하는 관련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단계; 상기 회사서버에서 제공되는 상기 채용정보 및 회사소개의 관련정보를 접수하는 단계; 상기 중앙서버에서 상기 채용광고 등록을 요청한 회사의 상세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구직자 단말기를 통하여 중앙서버에 채용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단계; 상기 중앙서버에서 상기 접수 및 수집된 정보들을 조합하여 채용광고 화면을 구성하는 단계; 구성된 화면의 채용 정보를 웹페이지에 제공하여 상기 구직자 단말기에서 검색 및 다운로드 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중앙서버는 별도의 검색 엔진을 이용하여 상기 채용광고 등록을 요청한 회사의 상세정보를 수집하고, 상기 중앙서버에서 구성한 채용광고 화면은 회사소개, 채용정보, 인사제도, 복리후생, 인재상 및 채용절차 정보 중 적

어도 어느 하나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맞춤형 채용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중앙서버는 별도의 검색 엔진을 이용하여 상기 채용광고 등록을 요청한 회사의 상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맞춤형 채용정보 제공방법.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중앙서버에서 구성된 채용광고 화면은 회사소개, 채용정보, 인사제도, 복리후생, 인재상 및 채용절차 정보 중 적어도 어느 하나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맞춤형 채용정보 제공방법.

【청구항 3】

삭제

【요약서】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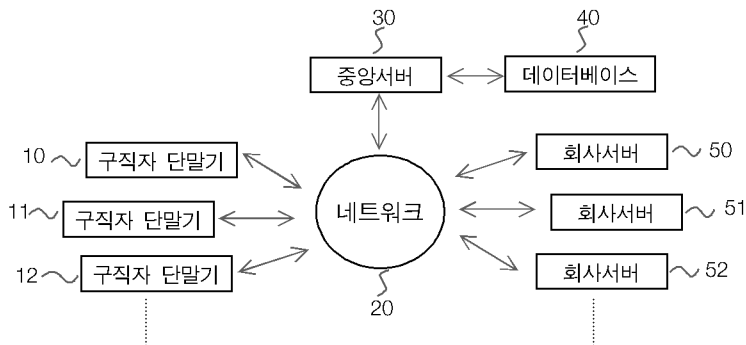
본 발명은 웹페이지에 게시되는 기업채용공고에 구직자가 필요로 하는 상대회사의 기업소개 정보를 맞춤형으로 수집 제공함으로써, 개인 및 기업 고객 등에게 웹페이지 내 채용공고를 필요한 정보만을 일목요연하게 제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노출할 수 있고, 가독성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온라인 맞춤형 채용정보 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도 2

【도 면】

【도 1】



■ 특허거절결정 및 특허결정

- 심사관은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를 참고하여 다시 심사하며, 이 결과 특허결정서 또는 특허거절결정서를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 특허거절결정서 예시

발송번호 ***-2021-*****
발송일자 2021.**.**,

YOUR INVENTION PARTNER
특 허 청
특허거절결정서

출 원 인 성 명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
주 소 대전시 서구 둔산동 ***
대 리 인 성 명 김특허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

출 원 번 호 10-2020-*****
발 명 의 명 칭 개인의 건강검진 방법

2021.**.**, 자 접수된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및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서·답변서·소명서에 의하여 다시 심사한바 2021.**.**, 자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출원에 대하여 특허법 제62조에 따라 거절결정합니다.

[다시 심사한 결과]

심사 대상 청구항 : 제1, 3항

이 출원의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 법조항

순번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부분	관련 법조항
1	청구항 제1항 및 제3항	특허법 제29조제2항

[거절결정의 이유]

이 출원의 청구범위의 청구항 전항에 기재된 발명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아 래 -

가. 심사 경위

인용발명(한국공개특허공보 제2004-*****호)에 의한 진보성 결여(제29조제2항)를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한 바 있고, 출원인은 이에 대응하는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나. 보정 및 의견 내용

- 1 -

출원인은 보정서를 제출하여 청구항 제2항을 삭제하고 이를 청구항 제1항에 병합하고 청구항 제3항은 '검진 지수' 구성요소를 추가하는 보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원인은 의견서에서 ① 개인의 건강 검진 결과를 지수로 수치화한 투자 상품을 거래한 후, - 종락 - 목적의 특이성이 있고, ② 개인의 건강 검진 결과를 1개의 건강지수 단일 값으로 평가하고, 투자 기간의 전후로 2회의 건강 검진을 제공하고, - 종락 - 제공항에 구성의 특징이 있어 출원발명과 인용발명은 전혀 다른 발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 거절이유 해소 여부 판단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에 의하여 진보성 여부를 판단해 보면, 청구항 제1항은 보정 전 제2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1항에 병합한바, - 종락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단순병합에 불과하여 - 종락 - 기 거절이유가 보정된 제1항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검진 지수' 구성요소를 추가한 청구항 제3항에 있어서도 새로이 추가된 '검진 지수' 가 - 종락 - 이유로 구성이 곤란하다고 할 수 없어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 의견서 주장에 대한 판단

상기 나.에 기재되어 있는 출원인의 주장에 대해 인용발명과 대비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종락 - 이와 같이 인용발명으로부터 출원발명을 도출할에는 구성의 곤란성이나 효과의 현저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마. 결론

출원인의 보정서 제출을 통한 보정에도 불구하고 청구항 제1항 및 제3항에 대한 애초의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출원인의 진보성이 있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으므로 거절결정합니다. 끝.

● 특허결정서 예시

발송번호 **--2021-*****
발송일자 2021.**.**. **

YOUR INVENTION PARTNER

특 허 청
특허결정서

출 원 인 성 명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
주 소 대전시 서구 둔산동 ***
대 리 인 성 명 김대리
주 소 대전시 서구 둔산동 ***
발 명 자 성 명 홍길동
주 소 대전시 서구 둔산동 ***
출 원 번 호 10-2020-*****
발 명 의 명 칭 가격비교사이트 운영 방법 및 시스템
청 구 항 수 9

이 출원에 대하여 특허법 제66조에 따라 특허결정합니다.
(특허권은 특허료를 납부하여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음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 끝.

[참고문헌]

1. KR102004***** A
2. KR102006***** A
3. KR102001***** A
4. KR102002***** A
5. KR10***** B1

2021.**.**.

특허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전자상거래심사과 심사관 *** _____

<< 안내 >>

- 【 등록료 납부, 전자등록증 발급 서비스 개시, 특허기술상신청 안내 및 등록공보 확인 등 】**
1. 등록료 납부안내
 - 특허료 납부예정금액(1-3년차분) : 318,000 원(1-3년차분을 정상납부기간내에 납부하는 경우), 159,000 원(50% 감면대상자인 경우), 96,400 원(70% 감면대상자인 경우)
 - 특허료의 정상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추가납부하거나, 특허료납부기간 중 특허료의 변경요인이 있을 때에는 위 납부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안내는 아래의 첨부파일(특허료 납부 안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출원인은 이 특허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다만, 특허법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에 분할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3. 2018. 7. 1. 설정 등록부터 전자등록증 발급이 시행되었습니다. 특허청(<http://www.patent.go.kr>)에서 「전자등록증 신청」을 사전에 하거나, 납부서(특허권 등의 등록명 시행규칙 서식 제25호)에 등록증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 수령으로 선택하면 「전자등록증 수신함」을 통해 전자등록증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자등록증을 사전에 신청하지 않고 동봉된 납입고지서로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서면 등록증으로 발급됩니다.
 4. 내국인은 매년 2월, 8월경 특허기술상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jsp/kiponet/mp/patentprize/index.htm>)에 공지된 신청기간에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발명(고안)에 대해 특허기술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준일(상반기의 경우 매년 2월 1일, 하반기의 경우 매년 8월 1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정등록된 발명(고안)
 -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이 필요한 발명으로서 신청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품을 출시하여 매출이 발생한 발명
 5. 출원인은 설정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만, '12.3.15. 이후의 출원이고,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특허출원일로부터 4년과 출원심사 청구일로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된 경우에 한 함)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 * 등록공보는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신 후 7일 전후로 특허청 홈페이지(특허마당→인터넷공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관의 직권 보정사항이 있으면 평균 등록일로부터 약 30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특허로」 고객센터에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담당 심사관 지정 알림, 마감기한 알림 등 각종 민원처리 사항을 이메일과 휴대폰(SMS)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해 무료 온라인 교육서비스(www.ipacademy.net)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 위에서 안내한 후속 절차 또는 신청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로, 이 통지서 결정 내용에 대한 사항은 특허청 ☎***-*****(담당심사관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특허청 및 특허청 직원은 법령에서 정한 법정 수수료 외에 출원인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일체의 금품·향음 및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나 사례를 인지 또는 묵과하였을 경우,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공지바리신고센터(특허청-민원/참여-국민신고-공지바리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허청)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문산동, 정부대전청사)



BM 특허의 활용 및 보호 사례

1. BM 특허를 기반으로 성장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149
2. 공유경제의 등장과 BM 특허	152
3. BM 특허의 해외 분쟁 사례 1	161
4. BM 특허의 해외 분쟁 사례 2	165
5. BM 특허의 해외 분쟁 사례 3	169
6. BM 특허의 해외 분쟁 사례 4	173
7. BM 특허의 해외 분쟁 사례 5	181

1 BM 특허를 기반으로 성장한 세계 최대 전자 상거래업체 - 아마존 社의 원클릭 특허

충성없는 3차 대전..표준전쟁

[출처 : '05.12.09. 연합뉴스]

인터넷업계의 대표적인 특허 분쟁 사례로는 아마존(Amazon) 대 반즈 앤 노블(Barnes and noble)의 대결이 꼽힌다.

1999년 10월 21일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은 세계 최대의 오프라인 서점인 반즈앤노블 사의 인터넷 매장 익스프레스 레인(Express lane)이 자사가 이미 특허를 획득한 `원클릭온라인 쇼핑방법'을 모방했다는 이유로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미국 시애틀 지방법원은 1999년 12월 1일 반즈 앤 노블 사로 하여금 아마존의 특허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아마존의 특허는 서버시스템이 제품을 받을 주소 등을 포함한 고객정보를 미리 저장해 두고, 고객이 한 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제품구매를 요청하면 시스템에 저장된 고객의 정보를 검색하여 요구된 제품의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 소송은 온라인의 터줏대감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오프라인의 거대업체에 먼저 공격을 가했다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끌었지만 2002년 11월 7일 아마존사가 소송을 전격 취하함으로써 종지부를 찍게 됐다.

■ 아마존 社의 원클릭 특허

- 아마존社의 원클릭 주문방식 같은 단순한 서비스 방식도 특허를 인정받게 됨으로써 아마존社는 이를 기반으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17년 전자신문에 따르면 원클릭 특허의 가치는 24억 달러로 추정되며, 아마존社는 창사 20년 만인 2015년 연간 매출액 1,070억 달러 돌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온라인 쇼핑 외에도 드론, 자율주행,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로 확장하며 폭발적인 성장(2018년 연간 매출액 2,329억 달러, US특허 2,035건)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스앤노블社(2018년 연간 매출액 36억 달러, US특허 9건)는 지속적으로 매출이 감소되어, 720개 매장 중 90개를 폐업하며 헤지펀드에 매각(4억 7600만 달러)되었습니다.

■ 관련 특허 정보

- 아마존 社의 등록미국특허 제5,960,411호는 고객이 웹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 번호나 배송 받을 주소를 입력하면 그 정보를 저장하고, 다음에 동일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한 번의 마우스 클릭을 통해 상품 구입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등록받은 청구항 1과 대표 도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명의 명칭	통신망을 통한 구매 주문 방법 및 시스템 (Method and system for placing a purchase order via a communications network)
출 원 번 호	US08/928,951
출 원 일 자	1997년 09월 12일
등 록 번 호	US5,960,411A
공 고 일 자	1999년 09월 28일
특 허 권 자	Amazon.com, Inc.
기 타	US7,006,989B2 외 다수의 Family 특허가 있음

【청구항 1】

상품을 주문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의해, 상품을 식별하는 정보를 표시하는 단계; 및
단일 액션만이 수행되는 경우, 서버 시스템에 상품 구매자의 식별자와 함께 상품을 주문하기 위한 요청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서버 시스템의 단일 동작 주문 구성 요소의 제어에 따라,
요청 수신하는 단계;
수신된 요청에서 식별자에 의해 식별된 구매자에 대해 미리 저장된 추가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 및

상기 검색된 부가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수신된 요청에서 상기 식별자에 의해 식별된 구매자에 대한 상기 요청된 아이템의 구매 명령을 생성하는 단계;

장바구니 주문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아이템이 주문되도록 아이템의 구매를 완성하는 생성된 구매 명령을 완료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을 주문하는 방법

【도면 3】

U.S. Patent Sep. 28, 1999 Sheet 5 of 11 5,960,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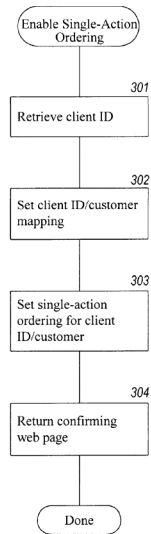


Fig. 3

BM 특허 하나가 거대 공룡기업을 무너뜨리는 단초를 제공하며,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시장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BM 특허는 라이벌 회사의 사업 참여를 막는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자사의 사업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타사의 BM 특허에 저촉되어 소송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 공유경제의 등장과 BM 특허

- 우버社·에어비앤비社의 O2O 서비스 특허

올해 최고의 '혁신적 파괴자'는 우버·알리바바

[출처 : '14.12.29. 조선일보]

28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올해 시장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혁신적 파괴자(disrupter)로 차량 공유 서비스업체인 '우버'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혁신적 파괴자는 기존 시장 질서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이 변화가 대량 해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이런 과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줄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우버를 1위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전 세계 택시 시장에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일반 자동차와 택시 운전사를 차량이 필요한 승객과 연결해주고 있다. 우버는 스마트폰과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간편하게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준다는 장점 때문에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손님-택시 연결' 우버의 단순 아이디어가 특허 받은 이유

[출처 : '19.09.26. 중앙일보]

개인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우버, 호텔이 지겨운 여행자에게 현지인의 집을 빌려주는 에어비앤비, 맛집에 찾아가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맛집 배달 서비스, 세탁소에 갈 시간이 없는 직장인을 위한 세탁물 수거 서비스, 세차장에 갈 시간을 아껴주는 출장 세차 서비스, 바쁜 직장인을 위해 정기적으로 면도날을 배달해주는 서비스 등이 모두 BM 발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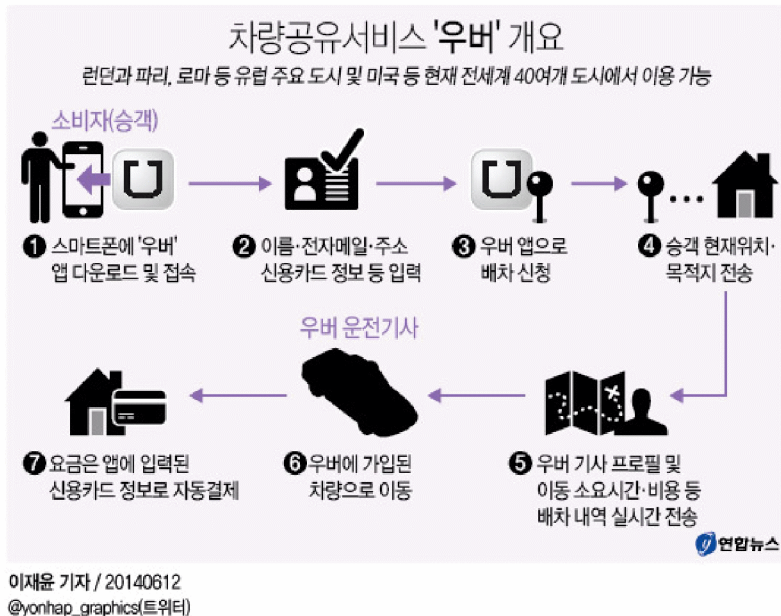
이러한 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 제공되는 특정 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BM 사업자가 온라인상에서 연결해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O2O(off-line to off-line)' 서비스 사업자다. 모바일 시대의 도래와 함께 위와 같은 O2O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간파한 사업자 중 일부는 지금은 누구나 아는 거대 기업이 됐다.

■ 우버社·에어비앤비社의 O2O 서비스 특허

- 공유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저성장의 기조에서 IT 플랫폼 서비스, SNS 등의 발전과 함께 기존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부상하였습니다.
- 우버社와 에어비앤비社는 공유경제 붐을 이끌어온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우버社는 대규모 투자를 지원받아 온디맨드(on-demand) 방식의 서비스 전략으로 글로벌 영업망을 빠르게 확대하였고, 에어비앤비社 또한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기반으로 경쟁업체 인수합병 및 현지화 서비스 전략으로 사업을 확장하였습니다.
- 우버社는 사업의 확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해오고 있으며, 직접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뿐만 아니라, AT&T, Microsoft, Hewlett-Packard, deCarta, Palo Alto Research Center, Bellsouth IP Corp 등 타기업으로부터 권리행사가 가능하거나 교차 라이선싱(cross-licensing) 할 수 있는 특허 위주로 다수의 특허를 양수하여 핵심 사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우버社의 특허 포트폴리오는 우버社의 핵심사업과 관련된 차량공유, 지도, 내비게이션, 데이터 처리 등의 특허뿐만 아니라 사업 분야의 다각화에 따라 무인자동차분야의 특허도 포함하며, 이 중에는 우버社의 사업 모델과 직결되는 BM 특허의 비중이 상당합니다.
- 한편, 구글社의 계열사인 자율주행기술 개발회사 웨이모(Waymo)社는 2017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에 우버社를 상대로 영업비밀 도용, 특허 침해, 불공정 경쟁 소송¹⁰⁾을 제기한 바 있고, 재판이 시작 된지 나흘만에 우버社가 자사 주식의 0.34%를 웨이모社의 지주회사인 알파벳社(Alphabet, Inc.)에 양도하는 것으로 합의함으로써 분쟁이 종결된 바 있으며, 이 후 우버社는 더욱 적극적으로 특허 매입에 집중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 그 밖에도 우버社는 기술특허와 더불어 상표와 디자인 확보에도 적극적이며 향후 분쟁에 대비해 견고한 안전망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10) Waymo LLC v. Uber Technologies, Inc., No. C 17-00939 WHA (N.D. Cal. 2017); 우버가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업 '오토'(웨이모의 엔지니어가 설립)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이 우버로 유출됐다는 주장

- 에어비앤비社は 숙박 공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 및 기타 세부적인 기술들에 대해서 특허 권리 확보를 진행하고 있는데, 에어비앤비社가 등록받은 최초의 특허출원은 2012년 로컬마인드(Localmind)¹¹⁾ 기업 인수를 통해 획득한 것이며 BM 특허에 해당합니다.
- 특히, 에어비앤비社は 사용자 선호도를 반영하고 호스트의 마케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직접 Data University를 운영하는 등 데이터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관련 특허 또한 다수 확인됩니다.
- 같은 연장선상으로, 에어비앤비社は 2017년 신원 조사 AI 스타트업인 트롤리社(Trooly)¹²⁾를 인수하여 트롤리社의 기술을 기반으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신뢰할만한 고객을 가려내는 특허(2018년11월)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11) 앱을 통해 호기심이 많은 여행자와 현지인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기업으로 위치 기반 질의응답을 쉽게 하기 위해 iPhone 및 Android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추가적으로 Foursquare와 연결되어 회원 체크인 기록을 사용해 바, 레스토랑, 컨퍼런스 홀 또는 체육관과 같은 특정 장소에 대한 현지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 보유

12) SNS 등 온라인 정보를 수집·분석해 개인의 평판과 특성을 평가하는 기술 기업

■ 관련 특허 정보

- 우버社의 등록미국특허 제9,959,512호는 개인 고객이 휴대전화(handsets)나 타 모바일 장치를 통해 특정 지리적 위치에서 차량 이동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운전자를 배정하는 서비스 관련 시스템 및 체계에 관한 것으로서 등록 받은 청구항 1과 대표 도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명의 명칭	System and method for operating a service to arrange transport amongst parties through use of mobile devices
출원 번호	US12/928,254
출원 일자	2010년 12월 06일
등록 번호	US09,959,512
공고 일자	2018년 05월 01일
특허권자	Uber Technologies, Inc.
기타	US9,230,292B2 외 다수의 Family 특허가 있음

【청구항 1】

하나 이상의 서버를 운용하여 운송을 배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고객의 모바일 컴퓨팅 디바이스 상에서 실행되는 고객 애플리케이션을 검출하는 단계 - 고객 애플리케이션은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와 자동으로 통신함;
 고객의 모바일 컴퓨팅 디바이스의 현재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 - 모바일 컴퓨팅 디바이스의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리소스와 인터페이스하기 위해 실행하는 고객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결정된 데이터에 기초함;

복수의 이용가능한 차량들의 현재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 - 복수의 이용가능한 차량들 중 각각의 이용가능한 차량의 현재 위치는 그 차량과 연관된 대응하는 모바일 컴퓨팅 디바이스 상에서 실행되는 대응하는 운전자 애플리케이션에 의

해 결정된 데이터에 기초하고, 이 때 복수의 이용가능한 각각의 차량에서, 대응하는 운전자 애플리케이션은 이용가능한 차량의 현재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데이터를 서비스에 제공하기 위해 대응하는 모바일 컴퓨팅 디바이스의 GPS 리소스에 액세스하도록 실행됨;

및 운송 요청을 수신하기 위해 고객의 모바일 컴퓨팅 디바이스 상에서 실행되는 고객 애플리케이션과 통신하는 단계로 구성되고,

고객 애플리케이션과 통신하는 단계는:

고객의 모바일 컴퓨팅 장치의 디스플레이 상에 프리젠테이션을 생성하기 위해 모바일 컴퓨팅 장치 상에서 실행되는 고객 애플리케이션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단계 - 프리젠테이션은 맵을 포함하는 동시에, 고객이 복수의 복수의 차량들 중 하나에 운송 요청을 할당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서버에 의해 선정 프로세스를 초기화하도록 운송요청의 전송을 트리거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특징을 제공함;

(i) 고객의 현재 위치에 지정된 근접도 내에 있고, (ii) 고객의 선호인 차량 클래스의 기준을 충족하는 하나 이상의 차량들을 복수의 이용가능한 차량들로부터 결정하는 단계;

(i) 맵 상의 고객의 모바일 컴퓨팅 장치의 현재 위치, (ii) 맵 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하나 이상의 차량들의 차량의 현재 위치, 및 (iii) 고객의 모바일 컴퓨팅 장치의 현재 위치에 도달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는 하나 이상의 차량들에 대한 예측된 응답 시간을 묘사하게 하기 위해 모바일 컴퓨팅 장치 상에서 실행되는 고객 애플리케이션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단계;

및 고객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특징과 상호작용하면 고객의 모바일 컴퓨팅 장치로부터 운송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 운송 요청은 픽업 위치를 특정하는 지리적 위치 정보를 포함함-을 포함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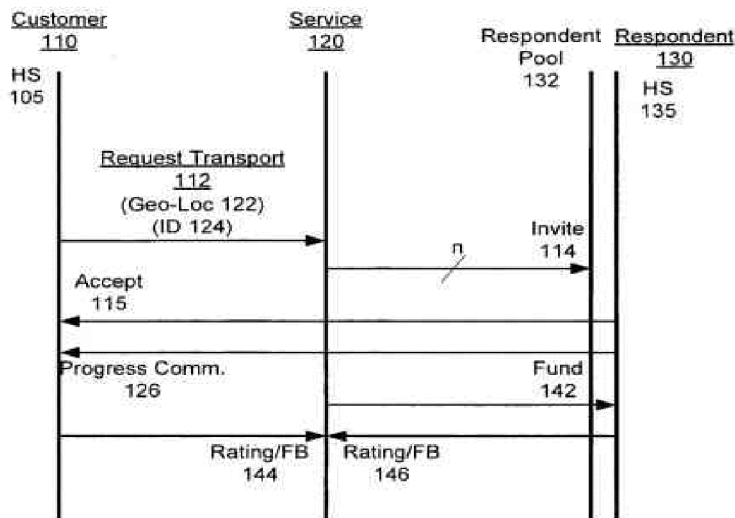
사용자 인터페이스 특징부로부터 운송 요청의 트리거된 전송을 수신하는 것에 응답하여, 고객을 운송하기 위해 할당될 하나 이상의 차량들로부터 이용가능한 차량을 프로그램적으로 선택하고, 선택된 차량과 연관된 모바일 컴퓨팅 디바이스 상에서 실행하는 운전자 애플리케이션과 통신하기 위한 정보를 결정함으로써 선택 프로세스를 개시하고, 여기서 결정된 정보는 픽업 위치를 포함하고;

운송이 고객에게 제공되기 전에, (i) 선택된 차량이 픽업 위치로 이동할 때 그 모바일 컴퓨팅 디바이스의 GPS 리소스에 액세스하기 위해 선택된 차량과 연관

된 모바일 컴퓨팅 디바이스 상에서 실행하는 운전자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결정된 위치 정보를 수신하고, (ii) 선택된 차량의 진행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진행 정보는 고객의 모바일 컴퓨팅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 상에서 운송하는 선택된 차량의 현재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표시를 포함하고;

고객이 선택된 차량에 의해 픽업될 때, 픽업 위치로부터 드롭-오프 위치로의 선택된 차량의 경로를 트래킹하고, 드롭-오프 위치로의 경로를 트래킹하는 것은 (i) 고객의 모바일 컴퓨팅 디바이스의 GPS 리소스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고객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또는 (ii) 선택된 차량과 연관된 모바일 컴퓨팅 디바이스의 GPS 리소스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대응하는 드라이버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중 적어도 하나에 의해 결정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고객에게 운송을 제공하기 위한 요금을 결정하고, 여기서 요금은 픽업 위치 및 드롭-오프 위치로의 트래킹된 경로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도면 1】



- 에어비앤비社의 등록미국특허 제10,467,553호는 숙박수요자와 숙박공급자를 연결해주는 것에 관한 것으로서 숙박수요자가 해당 숙박시설을 살펴보고 예약까지 마칠 확률을 기반으로 숙박시설들의 랭킹을 제공하고, 기존 예약요청의 특성(요구되는 숙박 시설 호스트의 특성, 예약이 요구되는 기간범위, 예약 요구되는 지역적 위치, 예약요청이 숙박시설 호스트로부터 승인됐는지 여부)을 기반으로 예측모델을 훈련시키고, 훈련된 예측모델을 기반으로 새로운 예약요청에 대해 숙박시설 후보랭킹을 제시하는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며, 등록 받은 청구항 1과 대표 도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명의 명칭	Automated determination of booking availability for user sourced accommodations
출 원 번 호	US13/802,025
출 원 일 자	2013년 03월 13일
등 록 번 호	US10,467,553
공 고 일 자	2019년 11월 05일
특 허 권 자	Airbnb, Inc.
기 타	WO2014/165191 외 다수의 Family 특허가 있음

【청구항 1】

컴퓨터 구현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은

예약 플랫폼(reservation platform) 상의 호스트에 의해 리스트된 숙박시설에 대한 복수의 과거 예약 요청을 식별하는 단계 - 상기 과거 예약 요청 각각은 (i) 요청될 숙박시설의 호스트의 아이덴티티(identity), (ii) 상기 예약 요청과 연관된 날짜 범위, (iii) 상기 예약 요청과 연관된 지리적 영역, 및 (iv) 상기 숙박시설의 호스트에 의해 상기 예약 요청이 수락 또는 거절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는 복수의 특징을 가짐 -;

예약 요청들의 복수의 특징들의 값들에 기초하여 예측 컴퓨터 모델(predictive

computer model)을 트레이닝하는 단계 - 상기 예측 컴퓨터 모델은, 상기 수용부들 각각에 대해, 상기 연도의 주어진 일(day)의 적어도 하나의 특징 및 상기 주어진 일(day)상의 상기 수용부의 이용가능성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확률 함수(probability function)를 포함함 -;

컴퓨터에 의해, 숙박을 위해 게스트로부터 검색 쿼리(search query)를 수신하는 단계 - 상기 검색 쿼리는 지리적 위치 및 요청된 날짜 범위를 포함함 -;

상기 컴퓨터에 의해, 상기 요청된 날짜 범위 동안 예약되지 않은 상기 지리적 위치의 후보 수용부들(candidate accommodations)의 세트를 식별하는 단계 - 상기 후보 수용부들 각각은 상기 수용부의 호스트에 의해 유지되고 상기 요청된 날짜 범위 동안 상기 후보 수용부가 예약되지 않았음을 표시하는 가용성 캘린더(availability calendar)와 연관됨 -;

상기 후보 수용부들의 세트의 식별자들을 포함하는 상기 게스트에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를 제공하는 단계 - 상기 식별자들은 디폴트 파라미터에 따라 정렬됨 -;

사용가능 기준에 따라 식별자들을 재정렬하기 위한 옵션의 게스트의 선택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옵션의 게스트에 의한 선택을 검출하는 것에 응답하여, 후보 수용부들 각각에 대해, 상기 예측 컴퓨터 모델을 상기 요청된 날짜 범위에 적용하는 상기 컴퓨터에 의해, 상기 가용성 달력에 따라 상기 요청된 날짜 범위 동안 예약되지 않은 상기 후보 수용부가 상기 요청된 날짜 범위 동안 예약하기 위해 실제로 이용가능한 가능성을 표시하는 예측된 가용성(predicted availability)을 계산하는 단계;

적어도 그들의 각각의 예측된 가용성에 기초하여 후보 숙박(candidate accommodations)을 컴퓨터에 의해 랭킹(ranking)하는 단계;

랭킹에 따라 재정렬된 식별자를 게스트에게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업데이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대표 도면】

The screenshot displays a search results page for San Francisco, CA, from 09/29/2012 to 09/30/2012 for 1 guest. The page features a sidebar with filters for room type (Entire home/apt: 112, Private room: 115, Shared room: 44), price (\$120 to \$200), neighborhood (Russian Hill: 8, Castro: 11, Downtown: 8, Balmain: 1), and amenities (Wireless internet: 118, TV: 32, Kitchen: 105). The main content area shows five listings:

- 519 A View By The Bay**: \$330 Per night. Location: 523, 525. Features: 10 reviews, 35 photos.
- Adorable 1 bdrm**: \$195 Per night. Location: 29, 27. Features: 29 reviews, 27 photos.
- Home Away From Home**: \$120 Per night. Location: 8, 2. Features: 8 reviews, 2 photos.
- Beautiful Modern Studio**: \$190 Per night. Location: 10. Features: 10 reviews.
- Steps from Golden Gate Park**: \$65 Per night. Location: 6. Features: 6 reviews.

At the bottom, it indicates '1 - 5 of 472 listings' with a pagination bar showing pages 1 through 96.

막대한 자본을 들이지 않고 혁신적인 기술과 플랫폼을 이용해 큰 성장을 이루고 이러한 사업 모델을 BM 특허가 포함되는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로 구축하여 보호하면서 다양한 사업 분야로의 확장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 특허 출원하여 등록받을 뿐만 아니라 특허의 양수 및 기업 인수합병 등을 통해 보다 견고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3 BM 특허의 해외 분쟁 사례

- 프라이스라인社의 '역경매 특허'와 마이크로소프트社

「경제 포커스」 인터넷 특허 주긴 줘야하는데...

[출처 : '00.01.19. dongA.com]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는 지난해 10월 호텔 예약 관련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원고는 프라이스 라인이라는 인터넷 비즈니스기업.

프라이스 라인측은 조건에 맞는 호텔이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사용자의 신용카드에서 결제가 되는 방식이 자사의 특허기술을 훔내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라이스 라인인 '인터넷 역경매' 방식에 대해 세계최초로 특허를 인정받은 업체. 양사간 분쟁은 인터넷 비즈니스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이른바 '인터넷 특허'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인터넷 특허는 '태풍의 눈'이다. 아직 인터넷 특허와 관련된 어떠한 결론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앞으로1~2년 안에 이 문제가 인터넷업계 판도를 뒤바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략>

■ 프라이스라인社와 마이크로소프트社의 영업방법

- 프라이스라인社는 중개자로서 구매자가 가격 및 여러 조건을 제시하면, 공급자들이 제출한 견적에서 최저가를 선택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name your own price'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결제 이전까지 고객은 어떤 공급자가 선정되는지 알 수 없고 프라이스라인을 사용하는 고객은 자신의 원하는 저렴한 가격과 조건으로 호텔을 예약하고, 호텔은 사전에 재고를 처리할 수 있어 상호 간에 이익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역경매를 이용하여 판매할 수 있는 재화는 호텔, 항공권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어 가치가 하락하는 재화입니다.



(출처: priceline.com)

- 마이크로소프트社의 자회사인 익스피디아(Expedia)社는 인터넷 사용자가 투숙하고 싶은 호텔과 시간대, 가격을 제시해 조건에 맞는 호텔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사용자의 신용카드에서 결제가 이루어져 예약이 성립되는 서비스입니다.



(출처: exedia.co.kr)

■ 프라이스라인社와 마이크로소프트社의 분쟁 과정

- 프라이스라인社는 역경매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4건의 특허에 대해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역경매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들은 프라이스라인社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마이크로소프트社는 프

라이스라인社와의 라이선스 교섭 결렬 후 역경매 방식을 이용한 호텔예약 서비스를 라이선스 없이 진행하였고 이에 프라이스라인社가 마이크로소프트社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마이크로소프트社에서 제공하는 'Hotel Price Matcher' 서비스는 호텔예약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프라이스라인社의 역경매 특허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서, 양 사의 분쟁은 결국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社가 프라이스라인社의 역경매 방식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는 대가로 로열티를 제공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마무리 되었습니다.

■ 관련 특허 정보

- 원고인 프라이스라인社(워커 애셋社)의 등록미국특허 제5,794,207호는 소비자가 가격이나 기타 희망조건을 제시하고, 신용카드로 보증한 '조건부 주문'을 참가 기업에게 제시하면, 해당되는 업자가 그 주문을 받을 권리를 낙찰 받는 시스템입니다.

발명의 명칭	Method and apparatus for a cryptographically assisted commercial network system designed to facilitate buy-er-driven conditional purchase offers
출원번호	US08/118,221
출원일자	1998년 08월 11일
등록번호	US5,794,207
공고일자	1998년 08월 11일
특허권자	Walker Asset Management Limited Partnership
기타	특허개발회사인 워커 디지털(Walker Digital)사, 특허관리 회사인 워커 애셋사(Walker Asset)와 인터넷 비즈니스 회사인 프라이스라인사가 제이 워커(Jay S. Walker)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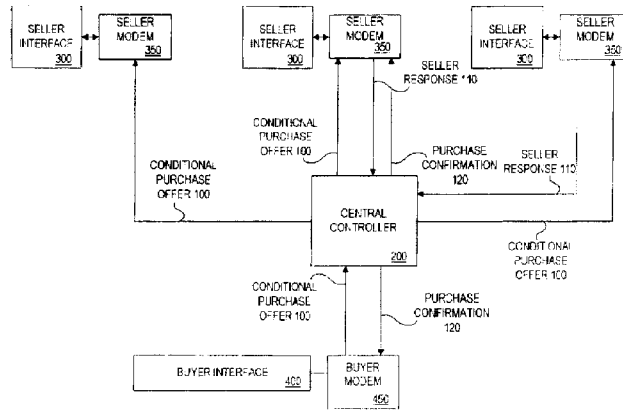
【청구항 1】

구매자와 적어도 하나의 판매자 간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상기방법은

오퍼 가격(offer price)을 포함하는 조건부 구매 오퍼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단계; 신용 카드 계정(credit card account)을 특정하는 지불 식별자(payment identifier)를 상기 컴퓨터에 입력하는 단계 - 상기 지불 식별자는 상기 조건부 구매 제안과 연관됨 -;

결제 식별자를 수신한 후 복수의 판매자에게 조건부 구매 제안을 출력하는 단계; 판매자로부터의 수락을 상기 컴퓨터에 입력하는 단계로서, 상기 수락은 상기 조건부 구입 제안(conditional purchase offer)에 응답하는, 상기 입력 단계를 포함하고 납부 식별자를 사용하여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대표도】



프라이스라인사가 공동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항할 수 있었던 것은 역경매 비즈니스에 관련한 4건의 특허로 촘촘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관리하였기 때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4 BM 특허의 해외 분쟁 사례

- 야후社の '온라인 검색광고 모델(CPC) 특허'와 구글社

구글 - 야후 , 특허분쟁 화해...구글, 야후에 3억달러 규모 신규주식양도 합의

[출처 : '04.08.10. 파이낸셜뉴스]

특허권 침해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여온 세계 최대 인터넷 포털업체 구글과 야후가 마침내 화해했다. 구글은 9일(현지시간) 야후에 3억달러 상당의 자사 신규주식 270만주를 내주는 조건으로 온라인 광고 특허권 분쟁을 마무리 지었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또 지난 2000년 구글 주식을 놓고 벌여졌던 소유권 분쟁과 서비스 계약 분쟁도 양사가 더 이상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허권 분쟁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온라인 광고 기술 관련 특허권을 가진 오버추어는 구글이 특허권을 무단으로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마침 야후가 지난해 오버추어를 인수하면서 특허권 소송권도 함께 넘겨받았다. 이에 따라 양사는 최근까지 법정에서 지루한 다툼을 벌여왔다. 구글은 야후에 양도할 주식 270만주를 신규 발행함에 따라 올 3·4분기 2억6000만달러~2억9000만달러의 특별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이 이같은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특허권 분쟁을 마무리 지은 것은 현재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 작업과 온라인 광고의 중요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르면 이번주부터 IPO를 시작할 구글은 주가를 보전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야후와의 분쟁을 서둘러 매듭지은 것으로 보인다. 검색엔진 시장이 포화 조짐을 보이면서 포털 사이트들이 잇따라 새로운 수익원인 온라인 광고시장에 뛰어든 것도 구글로서는 분쟁을 빨리 해결해야 할 요인이었다.

■ 야후社와 구글社의 분쟁 과정

- 검색광고(sponsored search)라는 모델은 GoTo.com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빌 그로스에 의해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검색엔진을 기반으로 검색광고를 붙여주고, 이 검색광고를 클릭하면 클릭단가를 정해서 광고비를 광고주에게 받는 방식을 구현한 것인데, 빌 그로스는 이후 GoTo.com社의 명칭을 오버추어(Overture)社로 변경하고 2003년 야후社에 회사를 매각하였습니다.

- 빌 그로스는 구글社の 두 창업자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설립한 GoTo.com社の 아이디어를 설명하였는데, 전화번호부의 광고에서 처음 아이디어를 가져왔고 검색을 광고와 결합할 경우에 큰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빌 그로스는 이 자리에서 구글社와 GoTo.com社가 합병한다면 정말 대단할 것이라는 제안을 했지만, 당시 구글社の 두 창업자들을 빌 그로스의 이런 접근방법이 검색을 지저분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방법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빌 그로스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 오버추어社の 인터넷 검색 광고모델은 인터넷 키워드 검색시, 검색결과표시 위치를 키워드의 입찰액순으로 결정하는 방식이고, 과금 방식은 P4P 방식으로 키워드 검색 결과를 네티즌이 클릭한 만큼만 광고주가 비용을 지불하는 일종의 종량제 방식입니다.
- 구글社は 2000년 애드워즈 프로그램을 통해 빌 그로스가 가졌던 아이디어의 일부를 변경해서 적용한 검색광고 모델을 내놓게 되었고, 이에 반발한 오버추어社は 2002년 구글社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 사의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오버추어社は '검색엔진을 통해 생성된 검색 결과 리스팅의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 하기위해 컴퓨터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 등 자사 특허가 67개의 개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 소송은 오버추어社를 2003년 인수한 야후社가 구글社の 주식 270만 주를 받는 것으로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 관련 특허 정보

- 원고인 야후社(오버추어社)의 등록미국특허 제6,269,361호는 검색 결과 페이지에 나오는 링크에 순서를 정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한 권리로 검색 키워드를 경매 방식으로 판매하는데, 가장 높은 값을 부르는 업체가 해당 키워드 검색 결과에서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이 회사의 P4P(Pay for Performance) 모델은 검색 결과에서 사용자가 해당 링크를 클릭한 만큼만 요금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발명의 명칭	컴퓨터 네트워크 검색엔진에 의해 발생하는 검색결과 리스트 상에서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 (System and method for influencing a position on a search result list generated by a computer network search engine)
출원 번호	US09,322,677
출원 일자	1999년 05월 28일
등록 번호	US6,269,361
공고 일자	2001년 07월 31일
특허권자	GoTo.com
기 타	GoTo社は 오버추어(Overture)社로 명칭 변경, 이후 오버추어社は 알타비스트타社로 인수되었고, 알타비스타社は 2003년 야후社에 인수되어 CPC 특허권은 야후社가 소유

【청구항 1】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검색 요청에 따라 거의 실시간으로 검색 결과 리스트를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각각의 검색 리스팅은 네트워크 위치, 적어도 하나의 검색 용어 및 상기 검색 리스팅의 다른 컴포넌트들과 독립적인 변경 가능한 입찰액과 연관되고, 상기 입찰액은 상기 검색 용어 및 상기 네트워크 위치 중 적어도 하나와 연관되고, 상기 입찰액은 상기 네트워크 위치에 대한 검색 요청의 수신시 상기 네트워크 위치와 연관된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의 계좌로부터 감소되는 금액에 상응하는 복수의 검색 리스팅들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단계;

사용자로부터 검색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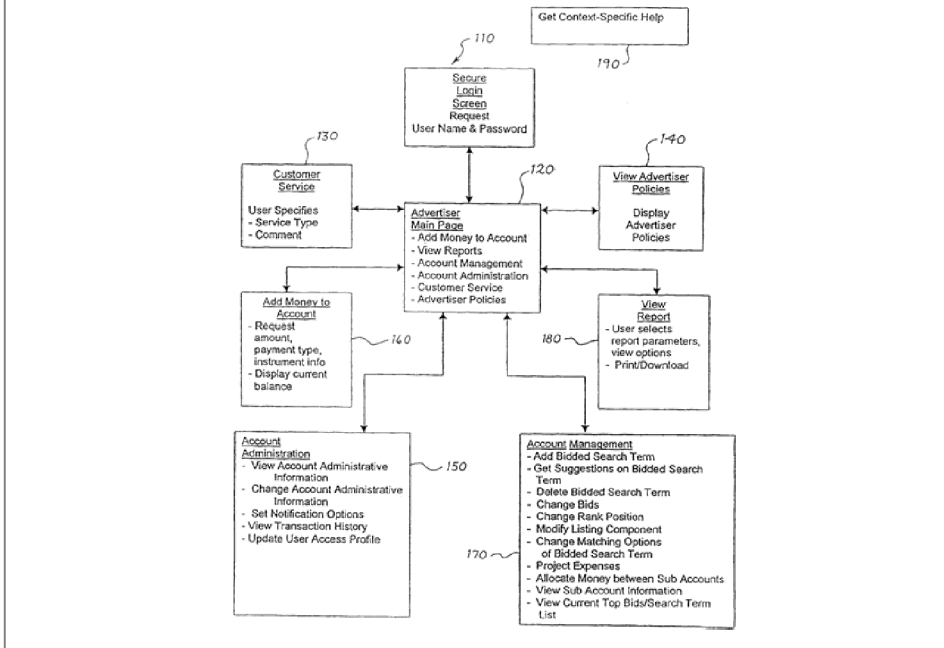
검색 요청과 일치하는 검색 용어가 있는 검색 목록을 식별하는 단계;

식별된 검색 목록에 대한 각각의 입찰액의 값에 따라 식별된 검색 목록을 정렬하는 단계;

사용자로부터 검색 결과 리스트 내의 검색 리스트와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검색 요구를 수신하는 단계; 및

정확한 계좌 인출 기록 관리를 승인하도록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에 대응하는 계정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검색 요구 이벤트를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대표도】



오버추어사의 검색 광고 모델이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이들이 성공에 의구심을 가졌지만 머지않아 그 위력을 입증하며, 수많은 굴지의 포털 업체와 제휴하고, 구글사와의 특허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버추어사의 창업자 빌 그로스가 구글사의 두 창업자를 만나 합병을 제안했을 때, 구글사가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를 미리 알아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글사는 이때의 뼈아픈 기억 때문이었을까요? 현재 구글사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특허보유 기업이 되었습니다.

5 BM 특허의 해외 분쟁 사례

- 렘브란트 소셜미디어사의 '서프북 특허'와 페이스북사

페이스북 '좋아요', 특허 소송 당해

[출처 : '13.02.12. 중앙일보]

페이스북의 '좋아요'(Like)와 '공유하기'(Share) 등 핵심 기능이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11일(현지시간) 영국 BBC 뉴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프로그래머 고(故) 요스 판 데르메르의 유족은 특허보유회사 '렘브란트 소셜미디어'를 통해 페이스북을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렘브란트 소셜미디어는 지난 4일 제출한 소장에서 페이스북이 판 데르메르의 특허 2건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렘브란트 소셜미디어는 판 데르메르가 생전에 개발했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일종인 '서프북(Surfbook)'에 사용된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판 데르메르는 지난 1998년 해당 기술들의 특허권을 획득했으나 2004년 숨졌다.

문제가 된 특허 가운데 하나는 이용자가 온라인상에 일기장 개념인 '소셜 다이어리(social diary)'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사용자가 자신의 웹 페이지에 정보를 모으고 재조직한 뒤 특정 집단의 사람들과 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페이스북의 '좋아요' 기능과 유사한 것으로, 제3자의 웹사이트 콘텐츠를 사용자의 개인 페이지로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다.

■ 렘브란트 소셜미디어사와 페이스북사의 분쟁 과정

- 페이스북사의 '좋아요.', '공유하기' 및 '타임라인' 서비스 기능은 페이스북 글이나 온라인상의 콘텐츠를 사용자의 개인 페이지로 이동시켜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 렘브란트 소셜미디어사의 초기 SNS인 서프북은 사람들이 올린 메시지를 한 곳에 모아 둔 페이지이고, 또한 시간 순으로 개인의 웹 일기를 만들고 콘텐츠를 개인 설정에 따라서 특정 그룹의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사용자들이 웹 페이지에 포함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그 콘텐츠를 개인 일기장에 전송하여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렘브란트 소셜미디어사는 서프북과 관련된 두 건의 특허가 페이스북과 같은 SNS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페이스북사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이러한 특허침해 주장에 페이스북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았으며, 또한 원고측이 페이스북측에 요구한 배상액의 규모도 역시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페이스북측은 관련한 타 특허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침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이스북의 '좋아요' 로고 및 '좋아요'와 '공유하기' 버튼]

■ 관련 특허 정보

- 원고인 렘브란트 소셜미디어사의 등록미국특허 제6,289,362호는 각각의 콘텐츠 공급자는 일기 서버로의 목적 또는 어드레스의 양상 및 아노테이트된 보편적인 어드레스의 전송을 가능하게 하고, 전송 스크립트를 제어하는 콘텐츠를

확인하며, 주석을 가지는 소개할 만한 콘텐츠와 아노테이트된 보편적인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시스템 및 방법입니다.

발명의 명칭	아노테이트된 보편적인 어드레스를 생성하고 이동시키고 이용하기 위한 시스템과 방법 (System and method for generating, transferring and using an annotated universal address)
출원 번호	US09/144,717
출원 일자	1998년 09월 01일
등록 번호	US6,289,362
공고 일자	2001년 09월 11일
특허권자	Aidministrator Nederland B.V.
기 타	페이스북사는 렘브란트 소셜미디어사와의 분쟁 과정에서 미국등록특허 제7,907,966호(2011.03.15.)를 AOL社로부터 인수함

【청구항 1】

컴퓨터 기반 방법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기반 방법은

콘텐츠 객체에 대한 액세스 요청을 클라이언트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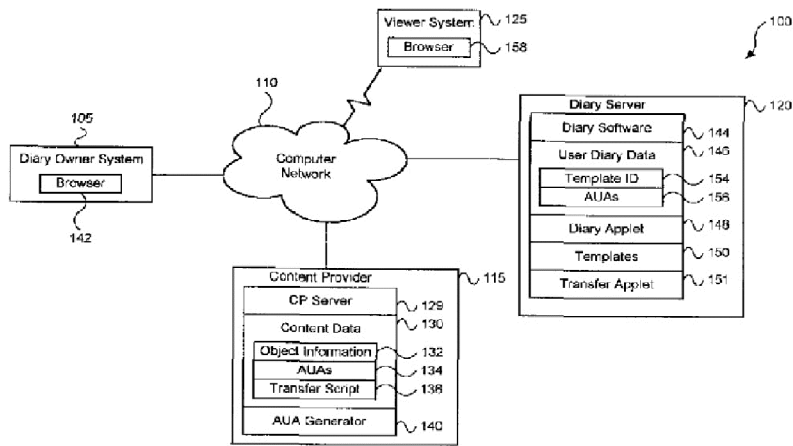
상기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콘텐츠 객체의 위치를 식별하는 범용 어드레스를 갖고 상기 객체의 프리젠테이션의 양상을 제어하기 위해 콘텐츠 제공자에 의해 저작된 주석을 갖는 주석된 범용 어드레스(AUA)를 식별하는 단계
- 상기 AUA는 하나의 AUA를 포함하는 AUA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함 -;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응답하여, 객체의 이온 행동을 제어하기 위한 프리젠테이션 컨텍스트(presentation context)를 식별하는 단계; 및

객체의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페이지 정의를 동적으로 생성하기 위한 프리젠테

이전 컨텍스트, AUA 및 애플릿을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페이지 정의는 프리젠테이션 컨텍스트 및 AUA로부터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기반 방법

【대표도】



BM 특허는 말 그대로 방법 발명입니다. 제목은 다르더라도 발명에 동일한 구성들이 있다면 특허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며, 특허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과 같은 보유 특허가 많지 않은 신생 업체들은 특허관리 전문회사들(NPEs, Non-Practicing Entities)의 주요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생 업체들이 BM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 받기 위해서는 타 발명과 특허에 동일한 기능의 방법 발명 구성들이 없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특허침해소송 분쟁에 맞서기 위해 다수의 대응 특허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6 BM 특허의 해외 분쟁 사례

- 디디알홀딩스社 vs. 호텔스닷컴社의 분쟁과 특허 성립성

DDR Holdings, LLC vs. Hotels.com, LP (Fed. Cir. 2014)

[출처 : '14.12.08. Patent Docs]

이 사건은 연방 대법원이 Alice Corp. v. CLS Bank Int'l 결정 이후, 연방순회항소 법원에 의해 컴퓨터 응용 청구항이 특허법 제101조의 도전에서 살아남은 것으로 결론 내려진 첫 번째 케이스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This case is important because it is the first time since the Supreme Court handed down the Alice Corp. v. CLS Bank Int'l decision that the Federal Circuit has concluded that computer-implemented claims survive a § 101 challenge.

■ 디디알홀딩스社 Vs. 호텔스닷컴社의 분쟁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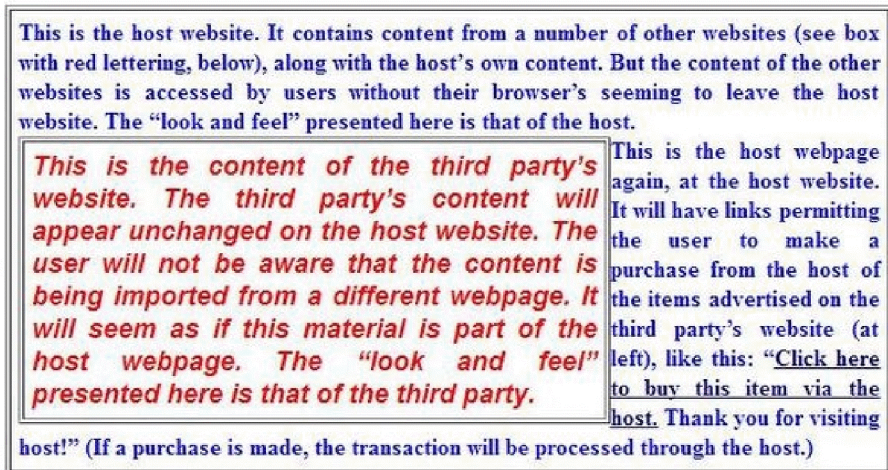
- 디디알홀딩스社는 사용자가 호스트 웹사이트에서 광고를 클릭하면, 광고주의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 호스트 웹사이트의 모양과 느낌('Look and Feel')이 동일한 대체 사이트(3rd party merchant)로 이동하여 광고주의 제품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의 특허를 등록받았습니다.
- 디디알홀딩스社사는 호텔스닷컴社 사이트의 광고표시방법이 자신의 특허 2건(제6,993,572(이하 '572 특허) 및 제7,818,399호(이하 '399특허))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의 배심원들은 원고의 침해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 피고인 호텔스닷컴社측은 이 판단에 불복하여 법률적 판단(Judgement as matter of law, JMOL¹³⁾)을 청구하였으나, 지방법원은 호텔스닷컴社측의 JMOL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572 특허는 새롭게 발견된 선행기술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어 항소법원은 JMOL '572 특허에 대한 청구기각 판결을 파기(특허침해부정)하였지만, '399 특허에 대해선 JMOL 청구 기각 판결을 인용하고 특허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13) 미국 민사소송법상 제도로 법적 근거나 사실심에서 제출된 증거 불충분할 경우, 재판부가 배심원의 평결을 배제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판결하는 제도

- '399 특허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므로, 항소심에서는 특히 추상적 아이디어를 컴퓨터 시스템에 단순히 연계한 발명은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는 Alice 판결의 결론이 '399 특허에 적용될 수 있는지가 주로 검토되었습니다.
- 연방순회법원은 '399 특허가 ① 수학적 알고리즘이나 근본적 경제원리 또는 관행에 관한 것이 아니고 ② 웹 사이트의 방문자의 유지라는 영업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는 인터넷 기술에 관련된 영업에 관한 것이며 ③ 하이퍼 링크와 같은 컴퓨터 기술에 기반에 근거한 기술적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허적격성이 부정된 Alice 판결의 특허와는 다르다고 판단하고 '399 특허의 특허 적격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관련 특허 정보

- 원고인 디디알홀딩스社의 미국등록특허 제7,818,399호는 특정 사이트의 방문자가 광고링크를 클릭했을 때, 광고주의 웹 페이지로 완전히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한 사이트의 모양과 느낌을 유지하는 새로운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이 핵심특징으로, 방문자가 광고링크를 클릭하더라도 특정 사이트의 방문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데 기술적 의의가 있습니다.



['399의 특허의 핵심 특징이 표현된 도면 (출처 : Wikipedia)]

발명의 명칭	Methods of expanding commercial opportunities for internet websites through coordinated offsite marketing
출원 번호	US11/343,464
출원 일자	2006년 01월 30일
등록 번호	US7,818,399
공고 일자	2010년 10월 19일
특허권자	DDR Holdings, LLC
기타	특허권자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 Non-Practicing Entity)임

【청구항 19】

상업적 기회를 제공하는 웹 페이지를 제공하는 아웃소싱 제공자에게 유용한 시스템으로서, 상기 시스템은

- (a) 각각의 제1 웹 페이지에 대응하는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요소(visually perceptible elements)들을 정의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컴퓨터 저장소(a computer store);
- (i) 상기 각각의 제 1 웹 페이지는 복수의 웹 페이지 소유자 중 하나에 속하고;
- (ii) 상기 각각의 제1 웹 페이지는 최소한 하나의 선택된 판매자의 구매 기회(buying opportunity)와 관련되어 있는 상업 오브젝트(commerce object)의 활성화 링크(active link)를 디스플레이하며;
- (iii) 상기 선택된 판매자, 아웃소싱 제공자, 상기 관련 링크를 표시하는 제 1 웹 페이지의 소유자는 각각에 대해 제3자임.
- (b) 컴퓨터 저장소와 연결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이 프로그램된 아웃소싱 공급자의 컴퓨터 서버;
- (i) 컴퓨터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로부터 제 1 웹 페이지 중 하나에 의해 표시된 링크들 중 하나의 활성화를 나타내는 신호를 수신하고,

- (ii) 링크가 활성화된 제1 웹 페이지 중 하나를 소스 페이지로 자동으로 식별하고
- (iii) 소스 페이지의 식별에 응답하여 소스 페이지에 해당하는 저장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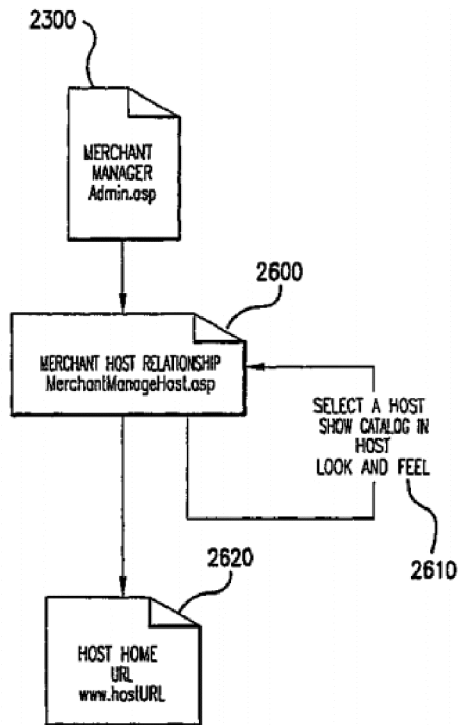
(iv) 검색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은 정보를 표시하는 두 번째 웹 페이지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웹 브라우저에 전송함

(A) 활성화 된 링크와 관련된 상업 오브젝트와 관련된 정보 및

(B) 소스 페이지에 시각적으로 상응하는 복수의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요소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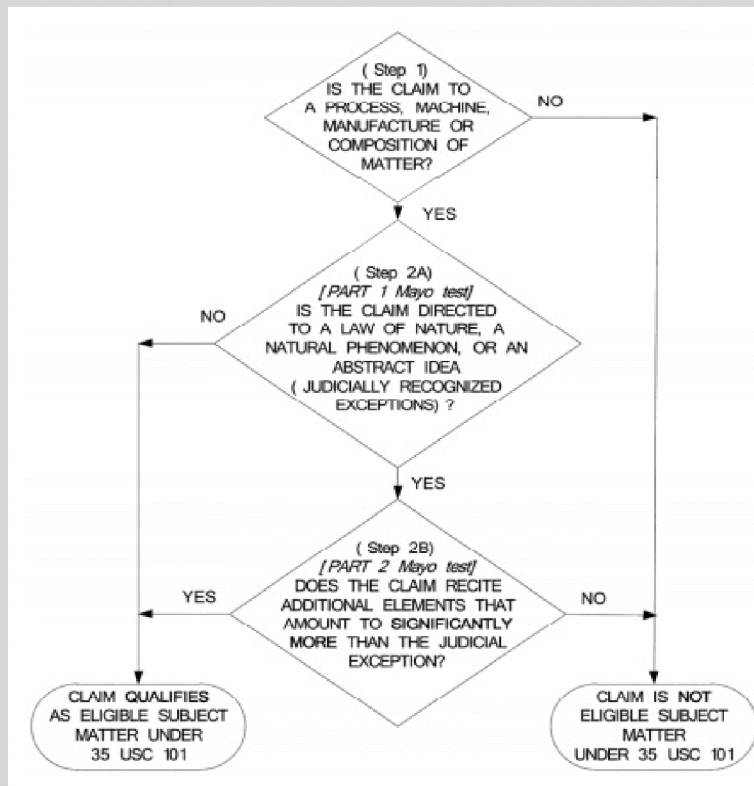
【대표도】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미국 특허청의 심사기준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많은 BM 발명이 출원되고 있으며, 미국의 BM 출원은 특히 발명의 성립성, 즉 출원된 발명이 특허적격을 갖추었는지가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특허청(USPTO)은 심사기준(MPEP)을 통해 특허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테스트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테스트는 2단계로 진행되는데, 먼저 발명의 청구항이 방법, 기계, 제조물 또는 조성물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한 후(Step 1), 이에 해당한다면 발명이 자연 법칙, 자연 현상 또는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Mayo test(Step 2A, 2B)를 거쳐 최종적으로 해당 출원이 특허적격성을 갖추고 있는지 결정합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테스트의 Step 2A에서는 발명이 자연법칙, 자연현상 또는 추상적 아이디어(사법적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문제는 발명의 내용이 자연법칙이나 자연현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교적 명백하지만, 2014년 미국 대법원의 추상적 아이디어는 발명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Alice case) 이후에도 무엇이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미국 특허청은 특허 적격성 판단의 가이드라인(2019)을 통해 추상적 아이디어의 판단에 대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1] 추상적 아이디어로 분류되는 특정 발명 그룹의 정의

- a) **수학적 개념(Mathematical concepts)** – 수학적 관계식, 수학적 공식 또는 계산식, 수학적 계산
- b) **인간 활동을 조직하는 특정 방법(Certain methods of organizing human activity)** – 근본적인 경제원리 또는 관행(헤지(hedging), 보험, 위험관리(mitigating risk) 등); 상업적 또는 법적 거래(계약 형태의 합의; 법적 의무; 광고, 마케팅 또는 판매 활동 또는 행위; 상거래 등); 개인 행동 또는 대인 관계 또는 對 인간 상호 작용 관리(사회 활동, 교육(teaching) 및 법준수 또는 명령 이행 등)
- c) **정신적 프로세스(Mental processes)** – 인간 마음에서 행해지는 개념(관찰(observation), 평가, 판단, 의견 등).

원칙적으로 심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이러한 추상적 아이디어 그룹에 포함되는 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구항은 추상적 아이디어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심사관이 추상적 아이디어 그룹에 포함되지 않는 청구항이 기재되어있음에도, 추상적 아이디어로 판단하고자 한다면 Technology Center(TC)라는 별도의 조직에서의 승인과 함께 타당한 판단 이유가 심사 서류 기록에 기재되어야 합니다(BM 발명은 TC 3600에서 담당).

[2] 추가적인 구성 요소

추상적 아이디어 그룹에 해당하는 발명이라도, 추가적인 구성요소가 결합되어 실질적 응용(practical application)이 가능한 경우 Step 2B를 살피지 않고 특허 적격성을 인정합니다. 추가적 구성요소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컴퓨터 기능 개선 또는 다른 기술 분야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
- 질병 또는 질환에 대한 특정 치료 또는 예방에 영향 미치는 것
- 청구항에 필수적인 특정 기계 또는 제품이 결합된 것
- 특정한 물체(particular article)를 변형 또는 축소시켜 다른 상태 또는 물건으로 변경하는 것
- 추상적 아이디어와 특정한 기술을 단순히 연결하는 것 이상으로 의미 있게 한정하는 것

한편 미국 법원이 제시한, 추가적인 요소가 결합되었음에도 실질적인 응용에 도달하지 못하여 특허적격성을 인정할 수 없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적인 요소가 단순히 추상적 아이디어에 대하여 “그것을 적용한다(apply it)(또는 상응하는 용어)”는 용어를 나열하거나, 단순히 컴퓨터 하드웨어를 수단으로 추상적 아이디어를 이행한다는 명령을 포함하고 있거나, 또는 단순히 컴퓨터를 추상적 사상을 이행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함
- 추상적 아이디어의 과제 해결과 본질적인 관련이 없는 부가적 행위를 더함

추상적 아이디어가 의미 있게 한정되어 실질적 응용에 도달하였는지를 판단할 때는 청구항 전체를 고려해야하며, 어떻게 추가적 요소가 청구항 전체에서 사용되었고 연결되었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앞서 살핀 Step 2A에서는 추가적인 요소가 자명한 사항(well-understood, routine, conventional activity)인지 여부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 따라서 자명한 사항을 포함하는 청구항이라도 추상적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실질적 응용에 이르는 발명을 개시할 경우, Mayo Test의 Step 2B와는 무관하게 발명의 특허 적격성 요건(Section 101)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 아이디어임에도 실질적 응용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Step 2B로 진행하여 발명이 추상적 아이디어를 월등히 능가하는 추가적인 요소('창의적 개념')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판단 후, 특허 적격성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7 BM 특허의 해외 분쟁 사례

- 애플사의 'i-Tunes SW'와 특허괴물 스마트플래시사의 특허

애플 '특허괴물' 스마트플래시 6000억 원대 항소심서 뒤집힌 판결, 삼성 소송에도 영향 주나

[출처 : '17.03.03. 국제신문]

아이튠스 소프트웨어가 스마트플래시의 특허를 침해했으므로 애플에 5억3300만 달러(약 6000억 원)를 배상하라고 했던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의 항소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면서 원고인 스마트플래시가 특허로 인정받을 만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플래시가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발명으로 바꾸기에 충분할 만한 독창적인 개념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제품은 생산하지 않고 특허만 보유한 '특허 괴물'로 불리는 스마트플래시는 2013년 애플의 아이튠스 스토어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저장과 접근 시스템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냈다.

2015년 텍사스의 연방법원이 스마트플래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애플에 5억33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애플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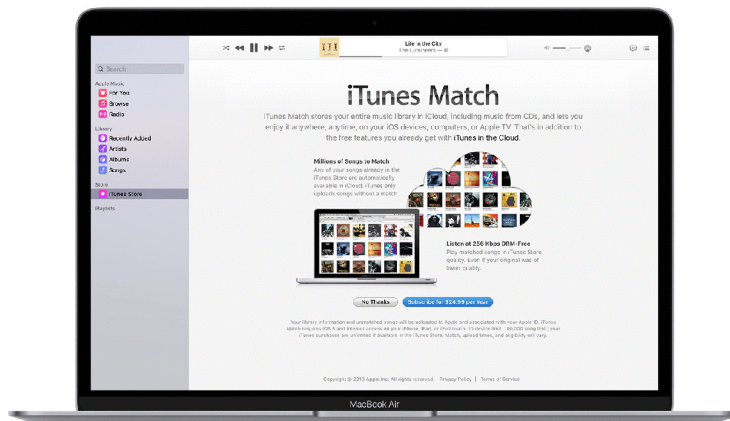
스마트플래시는 삼성을 상대로도 특허 소송을 냈는데 이 재판은 진행 중이어서 이번 애플과의 항소심 판결이 이후 타사와의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한편 스마트플래시는 이후 구글과 아마존도 제소했다.

■ 스마트플래시사 vs. 애플사의 분쟁과정

- 스마트플래시사는 노래, 비디오 및 게임과 같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자 결제 시스템을 통해 해당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시스템(Data Storage and Access System에 특허됨)에 대한 여러 특허를 획득한 Patrick Racz에 의해 2000년에 설립된 기술 개발 및 라이선스 회사입니다.
- 스마트플래시사는 획득한 특허 기술을 상용화하여 자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지는 않는, 일종의 Patent Troll(특허괴물) 또는 NPE(Non Practicing Entity)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스마트플레이스는 2013년 5월에 자사의 Data Storage and Access System에 특허된 특허들을 기반으로 애플사를 상대로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법정에서 유사한 사건으로 삼성전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후에 구글사와 아마존사를 상대로도 추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소송의 내용은 애플사의 iTunes 소프트웨어가 스마트플레이스의 디지털저작권관리, 데이터 저장, 결제시스템에 대한 액세스 관리에 관련된 7개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애플사에 대하여 8억 5천 2백만 달러의 배상을 청구하였고, 2015년 2월에 내려진 최초의 판결에서 연방배심원단은 애플사가 스마트플레이스의 특허 중 3개의 특허를 허락 없이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애플사의 고의적인 침해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애플사에게 5억 3290만 달러의 손해 배상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이에, 애플사는 미국 연방 법원에 항소하였고, 소송 계류 중인 2016년에 미국 특허청이 스마트플레이스의 특허를 무효로 판단함에 따라, 기존의 텍사스 지방 법원의 판결은 2017년 미국 연방 법원에 의해 뒤집혔습니다.
- 미국 연방 법원은 스마트플레이스의 특허가 너무 추상적이며 보호할 정도로 실제적인 발명을 기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출처: 애플.com)

■ 관련 특허 정보

- 원고인 스마트플래시社의 미국등록특허 제8,118,221호는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 텍스트, 소프트웨어, 게임 및 기타 유형의 데이터를 다운로드 및 결제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 및 액세스 시스템에 대한 권리로 지불 데이터를 판독하여 포워딩하고 수신하며 지불 확인 데이터에 응답하는 코드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발명의 명칭	데이터 저장 및 액세스 시스템 (Data storage and access systems)
출원 번호	US08/118,221
출원 일자	2010년 11월 10일
등록 번호	US8,118,221
공고 일자	2012년 02월 21일
특허권자	Smartflash Technologies Limited
기 타	무효

【청구항 1】

데이터 공급자로부터 데이터를 검색하고, 상기 검색된 데이터를 데이터 캐리어에 제공하는 데이터 액세스 단말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액세스 단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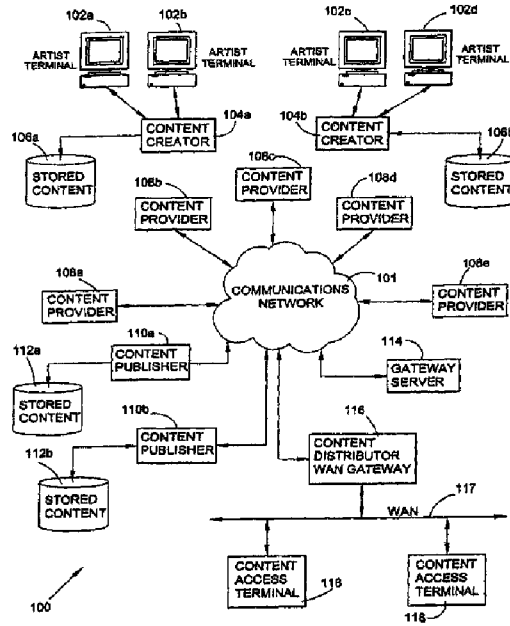
상기 데이터 공급기와 통신하기 위한 제 1 인터페이스; 상기 데이터 캐리어와 인터페이스하기 위한 데이터 캐리어 인터페이스; 프로세서에 의해 구현 가능한 코드를 저장하는 프로그램 스토어; 및 상기 제 1 인터페이스에 연결되고, 상기 저장된 코드를 구현하기 위한 상기 데이터 캐리어 인터페이스 및 상기 프로그램 스토어에 연결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며,

상기 코드는:

데이터 캐리어로부터 지불 데이터를 판독하고 지불 확인 시스템(payment validation system)으로 지불 데이터를 포워딩하기 위한 코드; 지불 확인 시스템으

로부터 지불 확인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코드; 데이터 공급기로부터 데이터를 검색하고 검색된 데이터를 데이터 캐리어에 기록하기 위해 지불 확인 데이터에 응답하는 코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액세스 단말.

【대표도】



미국에서는 Alice 판결 이후 BM 발명의 특허 적격성에 대한 판단이 보다 엄격해졌는데, 스마트플레이스에 대한 미국 연방 법원의 판결 또한 같은 맥락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IT, 핀테크 등 BM 특허와 관련된 특허 시장이 성장하며 해외 주요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특허 괴물 또는 NPEs(Non Practicing Entities)에 의한 특허 침해 소송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관련된 특허 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1. 특허상담	187
2. 참고자료	188
3. 수수료	189
4. 관련 사이트	191
5. 지식재산권 창출, 활용 및 보호를 위한 특허청 지원제도	192

1 특허상담

■ 특허고객상담센터

특허청 업무 전반에 대한 전화 및 인터넷 상담 제공

- 전 화 : 1544-8080 (전국 어디서나)
- 인터넷 : 특허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특허고객상담센터
- 시 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야간 및 휴일에 상담예약을 하면 콜백(Call-Back)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충민원창구

산업재산권 제도 및 특허행정 등에 대한 온라인 민원 상담 제공

- 인터넷 : 특허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민원신청/상담

■ 특허고객서비스센터

특허출원 및 등록서류 접수, 제증명 복사 등의 서비스와 특허출원 관련 상담 제공

- 주 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층
- 전 화 : 042)481-5217

■ 서울사무소 고객 상담실

특허출원 관련 안내 및 상담, 특허정보 검색 및 전자출원 지원

- 주 소 :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빌딩 4~5층
- 전 화 : 02)3458-2200

■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역민에게 특허정보서비스 제공, 지재권 종합민원상담, 지식기반 구축을 위한 지식재산설명회 및 교육과정 운영 등 One-stop 서비스 제공

- 지역별 지식재산센터 정보 : www.ripc.org

2 참고자료

자료명	내용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컴퓨터 관련 발명에 관한 명세서의 기재요건과 특허요건별 심사기준 및 사례
영업방법 발명 심사사례집	BM 발명의 심사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특허요건의 유형별 위배사례 및 이와 관련한 심사지침
영업방법 발명 판례집	특허요건 쟁점별 특허법원 및 대법원의 BM 발명 판례
특허고객서비스 편람	산업재산권의 권리별 출원, 국제 출원, 등록 및 심판 절차 안내와 복잡하고 다양한 서식의 유형별 작성사례
산업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산업재산권의 출원, 심사, 등록 등과 관련된 절차, 제도 및 구비서류 등의 정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출원가이드 북	출원절차 및 온라인 출원, 각종 통계정보, FAQ 등 출원인에게 유익한 정보
우선심사개정 심사지침서	우선심사 신청 대상, 신청 절차 및 대상여부에 대한 심사기준
거절이유별 대응사례 분석집	특허출원에 따른 심사절차와 심사관의 거절이유별 대응방법 및 사례
PCT 출원가이드	PCT 국제출원 절차 및 서류 작성 방법

※ 특허청 홈페이지 > 정보마당 > 간행물 코너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방법 발명 심사사례집 및 영업방법 발명 판례집은 전자상거래 연구회 홈페이지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수료(현행기준)

■ 특허출원 및 심사 관련 수수료

자료명		내용	
출원료	전자출원 (온라인)	기본료	국어: 46,000원 외국어: 73,000원
	서면	기본료	국어: 66,000원 외국어: 93,000원
		가산료	명세서, 도면,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 가산
우선권 주장료	신청료 (전자)	1 우선권 주장당 20,000원(온라인 18,000원)	
	추가료 (전자)	1 우선권 주장당 20,000원(온라인 18,000원)	
심사 청구료	기본료	143,000원	
	가산료	청구범위 1항당 44,000원 가산	
우선심사 신청료		200,000원	
재심사 청구료	기본료	100,000원	
	가산료	청구범위 1항당 10,000원 가산	
보정료	전자문서	매건 4,000원	
	서면	매건 14,000원	
지정기간 연장 신청료		1회 : 20,000원, 2회 : 30,000원 3회 : 60,000원, 4회 : 120,000원 5회 이상 : 240,000원	

■ 특허등록료

권리		설정등록 (1~3년)	연차등록료				
			4~6년	7~9년	10~12년	13~15년	16~25년
특허	기본료	매년 15,000원씩 45,000원	매년 40,000원	매년 100,000원	매년 240,000원	매년 360,000원	
	가산료 (청구 범위 1항마다)	매년 13,000원씩 39,000원	매년 22,000원	매년 38,000원	매년 55,000원	매년 55,000원	
실용 신안	기본료	매년 12,000원씩 36,000원	매년 25,000원	매년 60,000원	매년 160,000원	매년 240,000원	
	가산료 (청구 범위 1항마다)	매년 4,000원씩 12,000원	매년 9,000원	매년 14,000원	매년 20,000원	매년 20,000원	

4 관련 사이트

기관 또는 서비스	인터넷 주소
특허청	www.kipo.go.kr
특허로	www.patent.go.kr
특허청 블로그	blog.daum.net/kipoworld
특허청 연구회	www.kipo.go.kr/club
특허청 전자상거래 연구회	www.kipo.go.kr/club/bm/
특허전자도서관	library.kipo.go.kr
특허청 서울사무소	www.kipo.go.kr/seoul
국제지식재산연수원	iipti.kipo.go.kr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www.ipacademy.net
한국특허정보원	www.kipi.or.kr
특허정보 무료검색 서비스	www.kipris.or.kr
한국발명진흥회	www.kipa.org
지역지식재산센터	www.ripc.org
한국지식재산전략원	www.rndip.re.kr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www.kipra.or.kr
한국지식재산연구원	www.kiip.re.kr

■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지원시책	내용
IP 디딤돌 프로그램	개인 및 예비창업자의 우수 아이디어가 사업 아이템으로 구체화되고 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혁신형 창업 유도 프로그램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481-8660, 8653)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3459-2838) 지역지식재산센터 (1661-1900) 홈페이지 : http://www.ripc.org , http://biz.ripc.org
IP 나래 프로그램	창업기업 및 전환창업 기업의 지식재산(IP) 역량 강화를 통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이 되도록 지식재산 전문 컨설팅 지원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481-8622, 8653)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3459-2833) 지역지식재산센터 (1661-1900) 홈페이지 : http://www.ripc.org , http://biz.ripc.org
글로벌 IP(지식재산) 스타기업 육성	해외 수출(예정) 기업을 선정하여 해외 IP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산업재산권 획득, 맞춤형 특허맵,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등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3년간 지식재산 종합지원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481-5171)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3459-2827) 지역지식재산센터 (1661-1900) 홈페이지 : http://www.ripc.org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중소기업이 R&D 효율성을 높이고 핵심·원천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현장에 맞춤형 특허전략을 지원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481-8184)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중소기업팀 (02-3287-4339) 홈페이지 : http://biz.kista.re.kr/ippro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 개발	특허 중심의 디자인·브랜드·서비스 융합개발을 통해 우리 중견·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R&D 전략 지원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481-8184)
표준특허 창출 지원	국제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 기업·기관에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제공하여 고부가가치 표준특허 창출을 촉진
	산업재산창출전략팀(042-481-8499)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센터(02-3475-8560, 8553) 홈페이지 : http://www.kista.re.kr
정부 R&D 특허전략지원	정부 R&D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공공(연)을 대상으로 지재권 중심의 연구개발 방향 설정을 지원하여 정부 R&D 특허성과 제고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042-481-8499)
정부 R&D 특허설계지원	미활용특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학·공공(연)이 활용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특허를 전략적으로 확보하도록 지원
	강한 권리 확보를 위한 최적의 특허 청구항 설계 및 기술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외 맞춤형 특허 창출 지원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042-481-8499)

생활 발명코리아	창의적 여성의 아이디어로 상품화가 용이한 생활발명을 발굴하고 출원·디자인·시제품제작 지원하여 지식재산 기반 여성창업 촉진
	<p>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481-8496) 한국여성발명협회 사무국 (02-538-2710) 홈페이지 : http://www.womanidea.net</p>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 제도	IP정보 서비스 분야 상품 개발에 필요한 IP데이터를 창업형 및 성장형으로 구분하여 최대 5년까지 무상 제공
	<p>특허청 정보관리과 (042-481-5121) 한국특허정보원 IP정보확산팀 (02-6915-1508) 홈페이지 : http://plus.kipris.or.kr</p>
기업군 공통핵심기술 IP 전략지원	업종별·분야별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신기술·애로기술에 대한 특허전략 지원을 통해 분야별 중소기업군 전체의 IP 경쟁력 강화
	<p>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481-8184)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업군성장팀 (02-3287-4268) 홈페이지 : http://biz.kista.re.kr/ippro</p>
중소기업 IP(지식재산) 바로지원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하여, 전국 지역 지식재산센터에서 수시로 해결·상담해 주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서비스
	<p>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481-5171)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3459-2822) 지역지식재산센터 (1661-1900) 홈페이지 : http://www.ripc.org</p>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	스타트업의 특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타트업에 바우처를 발급하면, 스타트업은 IP 서비스 메뉴와 Pool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자유롭게 필요한 서비스 및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하고 바우처로 비용 지불

	<p>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481-8660)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활용팀 (02-3475-1331) 홈페이지 : http://www.kista.re.kr</p>
<p>IP정보서비스 벤처기업 육성</p>	<p>IP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고부가가치의 IP서비스가 출 시되도록 민간 IP정보서비스의 R&D 지원</p>
	<p>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042-481-5175)</p>

■ 지식재산권 활용 지원

지원시책	내용
<p>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p>	<p>제품의 품질 및 기술적 난제, 신제품 개발 등 중소기업 의 사업화 애로사항에 대해 지식재산(IP) 관점에서 해 결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p>
	<p>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042-481-5875)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지원실 (02-3459-2937, 2814) 홈페이지 : http://www.kipa.org</p>
<p>지식재산 거래 지원</p>	<p>특허기술 도입 등 지식재산(IP)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 중소기업에 특허거래전문관이 중개 서비스를 지원하 고, 특허거래정보 활용 촉진을 통한 민간 중심의 IP 거 래 활성화 지원</p>
	<p>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042-481-3478)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중개소 (02-3459-2882, 2896) IP거래정보 검색 및 특허거래전문관 상담 신청 : www.ipmarket.or.kr 온라인 특허평가 : smart.kipa.org</p>
<p>IP 사업화 연계 평가지원</p>	<p>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 현물 출자 등을 위한 가치평가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 비용을 지원하여, 특허기술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을</p>

	<p>위해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제공</p> <p>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042-481-5807)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53) 홈페이지 : http://www.kipa.org</p>
<p>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도</p>	<p>특허기술이 적용된 우수발명품을 특허청장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조달 수요기관에 우선구매 추천하여 판로개척 지원</p> <p>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042-481-3478)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49) 홈페이지 : http://www.kipa.org</p>
<p>지식재산서비스기업 해외시장 수요 창출 지원</p>	<p>지식재산서비스 분야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 및 수요창출을 위해 해외 유명 IP전시회 등 국제 행사에 홍보부스 운영 및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p> <p>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042-481-5322)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02-3789-0606) 홈페이지 : www.kaips.or.kr</p>
<p>수요기반 발명인터뷰 지원</p>	<p>수요기업이 있는 발명 및 우수 발명을 선별하여 출원하도록 수요기반 발명인터뷰 운영을 지원하고, 사업화 유망특허는 기술이전까지 지원</p> <p>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042-481-5437)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활용팀 (02-3475-8524) 홈페이지 : http://www.kista.re.kr</p>
<p>제품단위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p>	<p>시장의 요구에 따라 제품별로 특허를 묶거나(포트폴리오) 기술 및 상용화 검증을 하여 기업에 효율적으로 특허를 이전하도록 지원</p> <p>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042-481-5437)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확산전략팀 (02-3475-8514) 홈페이지 : www.kista.re.kr</p>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	정부 R&D 특허성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진단하여 전략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481-5173)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성과팀 (02-3475-8546) 홈페이지 : www.kista.re.kr
우수특허 보유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우수특허를 사업화하는 벤처·중소기업, 지식재산 서 비스기업, 지식재산권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모태펀드 특허계정 자펀드의 벤처투자를 통해 특허기술사업화 및 지식재산거래 활성화 추진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042)481-8593
특허갭펀드 조성 지원	대학·공공(연)이 특허기술의 상용화 검증을 지속가능 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인 특허갭펀드를 조성하도록 지원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042-481-5437)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활용팀 (02-3475-8539) 홈페이지 : http://www.kista.re.kr
아이디어 거래 지원	소비자가 기업의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기 업은 소비자의 아이디어를 검토 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 제공
	특허청 아이디어거래담당관 (042-481-8233)

■ 지식재산 보호 지원

지원시책	내용
영업비밀보호센터 운영	대국민 영업비밀 보호인식 제고와 기업의 영업비밀 관 리체계 구축 지원을 통해 영업비밀·기술 탈취 피해를 예방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042-481-5425) 영업비밀보호센터(1666-0521) 홈페이지 : www.tradesecret.or.kr

<p>해외지식재산센터 (IP-DESK) 운영</p>	<p>해외 9개국 16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IP-DESK를 활용하여 해외진출(예정)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 및 성공적인 해외시장 정착에 기여하고, IP-DESK가 설치되지 않은 국가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재권 분쟁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지 지재권 전문가를 통한 법률자문 지원</p> <p>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042-481-5085) 코트라 해외지재권보호실 (02-3460-3359, 3357) 홈페이지 : www.kotra.or.kr (해외진출지원-해외투자진출-지식재산권보호)</p>
<p>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사업</p>	<p>중국·ASEAN 등 해외에서의 우리기업 지식재산권 피침해 대응지원</p> <p>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042-481-8227)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전략팀(02-2183-5896) 홈페이지 : http://www.koipa.re.kr/</p>
<p>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협의체 지원사업</p>	<p>해외 진출(준비)기업들이 공통의 국제 지재권 분쟁 현안 해결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에 대해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해 현안 해결지원</p> <p>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042-481-5214)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전략팀(02-2183-5898) 홈페이지 : http://www.koipa.re.kr/</p>
<p>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p>	<p>우리기업에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의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역량 제고 및 해외수출 경쟁력 강화</p> <p>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042-481-5999)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예방팀(02-2183-5870) 홈페이지 : http://www.koipa.re.kr/</p>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소송이나 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설치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를 분쟁해결절차에 직접 참가시켜 상호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042-481-5925)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1670-9779) 홈페이지 : http://www.koipa.re.kr/adr/
콘텐츠 지재산 보호 지원	수출(예정) 콘텐츠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해외 지식재산 보호 전략을 제공하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042-481-5999)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인식문화팀 (02-2183-5880) 홈페이지 : http://www.koipa.re.kr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운영	상표(위조상품)·특허·영업비밀·디자인 등 산업재산 침해에 관한 범죄사건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업무
	대표번호 : 1666-6464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042-481-5812/8324) 홈페이지 : www.ippolice.go.kr

■ 지식재산권 금융 지원

지원시책	내용
특허공제사업	기업간 상호부조에 기반한 공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 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부담을 분산·완화하고 경영안정 기반을 마련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042-481-8180) 특허공제 안내 콜센터 (02-3459-2848, 2844) 홈페이지 : 특허공제시스템 홈페이지(https://ipmas.or.kr)

IP담보대출 회수지원	중소기업에 대해 IP담보대출을 실시하고 채무불이행 발생시, 회수전문기관이 은행이 보유하게 된 부실 담보IP를 매입하여 은행의 손실을 경감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042-481-8639)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36) 홈페이지 : www.kipa.org
IP 금융 연계 평가지원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IP를 기반으로 보증·담보대출·투자 등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042-481-5807)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38) 홈페이지 : www.kipa.org

■ 지식재산권 교육·컨설팅 지원

지원시책	내용
지식재산(IP) 스마트교육	① 대상별 지식재산 온라인 교육: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www.ipacademy.net) 사이트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편리하게 온라인상으로 지식재산 교육을 무료로 제공 ②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통해 '지식재산학'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운영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기획과 (042-601-4311) 한국발명진흥회 평생교육실 (02-3459-2765) 홈페이지 : http://www.ipacademy.net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대학의 자율적인 지식재산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

	<p>산업재산활용과 (042-481-5183)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실 (02-3459-2808) 홈페이지 : http://www.kipa.org</p>
기업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p>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연계 가능한 맞춤형 지식재산 실무교육을 통해 새로운 산업 흐름을 이끌어 갈 기업 의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p>
	<p>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042-481-5456)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실(02-3459-2835) 홈페이지 : http://www.kipa.org</p>
지식재산서비스기 업 채용 연계 교육	<p>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산업인 지식재산서비스업 기업체로의 채용연계교육을 통한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지원</p>
	<p>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042-481-5175)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02-3789-0607) 홈페이지 : http://www.kaips.or.kr</p>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	<p>창의적인 기업인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높은 청소년을 선발하여 지식재산과 기업가정신 등으로 구성된 교육 과정 제공 * 2개의 영재기업인 교육원(KAIST, POSTECH)을 운영</p>
	<p>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042-481-3572) 한국발명진흥회 창의발명교육연구실 (02-3459-2927) 홈페이지 : http://www.kipa.org</p>
특허경영전문가 운영	<p>특허경영전문가를 대학·공공연에서 파견 또는 운영 지원하여 지식재산 인식을 제고, 지식재산전담부서의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지도함으로써 대학· 공공연의 전반적인 지식재산 역량 수준을 제고</p>

	<p>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042-481-5437)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활용팀 (02-3475-8513) 홈페이지 : http://www.kista.re.kr</p>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p>직무발명제도 도입을 계획하거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보상규정 마련 및 운영상의 애로 해소 지원</p>
	<p>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042-481-5437) 한국발명진흥회 발명문화확산실 (02-3459-2847, 2793) 홈페이지 : http://www.ip-job.org</p>
지식재산 재능나눔	<p>지식재산 분야에 재능을 가진 개인, 기업 또는 단체가 소기업, 예비창업자 등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활동을 지원</p>
	<p>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481-8452)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3459-2825) 지역지식재산센터 (1661-1900) 홈페이지 : http://www.ripc.org/ipnanum</p>
특허지원 상담창구 운영	<p>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전반에 대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개인대상으로 지식재산 애로 해결</p>
	<p>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481-8660)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3459-2822, 2838) 지역지식재산센터 (1661-1900) 홈페이지 : http://www.ripc.org</p>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p>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지재권 권리 확보에서 분쟁대응에 이르는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p>
	<p>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042-481-8227)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 홈페이지 : http://www.pcc.or.kr</p>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	산업재산권의 활용 확산과 격차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산업재산권 정보 검색 및 전자출원 방법에 대한 찾아가는 교육 제공
	<p>특허청 정보관리과 042-481-5718</p> <p>한국특허정보원 정보인프라팀 02-6915-1552</p> <p>한국특허정보원 : www.kipi.or.kr</p> <p>키프리스 : www.kipris.or.kr</p>
취업연계 IP 지역인재 양성	지자체-지역 대학-기업이 협력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지역기업에서 채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마련
	<p>산업재산인력과 (042-481-8746)</p> <p>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실 (02-3459-2818)</p> <p>홈페이지 : http://www.kipa.org</p>
발명교육센터 운영	전국 201개 발명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까지 발명교육을 확산하고, 다양한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의 학생들에게 제공
	<p>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042-481-3572)</p> <p>한국발명진흥회 창의발명교육연구실(02-3459-2747)</p> <p>홈페이지 : www.ip-edu.net</p>
IP 마이스터 프로그램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이 산업현장의 현안 문제를 탐색하고, 이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제안·개선·권리화·기술이전하는 과정을 지원하여 산업계가 원하는 예비 기술전문가로서의 성장 지원
	<p>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042-481-8620)</p> <p>한국발명진흥회 창의발명교육연구실(02-3459-2749)</p> <p>홈페이지 : www.ip-edu.net</p>

■ 지식재산권 기타 지원

지원시책	내용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제도	직무발명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042-481-5437)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47, 2793) 홈페이지 : http://www.ip-job.org
지식재산경영 인증제도	지식재산경영을 중소기업의 보편적 경영방식으로 확산시키고, 지식재산 경영기업의 신뢰성 제고
	지역산업재산과 (042-481-8653)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3459-2822) 홈페이지 : http://www.ipcert.or.kr
수수료 감면제도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70% 감면, 4년차 ~ 존속기간까지의 등록료 50% 감면
	정보고객정책과 (042-481-5587) 홈페이지 : http://www.patent.go.kr (수수료정보안내/출원료 등의 감면 안내)
지식재산권 관련 조세 지원	기술거래 활성화 및 직무발명 확산을 위한 조세 지원
	산업재산정책과 (042-481-5175) 홈페이지 : www.kipo.go.kr
특허심판-국선대리 인 제도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해 국선 대리인 선임 지원
	심판정책과(042-481-5583) 홈페이지 : https://www.kipo.go.kr/ipt/

산업재산권 등록마크 발급	제품에 적용된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록사항 및 상세내용을 QR코드가 결합된 마크로 표시할 수 있는 제도
	특허청 아이디어거래담당관 (042-481-8233)

